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방안 연구

이상아·함선유·류주현·강명주·황은하·성경하

【연구책임자】

이상아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

【공동연구원】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주현 아주대학교 SSK사업단 전임연구원

강명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황은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임연구원

성경하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주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CONTENTS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3
2. 연구 목적	5
3. 연구 내용 및 방법	6
II. 자활사업 참여자 및 확대 대상자 특성	7
1. 분석 개요	9
2. 자활사업참여자와 근로빈곤취업자 특성	12
3. 미취업 근로빈곤층의 특성	20
4. 소결	29
III.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에 관한 질적분석	33
1. 자활사업 참여 확대 예상 대상자 심층 FGI종	35
2.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89
IV.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개선을 위한 제도 분석	101
1. 자활사업 참여자 관련 국내 법적·행정적 근거 검토	103
2. 자활사업의 대상자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사업 검토	112
3. 자활사업 참여자 관련 해외 법적 근거 검토	118
4. 소결	121

V.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한 개선(안)	125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일부개정 필요	127
2. 취약계층(주민)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련 필요	128
3.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사업 계획(안)	130
 참고문헌	 133
 부록	 137
[부록-1]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방안 연구 FGI 면담지	139
[부록-2]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방안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145

CONTENTS

표목차

〈표 I-1〉 자활사업 대상자 범위 4

〈표 II-1〉 분석대상 미취업자 분류 10

〈표 II-2〉 분석대상 미취업자 분류 방법 11

〈표 II-3〉 분석대상 사례 수 12

〈표 II-4〉 인구 특성 13

〈표 II-5〉 가구형태 13

〈표 II-6〉 거주지역 13

〈표 II-7〉 학력 14

〈표 II-8〉 건강상 14

〈표 II-9〉 장애 종류 15

〈표 II-10〉 만성질환과 의료기관 이용 16

〈표 II-11〉 우울과 자존감 17

〈표 II-12〉 삶의 만족도 17

〈표 II-13〉 가구소득 및 저소득가구 비율 18

〈표 II-14〉 가구의 생활여건 18

〈표 II-15〉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비율 19

〈표 II-16〉 일자리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19

〈표 II-17〉 인구 특성 20

〈표 II-18〉 가구형태 21

〈표 II-19〉 거주지역 21

〈표 II-20〉 학력 22

〈표 II-21〉 건강상태 22

〈표 II-22〉 장애 종류 23

〈표 II-23〉 만성질환과 의료기관 이용 24

〈표 II-24〉 우울과 자존감	25
〈표 II-25〉 삶의 만족도	25
〈표 II-26〉 가구소득 및 저소득가구 비율	26
〈표 II-27〉 가구의 생활여건	27
〈표 II-2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비율	28
〈표 II-29〉 일자리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28
〈표 III-1〉 집단별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	36
〈표 III-2〉 연구 참여자 일반적 특성	37
〈표 III-3〉 조사 항목	40
〈표 III-4〉 자활사업 참여 확대 집단별 구직·실업·일 경험 특성 분석 결과	42
〈표 III-5〉 청장년의 자활사업 인식과 참여 경험 분석 결과	62
〈표 III-6〉 자활사업 참여 및 기능 확대 방안 분석 결과	69
〈표 III-7〉 집단별 특성에 대한 양적분석과 질적분석 주요 결과의 비교·통합	83
〈표 III-8〉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89
〈표 III-9〉 자문회의 분석 결과	91
〈표 IV-1〉 기초생활보장법령 내 의무참여 및 희망참여 대상자	105
〈표 IV-2〉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지침에서 규정하는 자활사업자격	106
〈표 IV-3〉 중위소득 기준(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과 자활급여의 수준 비교	109
〈표 IV-4〉 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제외자와 조건부 수급자 유예자 ..	109
〈표 IV-5〉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한 특화 - 시범사업 검토	117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방법	6
[그림 III-1] 연구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근로의지	39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수행체계
4. 연구내용 및 방법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기존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빈곤층의 개념은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의 조건부 수급자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자활사업 및 대상자 정의가 운영상 여러모로 한계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점은 운영 초기 때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였다(노대명, 2010).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초생활보장법』이 제도화되기 이전에는 저소득층 실업자 전반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이 시행됐지만,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자활사업의 대상이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 중 일부로 축소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6~2007년에 걸쳐 추진되었던 『자활급여법』 법률제정은 자활사업의 대상자를 조건부 수급자에서 근로빈곤층으로 넓혀보기 위한 시도였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뿐만 아니라,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취약하여 수급권자로 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수급자(근로빈곤층)를 포괄하기 위한 별도 법령 제정을 추진한 바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비임금근로자를 포괄하고, 소득 기준 역시 최저생계비에서 차상위 수준으로 그 범주를 넓혀, 공공부조의 직권주의와 신청주의, 발굴주의(아웃리치)를 혼합 적용해 폭넓은 근로빈곤층에 자활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보고자 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7.11.13.).

그러나 결국 『자활급여법』 제정은 무산되었고, 이에 보건복지부와 자활사업 현장에서는 자활사업 안에서 더 많은 사각지대의 놓인 대상자를 유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단위 사업들을 시도·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

되었던 <희망리본(Re-born)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추후 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같은 프로젝트나 각종 단위 사업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맥락에는 근로빈곤층의 상당수가 곧바로 노동시장에 뛰어 들 수 있는 상황이나 여건이 어려운, “복합적인 근로장벽(multiple barrier)”을 직면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배경이 있다(Olson & Pavetti, 1996; Taylor & Barusch, 2004; 이은정, 2014; 최상미·고가영, 2019),

물론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 개편을 통해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됨에 따라 여러 변화는 있었다. 중위소득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여러 변화된 조건으로 인해 대상 선정의 조건이 완화되었고 실질적으로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참여자의 범위가 확장되었다. 그럼에도 그 대상이 여전히 한정적이라는 한계를 띤다. 즉, 현재 『기초생활보장법』 아래 제한된 소득 기준의 생계급여와 연동하여 운영되는 자활사업이 자칫 근로빈곤층에 대한 복지지원의 사각지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남아있다. 또한, 현행 제도로는 지역 내 기존의 장기 실업자, 휴·폐업자 뿐만 아니라 자립준비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탈락자, 자산형성통장 가입자 등 다양한 특성의 저소득층들을 포괄함에 한계를 갖는다.

<표 I-1> 자활사업 대상자 범위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근로능력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 자원, 참여자 대기자 규모,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특례수급가구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가구원 중 참여 희망자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근로능력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 참여 절차 준용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14년 자활사업 안내. p.15 내용을 표로 재구성.

자활사업의 대상자 확대는 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 현실이다. 조건부 수급자 우선 배치가 재 명시되며('21년), 자활사업 내 조건부 수급자의 유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크게 증가되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근로연계 복지서비스이자 특화 서비스로서 자활사업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이외에도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참여 기회를 일부 확대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특화 사업이나 시범사업이 갖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자활사업을 평가하는 내용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 각 특화 자활사업을 수행했을 시 이 사업 내에서 대상자들의 욕구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이 운영되지 않기에 사회복지적 지원이 미흡하여 탈수급이 오히려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이채정, 2012).

자활사업은 두 가지 정책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립'을 강조하는 소득 중점 목표(income goal)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소득이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 전략을 중시하며, 공공부조의 생계급여액보다 많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고용 및 생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때, 참여자들이 가진 교육, 연령, 건강 상태와 같은 인적 특성이나 근로능력의 질이 자활 일자리에 적합하거나 근접해야 한다(노대명 외, 2004). 두 번째, '재활'을 강조하는 근로 중점 목표(work goal)를 성취하는 것이다. 이는 빈곤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을 두며, 적은 보수라 할지라도 소득이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생계급여액보다는 근로를 통해 획득한 소득이 빈곤계층의 복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때 근로는 빈곤계층의 자활 의지 진작, 복지 의존성의 감소, 사회와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성원으로 복귀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간주 된다(노대명 외, 2004).

자활사업은 다면적 목표 전략을 모두 취해왔으나, 자활근로는 단순히 조건부수급자의 '재활'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실질 작동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에서 자립이 필요한 정책 목표 대상이 누구인지, 특징은 어떠한지 이들을 포괄하기 위한 자활사업의 제도적, 실천적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자활사업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자활사업 참여 대상의 확대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재 정책 현장과 실천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대책과 연구자의 대안을 비교 확인하고, 사안별로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한다.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이 누구인지 분석하는 것과 그 사각지대가 필요로 하는 자활사업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근로를 통한 복지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자활사업이 어떠한 정책을 추가 혹은 변경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자활사업 확대 예상 층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차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 집단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대상의 정책적 욕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자활사업의 대상자 확대와 관련하여 예상 참여자의 욕구와 실질적 제도와의 미스매칭에 대해 주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와 그에 맞는 자활사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그림 I-1] 연구 방법

주요 내용		방법
참여 예상집단 특성분석	자활사업 확대 대상으로서 새로운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정책 실태 파악	한국복지패널 등 조사데이터
참여 예상집단 심층 FGI	양적연구로 도출된 자활사업 확대 대상 집단 심층 인터뷰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정책 욕구 파악(자활급여, 사업단 업종,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	질적 조사 실시
자활사업 현장 전문가 심층 FGI	시군구 공무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확대를 위한 현장 필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질적 조사 실시
지원 방향 도출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 분석, 정책적 지원 방향 도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지침, 연구진 회의, 자문회의



자활사업 참여자 및 확대 대상자의 특성

1. 분석 개요
2. 자활사업참여자 특성
3. 자활사업 확대 대상자 특성
4. 소결

II

자활사업 참여자 및 확대 대상자 특성

1.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와 확대 대상자의 특성을 양적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빈곤층의 법적 개념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임에도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은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내에서 추진 되어왔다. 즉, 조건부 수급자와 일반수급자 중 희망 참여자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자활사업의 대상을 보다 다양한 근로빈곤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자활사업참여자와 근로빈곤층의 인구 및 건강, 정서적 특성과 소득과 같은 생활 여건 등을 통해 자활사업의 잠재적인 대상층이 될 수 있는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장은 크게 두 장으로 나뉜다. 우선 2장에서는 자활참여자와 현재 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자활참여자의 특성과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비교한다. 3장에서는 현재 미취업 중인 이들을 근로능력과 근로의지에 따라 4개 집단으로 나누고 이들 미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자활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 자활의 잠재적인 대상자 전반의 특성을 함께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자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로, 그 대상을 우선 자활사업의 대상 연령층인 19~64세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뉘며, 취업자 집단과 미취업자 집단이다. 취업자 집단은 자활사업 참여자 집단과 현재 근로 중이면서 중위소득 60% 미만의 소득을 나타내는 저소득가구에 속한 이들이 대상이다.

미취업자 집단은 아래 <표 II-1>과 같이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에 따라 크게 네 집단으로 나누었다.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이 있는 이들은 A 집단, 근로역량은 높으나 근로의욕이 없는 이들은 B 집단으로, 근로역량이 낮지만 근로의욕이 있는 이들은 C 집단으로, 근로역량과 근로의욕 모두가 낮은 이들을 D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미취업자라 하더라도 건강 문제나 장애 등으로 근로역량이 없다고 응답한 이들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 II-1> 분석대상 미취업자 분류

구분	근로역량 높음	근로역량 낮음
근로의욕 있음	A 집단: 근로역량이 높고, 근로의욕 있음	C 집단 근로역량이 낮으나 근로의욕 있음
근로의욕 없음	B 집단: 근로역량이 높으나 근로의욕 없음	D 집단: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 없음

자료 :저자 작성

2) 분석 자료

본 장에서는 근로빈곤층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였다. 이는 저소득층의 규모와 생활 실태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자료로 2006년 출범되어 18차년도까지(2022년 기준) 공개되었다.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는 저소득층이 과대 표집되어 저소득층의 현황 파악에 유용할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근로 능력 수준과 자활 참여 여부 등에 대한 문항을 조사표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관심 있는 대상자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자료로 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자활참여자의 경우 조사 대상 기간인 1년간 자활공동체 및 자활근로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장의 비교 대상 집단이라 할 수 있는 근로빈곤취업자는 조사 연도 당해 12월 31일 기준 취업 중이면서 동시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에 미달하는 이들로 설정하였다. 다만, 자활참여자의 경우 1년간 자활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이들이므로 12월 31일 기준에 미취업자일 가능성도 있다.

미취업자의 경우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을 구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변수를 활

용하였다. 우선 근로능력의 경우 근로가능은 근로능력이 높음으로 보았으며, 단순근로가능(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이나 단순근로 미약자(집안 일만 가능)는 근로능력 낮음으로 분류하였다.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집안 일도 불가능)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근로의욕은 구직활동을 토대로 분류하였다. 최근 4주 이상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와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으나, 평소 활동상태가 취업준비인 경우는 근로의욕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며 비경제활동 사유가 근로무능력이나 구직활동포기, 근로의사 없음인 경우 근로의욕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앞서 근로능력 정도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으므로 비경제활동사유를 근로무능력으로 본 것은 심신능력 이외의 응답자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근로의욕이 낮다고 분류하였다. 그 외에 군복무와 정규교육기관 학업, 진학준비, 가사, 양육, 간병의 경우 근로능력이나 근로의욕과 관련 없는 미취업자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II-2〉 분석대상 미취업자 분류 방법

미취업자		분석대상 여부
비경제활동인구	실업자	
	취업준비	○ (근로의욕 있음)
	근로무능력, 구직활동포기, 근로의사 없음	○ (근로의욕 없음)
	군복무, 정규교육기관 학업, 진학준비, 가사, 양육, 간병	X

자료 :저자 작성

이와 같은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분석 대상자를 파악해 보면 단일 연도 자료의 경우 자활참여자와 근로미약자 중 근로의욕이 있는 이들의 사례 수가 지나치게 적었다. 따라서 안정적인 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는 1~18차 전체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다만 취업자 표본의 경우 자활 관련 문항이 4차년도부터 포함되었으므로 4~18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확인된 분석 대상 사례 수는 〈표 II-3〉과 같다.

〈표 II-3〉 분석대상 사례 수

		사례 수
취업자	자활참여자	613
	근로빈곤취업자	8,071
미취업자	A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7,838
	B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7,090
	C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219
	D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3,646

자료 :저자 작성

주요 분석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우선 인구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혼인 상태, 가구형태, 거주지역, 학력 등을 살펴보았다. 신체적, 정서적 특성은 장애 여부와 주관적 건강 상태, 만성질환, 의료이용 현황, 음주와 정신건강, 자존감 등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적 특성은 소득 분포와 저소득층 여부, 그리고 생활 여건 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복지급여 수급 내역은 기초생활급여 수급 내역과 일자리 관련 서비스 수급 내역을 확인하였다.

2. 자활사업참여자와 근로빈곤취업자 특성

1) 인구·사회적 특성

자활참여자와 근로빈곤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우선 참여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고, 평균 연령은 낮으며,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구 형태의 특성에도 이어지는데, 자활참여자의 경우 특히 단독가구와 모자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한부모 가구의 여성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근로빈곤층의 경우 평균 연령 48.69세로 자활참여자와 거의 비슷한 연령대를 나타내고 있으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2.78%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원 수가 2.8명으로 자활참여자의 2.53명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가구원 수가 많은 가구의 경우 저소득층에 속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I-4〉 인구 특성

(단위 : %, 세)

구분	성별(여성 비율)	평균 연령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자활참여자	68.68	50.81	29.69
근로빈곤취업자	54.03	48.69	52.78

자료 : 한국복지패널 4~18차 원자료 분석

〈표 II-5〉 가구형태

(단위 : 명, %)

구분	가구원수	가구형태				
		단독	모자	부자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 가장	그 외
자활참여자	2.53	25.45	13.87	1.96	0.33	58.40
근로빈곤취업자	2.80	13.85	4.01	1.18	0.26	80.70

자료 : 한국복지패널 4~18차 원자료 분석

거주지역은 자활참여자의 경우 서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광역시에 속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근로빈곤취업자의 경우 서울의 비중이 12.75%로 자활참여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시에 속한 비율 역시 34.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군에 속한 비중은 두 집단이 거의 비슷하였으며, 근로빈곤취업자 집단 내에서 도/농 복합군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표 II-6〉 거주지역

(단위 : %)

구분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자활참여자	9.79	40.46	25.29	23.16	1.31
근로빈곤취업자	12.75	25.07	34.47	24.76	2.96

자료 : 한국복지패널 4~18차 원자료 분석

학력의 경우, 자활참여자의 학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활참여자는

중졸 이하의 비중이 58.08%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활참여자의 경우 학력이 낮아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이 쉽지 않았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근로빈곤 취업자 역시 44.98%가 중졸 이하로 역시 상당히 낮은 학력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근로빈곤취업자의 경우 대학 이상의 비율이 8.31%로 자활참여자의 3.26%에 비하여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빈곤취업자의 경우 대체로 학력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집단 내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이들이 상당수 포함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II-7〉 학력

(단위 : %)

구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학	대학이상
자활참여자	58.08	29.20	9.46	3.26
근로빈곤취업자	44.98	35.76	10.95	8.31

자료 : 한국복지패널 4~18차 원자료 분석

2) 신체적·정서적 건강

자활참여자와 근로빈곤취업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우선 장애가 있는 비율은 자활참여자 12.4%, 근로빈곤취업자 11.1%로 양 집단 모두 일반적인 장애 출현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또한 건강이 나쁘다는 비율 역시 자활참여자는 25.94%, 근로빈곤취업자는 16.96%로 높은 편이었다. 다만, 근로빈곤취업자는 자활참여자 대비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8〉 건강상태

(단위 : %)

구분	장애 비율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보통	나쁨
자활참여자	12.40	43.72	30.34	25.94
근로빈곤취업자	11.09	58.24	24.80	16.96

자료 : 한국복지패널 4~18차 원자료 분석. N=8,679 *자활참여자와 근로빈곤취업자 전체 표본 수로, 결측값을 제외한 값

장애가 있는 이들의 장애 종류를 살펴보면, 자활참여자와 근로빈곤취업자 모두 지체장애의 비율이 40%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각장애가 자활참여자 18.42%, 근로빈곤 취업자 15.31%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적 장애가 자활참여자 15.79%, 근로빈곤취업자 12.29%로 높게 나타났다. 자활참여자의 경우 근로빈곤 취업자 대비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 비중이 작고, 지적 장애나 정신장애의 비중은 높았다. 특히 정신장애의 경우 자활참여자는 13.16%였으며, 근로빈곤취업자는 4.5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9〉 장애 종류

(단위 : %)

구분	자활참여자	근로빈곤취업자
지체장애	40.79	48.38
뇌병변장애	2.63	4.92
시각장애	18.42	15.31
청각장애	2.63	7.60
언어장애	0.00	0.56
정신지체(지적 장애)	15.79	12.29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0.00	0.34
정신장애	13.16	4.58
신장장애	2.63	1.12
심장장애	0.00	0.34
호흡기장애	0.00	0.11
간장애	0.00	0.11
안면장애	0.00	0.11
장루, 요루장애	0.00	0.78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 장애인 포함)	3.95	3.46

주: 장애가 있는 이들에 한정하여, 장애 종류별 비율을 계산함. N= 971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8차 원자료 분석

한편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 역시 자활참여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이 없는 비율은 자활참여자가 39.64%, 근로빈곤취업자가 51.58%였으며, 6개월 이상 투병과 투약하고 있는 경우도 각각 56.61%와 42.99%로 자활참여자의 건강 상태가 더 열악

하게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 횟수도 비슷한 양상이다. 연간 평균 외래진료 횟수는 자활참여자가 22.99번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빈곤취업자의 경우 13.30로 연 10회 가까이 덜 병원을 찾았다.

〈표 II-10〉 만성질환과 의료기관 이용

(단위 : %, 회/연간)

구분	만성질환				외래진료 횟수	입원 횟수
	비해당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3~6개월 투병, 투약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자활참여자	39.64	2.28	1.47	56.61	22.99	0.13
근로빈곤취업자	51.58	3.44	1.96	42.99	13.30	0.11

자료 : 한국복지패널 4~18차 원자료 분석

다만 과도한 음주 비율은 자활참여자 대비 근로빈곤취업자에게서 더 빈번히 나타났다. 과도한 음주 비율은 통상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나는데, 근로빈곤취업자의 높은 음주 비율은 상대적으로 이들 중 남성의 비율이 높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러나 남성으로 한정하더라도 자활참여자의 경우 7.5%, 근로빈곤취업자의 경우 9.3%가 과도한 음주 행동을 나타내어 자활참여자 대비 근로빈곤취업자의 음주가 더 위험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우울 점수는 자활참여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자활참여자의 27.48%는 우울로 판정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근로빈곤취업자 역시 18.13%가 우울로 나타났다. 우울 역시 앞서 음주와 비슷하게 통상 여성의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나므로 남녀로 나누어 우울수준을 살펴보면 자활참여자 여성은 30.9%가, 남성은 19.7%가 우울로 나타나며, 근로빈곤취업자는 여성이 21.1%, 남성이 14.4%가 우울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남녀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자활참여자의 우울 수준이 근로빈곤취업자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활참여자와 근로빈곤취업자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근로빈곤취업자의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남녀를 나누어 살펴보면 자활참여자 남성은 27.6점, 여성은 29.2점의 자아존중감 점수를 보이고, 근로빈곤취업자 남성은 29.7점, 여성은 29.8점의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여성의 경우 근로빈곤취업자와 자활참여자의 점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남성의 경우 근로빈곤취업자 대비 자활참여자의 자존감 점수가 낮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II-11〉 우울과 자존감

(단위 : %, 점)

구분	과도한 음주 비율	우울		자아존중감
		점수	우울증	
자활참여자	3.46	10.91	27.48	28.72
근로빈곤취업자	4.77	8.15	18.13	29.77
N	8,515	8,358		8,364

자료 : 한국복지패널 4~18차 원자료 분석.

다음으로 주요 영역별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가족관계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는 근로빈곤취업자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 만족도의 경우 자활참여자가 근로빈곤취업자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조건임에도 자활 일자리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 자체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12〉 삶의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가족관계 만족도	직업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자활참여자	3.56	3.26	3.47	3.14
근로빈곤취업자	3.67	3.09	3.59	3.22

주: 각 문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N= 8,360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8차 원자료 분석

3) 경제적 상황

자활참여자와 근로빈곤취업자의 가구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자활참여자 대비 근로빈곤취업자의 가구원 수 균등화 중위소득이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운영되는 자활참여자에 비하여 일반 노동시장에 있는 근로빈곤취업자의 가구 상황이 더욱 열악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13〉 가구소득 및 저소득가구 비율

(단위 : 만 원/연간, %)

구분	중위소득		저소득가구 비율
	가처분소득	경상소득	
자활참여자	1,207	1,225	77.65
근로빈곤취업자	1,090	1,150	100.00

주: 가구의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을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값이다.
 자료 : 한국복지패널 4~18차 원자료 분석.

가구의 생활 여건 역시 자활참여자 와 근로빈곤취업자 사이의 큰 차이가 없다. 집세가 밀려 집을 옮기거나 전기, 전화, 수도가 끊긴 경험과 같이 극단적인 경험은 자활참여자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나 돈이 없어서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은 근로빈곤취업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빈곤취업자의 경우 취업 중이라는 점에서 자활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14〉 가구의 생활여건

(단위 : %)

구분	자활참여자	근로빈곤취업자
2달 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4.08	2.66
공과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7.67	10.06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가 끊긴 경험	2.61	1.20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경험	0.33	0.88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4.73	3.83
돈이 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	2.28	3.21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자 여부	12.72	10.66

자료 : 한국복지패널 4~18차 원자료 분석. N=8682

4) 복지경험

이처럼 근로빈곤취업자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도 실제 기초생활소득보장제도 수급 비율은 근로빈곤취업자는 15.06%에 불과하였다. 그에 반하여 자활참여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70.20%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수급자 역시 자활참여자는 77.14%, 근로빈곤취업자는 18.00%였다.

〈표 II-15〉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비율

(단위 : %)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참여자	70.20	77.14	74.29	20.41
근로빈곤취업자	15.06	18.00	18.81	5.35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18차 원자료 분석. N=3312

일자리 관련 복지서비스 경험 역시 근로빈곤취업자의 경우 자활참여자 대비 그 참여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공공근로 참여의 경우 자활참여자 2.12%, 근로빈곤취업자 2.14%로 그 비율이 유사하게 확인되지만, 미취업자 직업훈련제도는 자활참여자 1.49%, 근로빈곤취업자 0.62%였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자활참여자는 2.02%, 근로빈곤취업자는 0.39%만이 서비스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빈곤취업자의 경우 자활참여자 대비 경제적 수준이 열악한 비중이 높고, 일자리를 통한 소득으로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빈곤 관련 복지제도의 수급률이 낮은 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 접근성도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활참여자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용서비스의 접근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16〉 일자리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공공근로	자활	미취업자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 도
자활참여자	2.12	100.00	1.49	2.02
근로빈곤취업자	2.14	0.00	0.62	0.39
N	8,684	8,684	5,423	2,787

자료 : 한국복지패널 4~18차 원자료 분석.

3. 미취업 근로빈곤층의 특성

1) 인구·사회적 특성

다음으로 미취업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살펴보자. 근로역량이 있고 근로의욕도 높아 구직 중인 A 집단은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하거나 고용노동부의 고용서비스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로 여성의 비율이 높고 평균 연령이 34.53세로 낮았다. 혼인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42.08%였다. A 집단과 달리 근로역량이 높지만 근로의욕이 낮아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있는 이들은 평균 연령이 49.07세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역량이 낮지만, 근로의욕이 높은 이들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작은 이들이지만 자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집단으로, 평균 연령은 46.38세며, 절반 이상이 배우자가 있는 이들이었다.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도 낮은 이들은 평균 연령이 가장 높은 52.34세로 자활참여자의 평균 연령에 비해서도 높은 연령대를 나타냈다. 연령이 높음에도 배우자가 있는 비율은 32.69%에 불과하여 생애 미혼이거나 이혼, 사별 등을 경험한 이들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17〉 인구 특성

(단위 : %, 세)

구분	성별(여성 비율)	평균 연령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A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54.73	34.53	42.08
B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54.01	49.07	47.77
C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52.97	46.38	51.60
D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50.63	52.34	32.69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8차 원자료 분석

실제 가구 형태를 살펴보면 D 집단의 경우 단독가구 비중이 28.96%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A 집단이 3.38명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C 집단이 2.85명으로 다음을 기록하였다. 이는 가구원 수가 많고, 단독가구가 아닌 가구에 속한 경우 상대적으로 구직 의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표 II-18〉 가구형태

(단위: 명, %)

구분	가구원수	가구형태				
		단독	모자	부자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 가장	그 외
A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3.38	5.46	0.85	0.19	0.08	93.42
B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2.70	15.43	1.30	0.58	0.08	82.61
C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2.85	13.24	0.91	0.46	0.46	84.93
D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2.22	28.96	1.34	0.63	0.05	69.01

자료: 한국복지패널 1~18차 원자료 분석

거주지역의 경우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이 모두 높은 A 집단의 경우 서울 거주가 20.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의욕이 낮은 이들은 군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B 집단의 10.69%, D 집단의 14.18%가 군에 거주하고 있어 A 집단과 C 집단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기록하였다.

〈표 II-19〉 거주지역

(단위: %)

구분	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
A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20.23	31.12	36.25	9.43	2.97
B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14.72	33.94	38.28	10.69	2.37
C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15.98	44.29	31.51	7.31	0.91
D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13.58	38.34	31.90	14.18	2.00

자료: 한국복지패널 1~18차 원자료 분석

학력은 A 집단의 학력 수준이 높게 나타나 전체 26.26%가 대졸 이상의 학력을 나타냈다. 중졸이하의 저학력자는 16.20%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근로능력 미약자의 경우 중졸이하가 50%를 넘어서서 저학력자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로역량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실망실업자 또는 구직단념자 역시 중졸이하가 35.47%로 상대적으로 높아 낮은 학력 수준을 나타냈다.

〈표 II-20〉 학력

(단위 : %)

구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학	대학이상
A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16.20	33.21	24.33	26.26
B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35.47	37.87	11.75	14.91
C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58.90	25.57	8.22	7.31
D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57.82	31.51	6.34	4.33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8차 원자료 분석

2) 신체적·정서적 건강

신체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장애출현율은 A 집단의 경우 3.64%로 상당히 낮게 나타난 반면, D 집단의 경우 56.20%로 절반 이상이 장애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근로역량이 낮은 이들의 장애출현율이 높았지만, 근로역량이 있는 이들 중에서도 근로의욕이 낮은 이들은 15.26%가 장애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중 역시 D > C > B > A 순으로 근로역량이 낮을수록, 근로의욕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이 상당 부분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21〉 건강상태

(단위 : %)

구분	장애 비율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보통	나쁨
A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3.67	79.66	13.71	6.64
B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15.26	51.30	25.86	22.84
C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33.79	26.03	20.09	53.88
D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56.20	14.54	22.19	63.26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8차 원자료 분석 주관적 건강상태(N=18,787)

한편, 장애가 있는 이들의 장애 종류를 살펴보면, 지체 장애의 비율이 대체로 높았으며, 특히 C 집단의 경우 지체장애의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근로의욕이 낮은 B 집단과 D 집단의 경우 지적 장애와 정신장애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근로역량은 낮으나 근로의욕은 높은 이들 또한 상대적으로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이 모두 높은 A 집단 대비 지적 장애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았으며, 정신장애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A 집단을 제외하고는 지적장애와 정신장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이 모두 높은 집단에서는 시각장애와 언어 장애 비율이 여타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표 II-22〉 장애 종류

(단위 : %)

구분	A 집단: 근로역량 ↑ 근로의욕 ↑	B 집단: 근로역량 ↑ 근로의욕 ↓	C 집단: 근로역량 ↓ 근로의욕 ↑	D 집단: 근로역량 ↓ 근로의욕 ↓
지체장애	48.26	41.31	50.00	33.24
뇌병변장애	2.43	3.97	2.70	10.49
시각장애	15.63	9.52	5.41	8.00
청각장애	6.94	6.65	2.70	2.39
언어장애	2.43	0.65	1.35	0.54
정신지체(지적 장애)	4.17	10.44	9.46	17.13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0.35	0.46	0.00	1.27
정신장애	5.90	12.48	8.11	11.76
신장장애	1.04	4.34	8.11	8.35
심장장애	0.69	0.65	4.05	1.12
호흡기장애	0.35	0.65	0.00	1.22
간장애	0.69	1.02	0.00	0.29
안면장애	1.04	0.37	0.00	0.05
장루, 요루장애	0.00	0.37	1.35	0.20
간질장애	0.69	1.66	0.00	1.76
비등록장애인(보훈처등록 장애인 포함)	9.38	5.45	6.76	2.20

주: 장애가 있는 이들에 한하여 장애 종류별 비율을 계산함. N= 3,493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8차 원자료 분석

만성질환이 있는 비율은 건강상태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도 낮은 이들의 경우 83.65%가 6개월 이상 투병 또는 투약하고 있어 대부분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외래진료 횟수 역시 이러한 건강상태와 같은 추세를 나타내는데, D 집단의 경우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3.47건으로 자활참여자의 22건을 넘어섰다. 한편, B 집단과 C 집단의 경우 각각 25.86건, 20.09건으로 자활참여자의 의료이용 횟수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표 II-23〉 만성질환과 의료기관 이용

(단위 : %, 횟수/연간)

구분	만성질환				외래진료 횟수	입원 횟수
	비해당	3개월 미만 투병, 투약	3~6개월 투병, 투약	6개월 이상 투병, 투약		
A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79.01	3.34	1.42	16.23	6.43	0.12
B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42.12	3.40	1.97	52.51	15.62	0.21
C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28.77	0.46	1.37	69.41	26.51	0.42
D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13.71	1.59	1.04	83.65	33.47	0.48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8차 원자료 분석, 만성질환(N=18,793), 외래진료횟수, 입원횟수(N=18,790)

다음으로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을 살펴보면, 과도한 음주 비율은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도 낮은 D 집단에서 5.0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미취업자 4개 집단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자활참여자와 근로빈곤취업자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들 D집단이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가 가장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문제 및 사회관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인다.

우울의 경우 근로역량이 낮은 이들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나, 근로역량이 낮으면서 근로의욕은 높은 이들의 54.95%가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는 수준의 우울점수를 나타냈다. 통상적으로 건강상태나 가구형태 등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양상을 나타내는 D 집단에 비하여 C 집단의 우울 수준이 높다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지점으로 보인다.

한편, 자아존중감은 근로역량이 낮은 이들이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D 집단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근로역량이 높은 이들 중에서는 근로의욕이 있는 이들이 근로의욕이 낮은 이들에 비하여 자아존중감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미미한 차이였다.

〈표 II-24〉 우울과 자존감

(단위: %, 점)

구분	과도한 음주 비율	우울		자아존중감
		점수	우울증	
A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4.58	7.67	16.66	30.53
B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4.67	8.53	20.40	29.19
C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3.85	18.10	54.95	27.39
D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5.03	15.67	45.76	25.87
N	14,429	16,836		16,837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8차 원자료 분석.

여러 항목의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가족관계 만족도는 A > B > C > D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역시 유사한 패턴을 나타냈다. 특히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도 낮은 집단의 경우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 만족도는 근로역량이 낮지만, 근로의욕은 높은 C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25〉 삶의 만족도

(단위: 점)

구분	가족관계 만족도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A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3.88	3.62	3.31
B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3.72	3.52	3.33
C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3.56	3.29	2.68
D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3.43	3.15	2.90

주: 각 문항에 대한 만족도 점수는 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N= 16,842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8차 원자료 분석

3) 경제적 상황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면,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 모두 근로역량은 낮고 근로의욕이 높은 C 집단에서 가장 낮은 중위소득을 기록하였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비율과는 다소 차이를 갖는 결과다. 근로역량이 낮은 집단에서 저소득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근로역량이 동일한 집단 중에서는 근로의욕이 낮은 집단에서 저소득 가구 비율이 높았다. 즉, 저소득 가구 비율은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도 낮은 집단에서 74.85%로 가장 높았으나,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의 중의 값은 C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26〉 가구소득 및 저소득가구 비율

(단위 : %)

구분	중위소득		저소득가구 비율
	가처분소득	경상소득	
A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1,825	1,966	26.25
B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1,744	1,856	42.78
C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836	857	62.84
D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1,100	1,121	74.85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8차 원자료 분석, 중위소득(N=18,791), 저소득가구(N=18,263)

C 집단의 어려운 생활상은 가구의 생활 여건에서도 드러난다. 이들의 24.06%가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16.04%는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자가 있었다. 이러한 비율은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이 모두 낮은 D 집단에 비해서도 높은 비율이었다. 다만,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이 모두 높은 A 집단 역시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중이 8.40%로 구직 중인 미취업자 역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27〉 가구의 생활여건

(단위 : %)

구분	A 집단: 근로역량 ↑ 근로의욕 ↑	B 집단: 근로역량 ↑ 근로의욕 ↓	C 집단: 근로역량 ↓ 근로의욕 ↑	D 집단: 근로역량 ↓ 근로의욕 ↓
2달이상 집세가 밀리거나 낼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	2.46	1.28	<u>5.19</u>	2.83
공과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한 경험	<u>8.40</u>	4.95	<u>24.06</u>	<u>7.23</u>
세금을 내지 못해 전기, 전화, 수도가 끊긴 경험	1.46	0.75	<u>7.08</u>	1.40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못 준 경험	0.84	0.41	<u>4.72</u>	0.30
돈이 없어 겨울에 난방을 못한 경험	2.38	2.41	<u>13.68</u>	5.75
돈이없어 본인이나 가족이 병원에 못간 경험	2.81	2.10	<u>11.79</u>	4.40
가구원중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자 여부	7.54	6.89	<u>16.04</u>	10.67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8차 원자료 분석 N=18,629

4) 복지경험

다음으로 복지경험을 살펴보면, A 집단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률이 5.32%로 낮게 나타났다. 반면, D 집단은 58.40%가 생계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 중위임금 수준이 낮고 생활여건이 가장 열악했던 C 집단의 경우 생계급여 비율은 25.0%로 높은 수준으로, D 집단의 절반 수준이었다. 물론 맞춤형 급여 이후 기초보장제도 수급비율의 경우 C 집단의 사례 수가 20개로 작아 이의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II-28〉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비율

(단위 : %)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A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5.32	6.14	6.53	1.64
B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14.31	15.58	15.45	2.76
C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25.00	25.00	35.00	0.00
D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58.40	60.15	59.87	4.83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8차 원자료 분석. N=8,555

일자리 관련 복지서비스의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미취업자 집단 모두 자활서비스 참여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근로역량이 낮고 근로의욕이 높은 C 집단의 경우 자활 참여율은 0.00%로 작았던 반면, 공공근로 참여율은 5.66%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미취업자 직업훈련제도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근로의욕이 높은 이들에게서 그 수급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 집단의 경우 미취업자 직업훈련과 국민취업지원 제도 각각 4.16%와 2.47%가 서비스를 경험하였으며, C 집단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경험한 비율이 5.26%를 나타냈다. 이들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만큼 관련 훈련이나 고용서비스 참여에도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근로의욕이 낮은 이들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경험 비율이 B 집단 0.15%, D 집단 0.38%로 1% 미만으로 나타나, 고용서비스를 통한 역량개선이나 근로의욕 고치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29〉 일자리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

(단위 : %)

구분	공공근로	자활	미취업자 직업훈련	국민취업 지원제도
A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0.93	0.30	4.16	2.47
B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0.84	0.50	0.41	0.15
C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5.66	0.00	0.00	5.26
D 집단: 근로역량↓ 근로의욕↓	0.28	0.35	0.32	0.38
N	14,937	14,937	11,364	7,165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8차 원자료 분석

4. 소결

본 장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자활사업 참여자와 근로빈곤층의 특성, 자활사업의 잠재적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미취업자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자활사업의 확대 대상자라 할 수 있는 미취업자의 경우 근로역량과 근로의지를 기준으로 4개 집단으로 나누어 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근로빈곤취업자 대비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낮고, 배우자가 없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단독이나 모자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근로빈곤취업자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였고 우울 점수도 높았다. 또한 장애출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가 있는 이들 중에는 지적 장애나 정신장애 비중이 근로빈곤취업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과도한 음주 비율은 자활참여자에게서 더 낮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낮음에도 직업 만족도는 자활참여자가 근로빈곤취업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근로빈곤취업자에 비하여 평균 가구소득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복지 수급 경험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활참여자의 경우 여러 조건이 열악함에도 사회보장제도의 접근성이 근로빈곤취업자에 비하여 높으며, 특히 자활사업을 통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직업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대로 근로빈곤층의 경우 건강상태 등 객관적인 조건은 양호하지만, 일을 통하여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비율이 10%에 이르렀다. 특히 직업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의 추가적인 확대 대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어 보인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라 할지라도 월 90만 원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자활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고용의 질을 높여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만큼, 자활서비스의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구인회 외, 2024).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이 있는 집단(A 집단)에 비하여 근로역량이나 근로의욕, 둘 중 한 가지가 갖춰지지 않거나(B 집단, C 집단), 두 가지 모두 낮은 이들(D 집단)의 객관적인 조건이 더 열악하게 나타났다. 특히 D 집단의 경우 연령이 높고, 1인 가구인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며, 건강상태가 열악했다. 또한 장애가 있는 비율이 절반 가까이 이르렀으며, 특히 지적 장애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과도한 음주 비율이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났

다. 가족관계 만족도와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 다만, 이들의 기초보장제도의 수급률은 높았다. 또한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능력 수준이 미약하여 일반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우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적극적 구직활동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D 집단의 특징들은 다양한 차원의 불안정성이 높고, 혼인상태가 다양하며, 음주 문제를 나타내는 중장년 1인가구의 특징과 유사해 보인다(윤지영·이소영, 2022). 즉, 1인 가구 비율이 높아 노동시장과 가족 중 어느 곳에도 소속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 즉, 이들이 사회적인 고립 상태에 이르지 않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보장제도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근로의욕은 있지만, 근로역량이 미약한 C 집단의 경우 D 집단 대비 건강이나 연령, 가족관계 등은 양호하나,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 가량이 공과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으며,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된 경험 역시 16% 정도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가처분소득과 경상소득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은 가족관계 만족도나 사회적 친분관계 만족도가 D 집단에 비해서는 높았으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우울 수준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 지적장애나 정신장애의 비율은 A 집단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으나, B나 D 집단에 비해서는 낮았다. 대신 지체장애의 비중이 절반가량으로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다. 이들의 경우 근로능력은 미약하지만, 구직활동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좌절 경험으로 우울 점수가 높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들의 자활급여 수급률은 0.0%로 자활사업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공공근로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비율은 5%를 웃돌았다. 이처럼 노동시장 내 진입은 어렵지만, 적극적인 근로의지를 지닌 이들에 대한 자활사업의 확대가 적극적으로 모색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황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점에서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해 보인다.

근로역량은 양호하지만, 근로의지가 없는 B 집단의 경우 C 집단이나 D 집단에 비하여 모든 결과가 대체로 양호하지만, 근로역량이 양호하고 근로의지가 있는 A 집단 대비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집단은 A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애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가 있는 이들 중에는 정신장애나 지적장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래진료 횟수도 A 집단의 2배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A 집단에 비하여 우울 점수는 높고, 자아존중감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 가구 비율이 42.78%로 A 집단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복지

제도 수급 비율과 고용 관련 서비스 수급 비율 역시 매우 낮아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저소득 가구이며, 근로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도 구직활동을 위한 아무런 제도의 혜택에 포함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들 역시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개입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자활사업의 보다 광범위한 사업 대상으로 사회통합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는 근로빈곤취업자와 자활사업참여자로, 미취업자는 근로의욕과 근로역량에 따라 4개의 집단으로 나누었으나, 이들 집단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근로의욕에 따라 집단을 나눈 미취업자의 경우 근로의욕이 높다가도 취업준비의 부족, 거둬드는 취업실패 등으로 구직단념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실패의 경험은 이후 고립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기도 한다(조미형·고아라, 2022). 또한 근로 능력이 미약한 경우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머물러 근로빈곤취업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현재 구직 의사가 있으며, 근로역량이 낮은 집단의 경우 구직단념에 이르지 않고, 근로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고용서비스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자활사업은 상대적으로 근로역량이 낮은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노동시장 참여를 대상으로 하는 여타 고용서비스에 비하여 대상자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구직단념에 이른 집단의 경우 구직을 위한 고용서비스의 이용 자체가 낮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을 발굴하여 고립에 이르지 않고 사회통합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근로빈곤층과 근로능력이 있으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B 집단), 근로능력이 미약하지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집단(C 집단)의 경우 저소득가구의 비율이 높고, 중위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생계급여)를 넘거나, 48%(주거급여)를 넘어서 자활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근로역량이 낮아 일반적인 고용서비스를 통한 자활이 어렵거나 거둬드는 실패로 구직단념상태에 이르러 고용서비스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운 집단이 있다는 점에서 욕구가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의 소득 기준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에 관한 질적분석

1. 자활사업 참여 확대 예상 대상자 심층 FGI
2.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에 관한 전문가 자문회의

III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에 《 관한 질적분석

1. 자활사업 참여 확대 예상 대상자 심층 FGI종

1) 조사 개요

본 장에서는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자의 특성을 도출한 양적분석의 결과(2장)를 토대로 청장년층 집단을 잠재적인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으로 보았다.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청장년층 집단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정신건강 취약계층 청장년, 은둔고립청년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면접자료를 이용하여 ‘청장년 집단별 구직·실업·일 경험’, ‘청장년의 자활사업 인식과 참여 경험’, ‘자활사업 참여 및 기능 확대 방안’ 세 가지 축으로 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를 깊이 있게 조망하기 위해 양적 분석 결과와 질적분석 결과를 비교·통합하고자 한다.

(1) 조사 목적 및 대상

① 조사 목적

본 장은 문헌고찰과 양적연구를 토대로 자활사업의 잠재적인 확대 대상 집단을 청장년으로 특정하고,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은둔고립청년 5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집단별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자활사업 확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② 조사대상

FGI 조사의 대상자는 청장년이며, 연령 범위는 19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이다. 조사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유관기관(청년지원센터, 정신건강센터 등)에 연락을 취하여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고 대상자 섭의를 요청하였다. 집단별 연구 참여자의 선정 조건은 <표 III-1>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III-1> 집단별 연구 대상자 선정 기준

모집대상	선정 기준
자립준비청년(가)	· 자립준비청년(만 5년 이내) 또는 보호종료 만 5년이 초과된 자
가족돌봄청년(나)	· 가족 돌봄으로 학업,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자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다)	· 웨슬러지능검사 결과(65-84) 경계선 지능을 가진 자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라)	·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전문적인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한 자
은둔고립청년(마)	· 집 안에서 6개월 이상 사회와 교류를 차단하였거나 최근 한 달 내 직업 구직활동이 없는 청년 · 정서적 또는 물리적으로 타인과의 관계망이 단절되었거나, 외로움 등의 이 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립 상태에 있는 청년
공통	· (자활사업 참여) 현재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하였던 경험이 있는 자 · (자활사업 미참여) 자활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 26명을 모집(자립준비청년 8명, 가족돌봄청년 3명,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9명,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4명, 은둔고립청년 2명)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집단심층면접(총 9회, 회당 90분 내외)을 실시하였다. 집단별 연구 참여자는 다음 <표 III-2>와 같다.

전체 연구 참여자 특성을 살펴보면, 26명 중 남성이 19명으로 많았으며, 평균 연령은 30.2세였다. 학력은 대부분(14명)이 고졸이었으며, 전문대졸 4명, 대학교재학 5명, 대졸 3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다수는 미혼 상태(24명), 비경제활동(17명), 비장애(22명)였으며, 거주 상황은 단독이 15명, 부모와 거주 11명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거주지는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9명, 인천은 3명, 기타(강원/전북)의 경우 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중 9명이 자활사업에 참여

하였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었으며, 자활사업에 대한 만족도(무응답 1명 제외)는 평균 4.1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립준비청년(가-01~08) 8명 중 남성 6명, 여성 2명이며, 평균 연령 24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5명, 전문대졸 1명, 대학교재학 2명이었으며, 모두 미혼의 단독가구였다.

가족돌봄청년(나-01~03) 3명 중 남성 2명, 여성 1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4.3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2명, 대학교재학 1명이었으며 가족 돌봄 상황이다 보니 모두 부모와 거주하고 있었다. 세 명 모두 비경제활동 중이었으며 자활사업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없었다.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다-01~09)은 9명이며, 이들 중 남성은 5명, 여성은 4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7.4세이며, 학력은 고졸이 4명, 전문대졸 1명, 대학교재학 1명, 대졸 3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부모와 거주, 비경제활동 상태였다. 이들은 경계선 지능인으로 장애 등록을 하지 못하였으며, 2명만이 자활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었다.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라-01~04) 4명 모두 남성이며, 평균 연령이 52.5세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2명, 전문대졸 2명이었으며 모두 비경제활동 상태였다. 이들은 미혼 2명, 이혼 2명으로 4명 모두 단독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 2명(미등록 포함), 비장애 2명으로 나타났다. 타 집단과 비교하여 집단 내 특성이 가장 이질적이다.

은둔고립청년(마-01~02) 2명 모두 남성이며, 평균 연령은 32세, 학력은 고졸과 대학교졸업이었다. 이들 모두 미혼, 단독 거주 중이며, 한 명은 경제활동(정규직), 또 다른 참여자는 비경제활동 상태였다. 장애 여부와 관련해서는 비장애, 미등록(정신과적 질환 있음)이었으며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표 Ⅲ-2〉 연구 참여자 일반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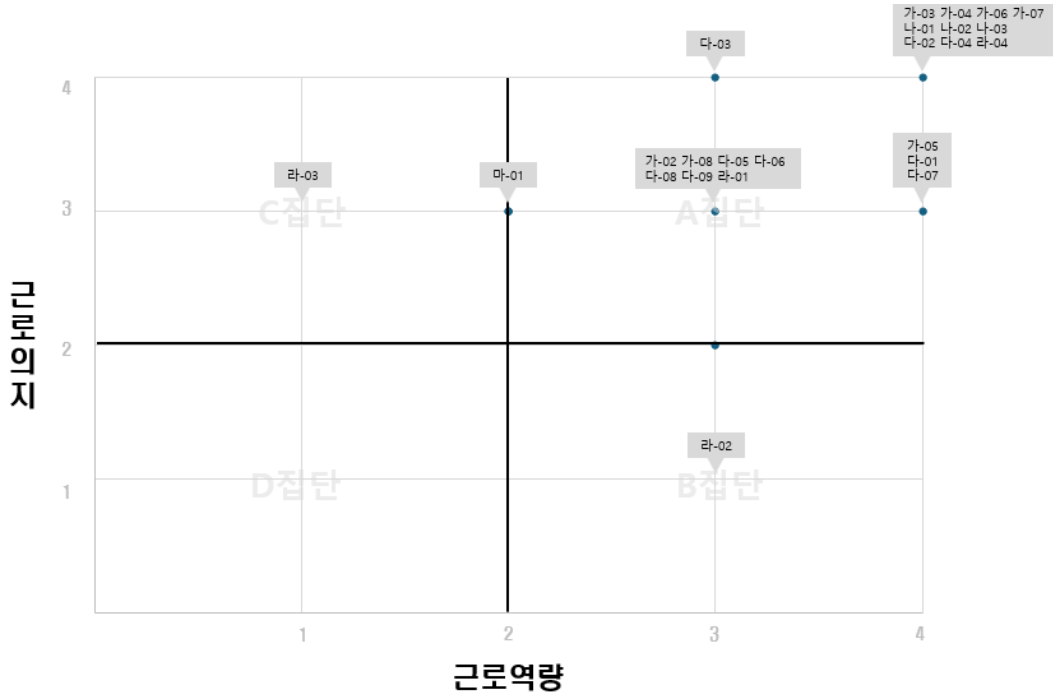
ID	성 별	나 이	학력	혼인 여부	거주 상황	경제활동 상태	근로형태	장애 여부	거주 지	자활사업 참여 경험 (만족도)
가-01	남	27	전문대졸	미혼	단독	비경제활동	-	비장애	경기	×
가-02	여	26	대학교재학	미혼	단독	비경제활동	-	비장애	경기	○ (3.0)
가-03	남	20	대학교재학	미혼	단독	비경제활동	-	비장애	경기	×
가-04	여	23	고졸	미혼	단독	경제활동	자활근로	비장애	서울	○ (4.5)
가-05	남	21	고졸	미혼	단독	경제활동	자활근로	비장애	서울	○ (4.0)
가-06	남	26	고졸	미혼	단독	경제활동	자활근로	비장애	경기	○ (4.0)

ID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여부	거주 상황	경제활동 상태	근로형태	장애 여부	거주 지	자활사업 참여 경험 (만족도)
가-07	남	26	고졸	미혼	단독	경제활동	자활근로	비장애	경기	○ (4.0)
가-08	남	23	고졸	미혼	단독	경제활동	자활근로	비장애	전북	○ (5.0)
나-01	남	20	고졸	미혼	부모와 거주	비경제활동	-	비장애	인천	×
나-02	남	26	대학교재학	미혼	부모와 거주	비경제활동	-	비장애	인천	×
나-03	여	27	고졸	미혼	부모와 거주	비경제활동	-	비장애	인천	×
다-01	남	27	대졸	미혼	부모와 거주	경제활동	자활근로	비장애	서울	○ (4.0)
다-02	여	25	고졸	미혼	부모와 거주	경제활동	정규직	비장애	서울	○ (4.8)
다-03	여	30	전문대졸	미혼	부모와 거주	비경제활동	-	비장애	강원	×
다-04	남	32	대졸	미혼	부모와 거주	비경제활동	-	비장애	서울	×
다-05	여	33	대학교재학	미혼	부모와 거주	비경제활동	-	비장애	서울	×
다-06	남	25	대졸	미혼	부모와 거주	비경제활동	-	비장애	서울	×
다-07	남	23	고졸	미혼	부모와 거주	비경제활동	-	비장애	서울	×
다-08	남	23	고졸	미혼	부모와 거주	비경제활동	-	비장애	서울	×
다-09	여	29	고졸	미혼	단독	비경제활동	-	비장애	서울	×
라-01	남	52	고졸	이혼	단독	비경제활동	-	장애	경기	×
라-02	남	61	고졸	이혼	단독	비경제활동	-	비장애	경기	○ (-)
라-03	남	46	전문대졸	미혼	단독	비경제활동	-	미등록	경기	×
라-04	남	51	전문대졸	미혼	단독	비경제활동	-	비장애	경기	×
마-01	남	34	대졸	미혼	단독	경제활동	정규직	미등록	서울	×
마-02	남	30	고졸	미혼	단독	비경제활동	-	비장애	서울	×

주 : 자활사업참여경험 (만족도)는 자활사업 참여자에 한하여 조사하였으며, 5점 만점으로 측정됨.

연구 참여자의 지각된 근로능력과 근로의지는 아래 [그림 III-1]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집단심층면접의 네 개 집단은 높은 근로역량과 높은 자립의지를 나타내고 있어(점선 표시),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으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일부는 낮은 근로역량(라-03) 또는 낮은 자립의지(라-02)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확대 방안 이외에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림 Ⅲ-1〉 연구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근로의지



주: 1) A~D 집단은 양적분석의 기준 변인인 근로역량과 근로의지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2) 응답자 코드는 가(자립준비청년), 나(가족돌봄청년), 다(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라(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마(은둔 고립청년)로 구분하였으며, 가-01, 마-02는 무응답으로 제외함.

(2) 조사 설계

① 조사 설계 착수 및 조사 도구 개발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은둔고립청년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연구진 내부 검토(2회)를 통해 조사 틀을 설계하였다. 조사 항목은 크게 구직·실업·일 경험 특성, 자활사업 참여 경험, 자활사업 참여 및 기능 확대 방안 3개 차원으로 구성되었다(표 Ⅲ-3).

〈표 III-3〉 조사 항목

차원	지표	내용
구직·실업·일 경험 특성	구직과정 경험	· 구직 당시 삶의 상황 · 구직활동 내용과 방법, 일자리 결정 기준, 도움 되었거나 만족스러웠던 점, 어려웠던 점
	실업 경험	· 실업 이유, 실업 후 어려움
	일 경험	· 취직 경로,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애로사항, 만족스러웠던 점
자활사업 인식과 참여 경험	자활사업 인식	· 자활사업 인지, 자활사업에 대한 기대
	자활사업 경험	· 자활사업 참여계기, 신청과정 경험, 자활지원계획 수립과정, 연결된 사업, 참여중지 및 제한 경험, 취업 실패 경험
	참여 후 변화	· 참여 초기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경제적 상황, 심리·정서적 측면, 대인관계 측면, 근로 및 자립 측면 등)
자활사업 참여 및 기능 확대 방안	요구사항	· 자활사업 미참여 이유, 다른 고용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 필요한 서비스(지원)

② 조사 설계 착수 및 조사 도구 개발

연구 참여자 집단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은둔고립청년을 모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연구 대상자 모집 협조를 요청하였다. 연계된 기관 또는 인근 장소에서 면접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사전에 면담지를 제공하여 연구 대상자가 연구에 대한 충분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③ 조사 절차 및 방법

연구 대상자 집단별로 연구원 1~3명(사회복지학 박사 1~2명, 석사 1명)이 조사하였으며, 박사 1인이 주 진행, 박사 1인 또는 석사 1인이 보조 진행하였다. 면접 시작 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내용, 비밀보장, 녹취 동의 여부, 중간에 연구 참여 철회 가능 등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 동의를 재확인하였다. 이후 정교한 분석을 위한 녹취에 대한 동의를 얻고 녹취하였다.

주 조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응답자 일반사항(성별, 연령, 학력 등) 체크를 요청하고, 간단한 시작 질문 후 주요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면접을 진행하였다. 주요 질문

은 ‘구직 당시의 경제적 상황은 어떠하셨나요?’, ‘자활사업에 어떠한 생각이나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나요?’ 등이다. 면접은 주 조사자가 진행하고 동행한 연구원이 추가 질문을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접 시간은 회당 90분 내외 소요 되었다. 심층 면접은 총 9회 실시(집단심층면접 7회, 은둔고립청년 대상 개별심층면접 2회)하였으며, 9개 녹취파일은 클로바 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축어록으로 변환하고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부호화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보호하였다. 녹음파일은 축어록의 오탈자 등 이차 검토 후에 폐기하였다.

면접 참여에 대한 보상을 개별적으로 지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집한 주소, 은행, 계좌번호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④ 자료 분석 방법

축어록에 대한 분석 방법은 질적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Baron & Charke(2006)의 주제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원자료를 반복해서 읽고 주요 관심 현상의 의미를 찾아 유의미한 진술을 추출하여 코드를 부여하였다. 생성된 코드를 지속적으로 비교·대조하면서 의미 단위를 연구자만의 언어로 변환하여 중주제로 수렴하였으며, 중주제는 다시 대주제로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집단별 범주와 주제의 구체적 진술 내용을 논의하여 당사자의 시각에서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 집단별 구직·실업·일 경험 특성’은 네 개의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청장년의 자활사업 인식과 참여 경험’, ‘자활참여 참여 및 기능 확대 방안’ 두 범주는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표와 대표적인 진술을 제시하였다. 소주제를 잘 설명해 주는 진술문 1~4개를 제시하고, 연구 참여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표현을 보충하기 위해 괄호치기를 통해 진술을 보완하였다.

⑤ 윤리적 고려

본 조사는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하여 실시하였다. 면접 이전에 녹취에 대한 동의를 얻고 연구 참여 도중 언제라도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다. 또한 면접 과정에서 자신과 특정 개인의 신상 정보를 언급하더라도 부호화하여 개인을 특정할 수 없게 보호한다

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연구진은 면접 과정에서 질문 내용이 부정적인 과거나 생각을 떠올려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조사하였다.

⑥ 타당도 확보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진 내부 검토하였으며, 집단별 분석 결과를 비교·대조하여 내재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자 및 확대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양적 결과와 비교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제고하였다.

2)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 집단별 구직·실업·일 경험 특성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 집단별(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은둔고립청년) 구직·실업·일 경험 특성을 분석하였다.

〈표 III-4〉 자활사업 참여 확대 집단별 구직·실업·일 경험 특성 분석 결과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가) 자립준비청년		
(1) 계속해서 준비하지만 순조롭지 않은 자립	① 떠밀리듯 준비하는 자립과 진로 제약	· 보호 상황(시설, 쉼터, 위탁가정 등)에서 지속적인 자립 준비를 요구받음 · 진로 탐색 과정에서 자율성에 제한이 있음
	② 불안정한 취업과 진로	· 고졸 학력으로는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많지 않음 · 단순 기술과 자격증으로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취업을 하기 어려움
	③ 적성 불일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방황과 소진	· 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나 일을 그만두고 방황함 · 열악한 근로환경(저임금, 높은 근로강도 등) 속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고갈됨
(2)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자립과 장애물	④ 지원의 한계와 이중적 잣대	·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원정책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은 보호종료로부터 5년 이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이후에는 각종 지원이 중단됨 · '시설(쉼터) 출신'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맞대함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나) 가족돌봄청년		
(1) 청년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경제활동	① 졸업 후 먹고 살기 위한 근로	·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러 일을 하게 됨 · 수급자 탈락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임금 수준을 조정하거나 소득이 잡히지 않는 알바를 함
	② 근무 환경에서 부당한 대우, 열악한 처우 경험	·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금을 받지 못함 · 힘든 일을 시키는 등 차별 대우 경험함 · 급여에 비해 신체적 노동강도가 매우 높았음
	③ 일 경험 후 찾아온 심리적, 신체적 상처	· 집에서는 돌봄(간병)을 하고 밖에서는 일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음 · 강도 높은 일 경험으로 질병과 정신질환이 찾아옴
(2) 꿈을 이루기 위한 커다란 결심	④ 자기돌봄비 지원을 계기로 학업에 매진	· 학생 때부터 가져왔던 직업적 꿈을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대학원에 진학함
(3) 자기개발과 취업을 가로막는 장벽	⑤ 공공서비스의 실효성 문제 경험	· 고용센터 취업연계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였음 · 훈련 프로그램의 종류가 한정적임 · 시범사업인 자기돌봄비 지원(인당 200만 원 일시금)에 선정되었지만, 현장결제만 허용하는 등 사용처와 방법의 제한이 큼
	⑥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어버린 수급자 가족	· 정규직에 취업하는 경우 수급자 탈락되어 막대한 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음
(다)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1) 장애와 비장애 경계에서 살아감	① 학업 준비 과정에서의 좌절	· 고등학교 졸업 후, 기술학원, 대학교 등을 다니지만 시학업난이도가 높아 중도 포기하거나 좌절을 경험함
	②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운 취업	· 자립에 대한 높은 의지로 개인적인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계속하지만, 취업 자체가 너무 어려움 · 이력서 작성 자체가 쉽지 않음 · 면접에서 번번이 탈락하거나 하루 만에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함
	③ 초기 취업의 부적응과 정규직 취업 실패	· 인턴 기회를 얻어도 근무평가가 좋지 못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함 · 일 적응과 대인관계 어려움이 결합되어 퇴사를 고려함
	④ 직장 내 대인관계 어려움과 부당 대우 경험	· 여러 근무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와 무시 등으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함
	⑤ 지속적인 구직 실패로 인한 자기비난과 자존감 저하	· 계속된 실패의 경험과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내면화된 자기비난과 무력감이 지속됨 · 일 자체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고 트라우마가 쌓임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라) 정신건강 취약계층 청장년		
(1) 거듭된 취업실패로 인한 절망감	① 산재, 부도 등으로 실직 경험	·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직장에서 허리를 다쳤거나, 산업환경의 변화로 일자리를 잃음
	② 재도전의 실패	· 가족 사업 중 불화, 직장 내 따돌림, 질병, 이혼 등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
(2)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	③ 정신질환 발병 및 자살 시도	·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 발병함 · 자살시도로 보건소로 연계되거나 정신병원 행정입원하게 됨
	④ 더 나은 삶을 위한 고군분투	· 취업정보사이트, 동사무소 취업알선, 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갖기 위해 노력함
	⑤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	· 가족들에게 떳떳하고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짐 · 자신을 도와주고 믿어준 사람들(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에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보답하고 싶음 · 직장생활을 할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가짐
(마) 은둔고립청년		
(1) 장기적인 취업준비와 반복된 실패	① 취업 준비에 장기간 기울인 노력과 실패의 경험	· 대학교 입학, 공무원 시험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함 · 어렵게 입학한 대학교에서 전공에 대한 적성에 맞지 않거나 아쉽게 시험에 탈락하면서 자신감이 무너지게 됨
	② 실패로 인한 자존감 저하와 부정적 자기 평가	· '나는 실패자'라는 낙인감을 느끼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짐
(2) 실업상태와 은둔 생활	③ 인간관계의 단절	· 오랜 공부와 취업 준비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인간관계가 끊기게 됨 · 경제적 이유로 인간관계를 의도적으로 회피함
	④ 생계를 위한 알바 및 단기 근로 생활	· 공공일자리, 단기 아르바이트와 같은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 생활이 이어짐
(3) 심리적 위기와 사회적 고립	⑤ 우울증과 불안으로 상담 및 치료	· 반복된 구직 실패와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감과 무기력증이 심화됨
	⑥ 장기 은둔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불안과 기능 저하	· 타인과의 의사소통 기술이 저하됨 · 대인기피증과 유사한 상호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느낌 · 친밀한 관계에서 불안감과 긴장도가 높아짐
	⑦ 직장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	· 운 좋게 구직에 성공해도 과거 실패 경험이 상기되어 스트레스가 심해짐

(1) 자립준비청년

① 계속해서 준비하지만 순조롭지 않은 자립

(ㄱ) 떠밀리듯 준비하는 자립과 진로 제약

연구 참여자들은 시설(쉼터)에서 자립을 준비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과 제약을 잘 설명해 주었다. 이들은 과거 개인의 적성이나 꿈과는 무관하게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준비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였다. 대학 진학 대신 마이스터고로의 진학을 권유받거나, 직업기술을 습득해 취업할 것을 종용받으면서, 자립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 취업이 강요된 선택으로 느껴지기도 하였다. 이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진로에 대한 내적 동기보다 외부의 요구에 따라 길을 선택하게 되어 삶의 만족도나 자아 성취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은 학업과 함께 20살 이후 경제적 자립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제로 인해 시설의 프로그램을 반강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구조적 제약을 말해주기도 하였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적성과 진로를 고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20살이 되면 저희가 돈을 딱 벌어야 되는데 보육원에 들어가려면 보통 고등학교를 재학을 하거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는 돈을 버는 거고 자립을 하려면 미성년자 때 미리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제한이 있죠) 공부를 해서 대학을 진학할 게 아니면은 빨리 검정고시를 본 다음에 좀 더 자격증을 따다 듣거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는데 규칙상 이게 학교를 그만두면 퇴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02)

그룹홈이나 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마이스터고를 보냅니다. 굳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서 네가 대학 진학을 할 생각이 없다면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해라라고 처음부터 권장을 해서 대부분이 그런 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마이스터고는 그냥 가라 해서 가는 경우가 대다수고, 자격증을 따라 해서 따고 취업을 해서 했는데, 그건 내가 원하는 일도 아니고... (가-03)

처음에는 (기술학원) 가기 싫었어요. 너 이거 (참여)안 하면 지원(에서) 빼 버린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서. 처음에는 안 좋게 생각했어요. (가-04)

(ㄴ) 불안정한 취업과 진로

면접에 참여한 자립준비청년들은 불안정한 취업과 진로 문제의 두드러진 면을 진술해 주었는데, 일반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 후 취업에 성공하지만, 고졸 학력으로 인해 안정적인지 못한 단기 취업에 머무르거나,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실은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어려우며, 고졸 학력으로는 취업 이후에도 사회적 인식이나 직업 내 안정성과 성장에 제약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찍부터 자립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에서 비정규직 경험이나 기초적인 기술 습득으로는 경쟁력 있는 스펙을 쌓기 어렵다는 현실을 말해주기도 하였다.

알바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조금 모을 수 있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일하고 공부를 (병행)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25살에 제가 원하는 대학을 갔고 전공으로 진학을 하긴 했는데, 그전부터 미리 공부하고 (관련된) 스펙이 있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따라가기가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가-02)

마이스터고들은 항상 취업률이 90%입니다 80%입니다 이래요. 하지만 1년 안에 퇴사율이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략) 그 안에서 고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03)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했는데 그때 좀 기회가 돼가지고 LG에 들어가서 한 2년 좀 넘게 일을 했는데 고졸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아무래도 tv에서만 봤던 건 줄 알았는데, 그냥 고졸이라는 이유로 무시를 많이 당하긴 했었어요. (가-06)

돈을 벌려고 제가 어쨌든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니까 계속 돈을 벌려고 했고. 그런데 알바만 많이 했었는데 알바에 뭔가 (근무조건이나 그런) 한계가 있었다고 느꼈고... (가-08)

②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자립과 장애물

(ㄷ) 적성 불일치,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방황과 소진

앞서 기술하였듯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과정에서는 개인의 적성이나 직무역량과 무관하게 직장을 선택하는 일을 경험하였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 그리고 낮은 급여와 과중한 근로조건은 청년들이 직업을 포기하거나 방황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은 자립에 대한 의지를 잃고 일시적인 자립 포기 상태에 빠지게 되며, 장기적인 자립을 위한 진로와 경력개발을 가로막을 수 있을 것이다.

메이크업하는 거 해 봤거든요. 한 달에 80만 원밖에 못 받았고요. 현장 경험이 아예 없는데 3 일 동안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바로 실전에 바로 들어가서. 좀 저한테는 약간 좀 강도가 높았 어요. 다른 샅에 면접도 보고 그랬는데 조건이 그랬어요. 강남으로 이사와야 된다든지, 아니 면 최저시급으로 맞춰주는데 너는 우리한테 기습을 배워가는 거니까 세달 동안은 80만 원밖 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안 하겠다 하고... (가-04)

제가 스펙도 없고 고등학교 졸업도 안 했고 대학교도 안 갔고 집안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그 러니까 뒷받침해 줄 게 없으니까는 그냥 무작정 버텼던 거고 일을 그만둔 이유는 결국 못 버 튄 거죠. 어쨌든 2년 동안 경력은 좀 쌓았는데, 처음 일했던 곳이란 대우가 똑같거나 더 심해 져서 그냥 여기까지 하자. 그냥 공부를 하든 취직을 하든 하자 했는데, 그때 몸이 좀 아파가지 고 알바 병행하다가 한두 달 쉴 때는 조금 포기 상태였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그냥 좀 방향하 다가... (가-06)

주 6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었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없어서 힘들기도 했어 요. 허리 수술하기 전에는 핸드폰 가게에서 일했는데, 이제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이제 디스 크가 터져 가지고. 그래서 수술하고... (가-07)

(㉞) 지원의 한계와 이중적 잣대

연구 참여자들은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단기적이고 결과 중심적인 평가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과 사회가 이들에 대해 제한적인 지원 속에서 성공을 요 구하는 이중적 기대(가-02는 미션임파서블이라고 표현)를 품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 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에 집중되어 있어, 오히려 자 립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자립준비청년들이 받는 기초생활수급비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차감되거나 중단되는 구조로 청년들에게 금전적 제약과 함께 장기적 자립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격증 취득 및 취업 프로그램 대부분은 단기간에 이뤄야 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장기적 목표나 전문성을 갖춘 커리어를 쌓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저희는 쉼터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공부를 더 해야 되잖아요. 보통 지금도 우리 30대에도 취업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취직을 못 하는데 쉼터나 아니면 (시설에) 있었던 애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문제일 텐데 약간 모든 사 업들이 기간이 짧게 설정이 되거나 3개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자격증을 따라고 하든가 취업

을 하라는 방식이다 보니까 뭔가 더 안정적이거나 전문적으로 가려면 몇 년을 더 공부하면 좋는데 그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외국에서 있는 대기업에 가고 싶다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몇 년을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한테 요구하는 거는 너는 6개월 만에 대기업을 가야 돼 외국 대기업을 가야 돼 이런 느낌으로 약간 미션임파서블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계속 뭔가 계속 저희한테 무리한 거 하고 매번 노력만 하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노력을 하는데도 너희가 나태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가-02)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관심이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계속 급격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자립수당이 500만원에서 1200만원, 1500만원에서 2000만 원이 됐단 말이지요. 정부에서 지원금이 올라가니까 기업에서 후원금이 와다다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기업에서도 자립준비청년 장학금 다 열어버리니까. 1년에 1억을 넘게 받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받으면 그 이후에 복지병처럼 구직을 하지 않다가 5년 이후(보호종료 5년 이후 시점인 25살)에 후회를 해요. 일을 할 걸. 내가 준비를 해놓을 걸. 왜 안 했지. 그러니까 대부분 대학을 안 다니는 친구들도 비정규직이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다 보니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돈이 중요한 사람들이 많아서 돈이 끊기면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아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으면, 일정 금액이 넘으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200만 원을 받다가 일을 해도 220만 원이면 별 차이가 없으니까 일을 굳이 안 하다가 5년이 있으면 그 지원금이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을 계속 해주는 게 좋은 건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고. (가-03)

(2) 가족돌봄청년

① 청년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경제활동

(ㄱ) 졸업 후 먹고 살기 위한 근로

가족돌봄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보다 생계를 우선시했던 과거 구직 당시의 상황을 말해주었다. 이들은 수급자 탈락이 되지 않도록 임금 수준을 조정하거나 소득이 잡히지 않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다. 이는 경제적 현실이 청년들의 학업과 직업 경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이 뭔가 여유가 있으면 좋는데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식 하기도 전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친구 추천으로 호텔에서 사람을 많이 구한다고 해서 (일을) 하게 됐어요. 수급자 탈락되면 안되니까 월급계약서도 못 쓰고 일부러 (급여도) 맞춰서 조정도 했어요. (나-01)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전단지로 돌려보고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휴학을 좀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맥도날드, 스타벅스에서 일하고 기회가 잘 돼서 학원 강사를 좀 하기 시작했어요. (나-02)

(ㄴ) 근무환경에서 부당한 대우, 열악한 처우 경험

가족돌봄청년들은 임금 미지급, 차별대우 등 비정상적인 노동환경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하고, 수급자 탈락을 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급여를 조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는 근로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왜 중요한지도 알았지만 안 쓰는 곳이 너무 많았고 계약된 날에 돈을 안주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중량)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대왕 카스테라점에서 일했었는데 밀가루포대, 쌀포대 그것을 섞는 작업, 또 오븐에서 꺼내는 것도 꽤나 무겁거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평발 수준까지 됐고... 원래 1시간 일하면 휴식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하는데 하루에 온전하게 쉬는 시간은 한 10분밖에 안됐고... (나-03)

(ㄷ) 일 경험 후 찾아온 심리적, 신체적 상처

연구 참여자 3명 모두 여러 일을 경험하였는데, 가족의 돌봄(간병)과 더불어 열악한 노동조건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나-03의 사례처럼 심각하게는 우울증과 공황장애, 신체적인 질병이 수반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파벌싸움 하는 것처럼 대우도 안 좋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해서 이 일을 하지만 이게 나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했었고... 아르바이트만 하면 뭔가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나-02)

집에서 잠도 잘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일을 하다보니 몸이 많이 망가졌고 근데 엄마까지 쓰러지고 간병을 해야 되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죠. (중량) 제가 허리디스크도 터졌고 간 수치가 안 좋아요.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약도 먹고 있고요. (나-03)

② 꿈을 이루기 위한 커다란 결심

(㉞) 자기돌봄비 지원을 계기로 학업에 매진

연구 참여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통해 자기돌봄비 200만 원(일시금)을 지원받았다. 여전히 생계에 대한 걱정은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학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고시학원 또는 자격증 학원을 다니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하였다.

일하는 것도 안정적이지 않고 결국 제 원래 꿈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년들 지원하는 거 지원금 조금 나오니까 이걸 계기로 1년간 열심히 한번 ‘버텨보자’, ‘공부해보자’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 원래 꿈은 경찰이거든요. (나-01)

③ 자기개발과 취업을 가로막는 장벽

(㉟) 공공서비스의 실효성 문제 경험

가족돌봄청년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경험은 제도의 제한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자기돌봄비 지원은 사용처와 방법에 제약이 있었으며, 고용센터 취업연계서비스는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취업 정보와 한정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체감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으로서 경제적 부담도 무시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되게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온라인 구매는 안되고 책사러 가려면 교보문고에 직접 가야 돼요. 노트북 구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직접 살려고 하면 결제가 안 된다고 하고 되게 제한적이예요. (나-02)

저는 자격증 취득하고 취업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자격증 프로그램이) 제가 원하는 분야로는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일시 불로 납부를 해야돼서 안했고... (중략) 교육받는 동안에는 용돈식으로 얼마가 들어왔는데 계속 생계 걱정을 해야돼서 (할 수가 없었어요.) (나-03)

(㊱)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어버린 수급자 가족

집단면접에서 가족돌봄청년들은 사회안전망 제도와 현실적인 생계유지 사이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을 제한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였는데, 이는 정책의 경직성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의 자립을 제한하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왜 월급 계약서도 못쓰고 일했는지 똑같은 이유거든요. 병원 응급실 한번 가면 20에서 30만원 기본으로 나오고 근데 제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정도는 감당이 안되고 뭔가 현실하고 정책이 안 맞는다는 것도 많이 느끼고... (중략) 내가 일을 해서 많이 벌면 안되고 나라에서 딱 제한을 걸어서 거기 안에서만 벌고 의료수급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럼 우리는 언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중략) 나라가 시행하는 정책 안에서 제 가족이 감하는 것 같아요. (나-01)

(3)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① 장애와 비장애 경계에서 살아감

(ㄱ) 학업 준비 과정에서의 좌절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학업 및 자격증 준비 과정에서 겪는 좌절과 반복적인 실패 경험을 말해주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 부모나 주변의 권유로 특정 학업이나 자격증을 준비하지만, 학습 과정에서 과제나 시험의 난이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경계선 지능인이 명확한 진로를 설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며, 학업에 대한 좌절감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고등학교 나와서 서울에 ○○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 나와서 음악 공부하다가. 근데 좀 과제가 너무 박세(힘들어)가지고 그만뒀서... (다-07)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의 권유로 간호조무사(자격 취득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제 취향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딱딱딱 나가고 이러니까 시험도 떨어지게 되고... (중략) 어느 순간 간호조무사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제가 들어서 제대로 했는데, 점수가 3점인가 또 모자라가지고 떨어져서... (다-08)

(ㄴ)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운 취업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되게 높은 자립의지를 나타냈지만, 현실적으로 취업의 높은 벽을 실감하였음을 말해주었다.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들은 번번이 구직활동이 실패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었고, 구직의 실패가 자신의 능력 부족이라는 자기비난으로 이어졌다. 구직활동의 장기화는 스스로 '백수' 상태를 인식하게 하며,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구직활동 과정에서 이력서 작성의 어려움 또한 자신감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구직 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전에는 이제 대학교 때 이제 졸업 조건으로 이제 회사를 잠깐 갔다가, 좀 안 맞아가지고 나와서 그동안 그냥 백수 생활 하다가 중간에 이제 학원 다니면서 면접 보러 다니다가 안 돼가지고 한 9개월 정도는 백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다-01)

대학교 졸업하고 이력서 넣고 면접 보고 여러 군데 했는데, 면접에서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좀 이제 약간 정비도 할 겸 이제 좀 쉬다가 다시 해보자 해서 알바부터 하자 했는데 그때가 한 3년 전? 알바몬에서 애견카페가 (공고) 뜬 거예요. 저는 바리스타는 못 한 다 그러니까 바리스타하고 강아지 돌보는 일랑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스타는 가르쳐 주겠다 해서 갔는데, 이제 면접에서는 이제 붙었어요. 근데 첫날 이제 배우는 커피 이제 하는 거 배우는 과정에서 좀 뭐랄까 서투르다고 해야 되나? 한 번에 못 알아듣고 이렇게 빠릿빠릿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날 하루 하고 일당 받고 가라고. (다-03)

제가 여러 번 면접 면접을 봐 왔는데 계속해서 떨어져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다-04)

이게 편의점 이력서랑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력서가 다 다르니까.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나오는 이력서를 봤는데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이게 찾아보면 이렇게 쓰라는데 내가 지금 쓸 게 없는데 뭐 써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살짝 멘붕 같은 게 오더라고요. (다-09)

(ㄷ) 초기 취업의 부적응과 정규직 취업 실패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경계선 지능인들은 업무가 복잡하고 용어가 어려워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상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업무능력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직무 지속 가능성이 크게 저하된 실제 경험을 말해주었다. 이들의 성공적인

직업 적응을 위해서는 직무 초기의 충분한 학습 지원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상사와 동료의 이해, 긍정적인 피드백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1차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이제 거기서 이제 6명 중에서 뽑혀서 이제 인턴에서 ○○회사에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 처음 들어가는 데 이제 잘 생각해서 VR 기기를 해서 이제 그걸 해서 그 기기를 착용하고 이제 가이드를 만드는 걸로 그걸 했었어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서 이거 쉬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막상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서 조금 어려운. (다-05)

제가 부족했던 거라면 경력도 좀 부족한 것도 있었고. 능력도 조금 부족했던 것도 있었고, 대인관계도 그렇게 원만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그냥 시키는 대로 다 지시대로 하기는 했는데 상사분들의 만족에는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제가 인턴할 때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중략) 제가 당시에는 처음 배우는 거나 그런 거는 조금 미숙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예 모르는 경우이기도 하고. 그럼 이제 물어보려고 딱 가면은, 한숨을 푹 쉬면서 왜 이걸 모르냐 이런 눈빛으로 하니까 제가 거기에 위축이 돼서 오히려 일을 조금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회사를 안 나가고) PC방을 가거나 막 그런 적 되게 많았거든요. (다-06)

(㉞) 직장 내 대인관계 어려움과 부당 대우 경험

일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 8명은 다양한 근무 환경에서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부당한 대우로 심리적 위축과 좌절감을 겪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다. 업무에 대한 이해 부족, 부담감 속에서 부정적이고 난폭한 언어와 무시는 쉽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하고 싶은 아무도 없어진 게. 저도 이제 일을 그만두고 웬만하면 좀 너무 막 놓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뭐 얼마 안 있어서 좀 이제 또 다른 일 시작하고 막 그러기도 했었고. 그런데 일을 하려고 할때마다 항상 데었던 게 있어서 그게 쌓여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욕도 들은 적도 있고 솔직히... (다-06)

일할 때 그 약간 물량? 같은 게 너무 많아서 조금 벅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은 하고 싶

은데 약간 일단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알바하다가. 좀 길게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는) 문자가 와가지고... (중략) 제가 우체국에서 일을 한 적이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근데 주사님이 너무 말을 좀 약간 험하게 하셔가지고. 약간 좀 같이 (일)하기 좀 그래가지고... (다-07)

꺼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도 좀. 중국집 식당이 있어요. 그때 명동 쪽에서 했었는데, 거기 매니저랑 좀 같은. 그러니까 제 또래 동료가 또 있었는데, 제가 일을 잘 못하고 답답하다 보니까 좀 심한 말도 했었고. 일 스케줄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고 막 짜신 것도 있고, 거기서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그 식당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죠. 되게 생각이 날 정도로. (어디) 들어가면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고... (다-08)

(ㄷ) 지속적인 구직 실패로 인한 자기비난과 자존감 저하

질적면접에 참여한 경계선 지능인들은 구직과정에서 지속적인 실패 경험을 공통되게 겪고 있었고, 누적된 부정적 경험은 내면화된 자기비난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졌음을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복된 실패는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고 구직활동에 대한 무력감을 가중하여 방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작업 처리 속도랄까? 그런 일을 할 때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회사에서는 업무 속도를 좀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좀 느린 편이어가지고,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느리다 그런 말을 좀 많이 들었고 식당 알바할 때도 그렇고 업무 속도 면에서 많이 들었었고, 예를 들어 좀 복잡하거나 좀 약간 좀 어려운 일이 꺼버리면 제가 좀 잘못해가지고. 그런 데서도 좀 막 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일하면서 대인관계도 그렇게 좋았던 편은 아니었고, 그래서 일을 다시 하려고 해도 뭔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 떨어지는... 약간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일을 다시 이제 또 해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일을 해도 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막상 이제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하고 싶어지지 않은 약간 그런 의지도 안 생긴 것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긴 하죠. (다-08)

저는 대인관계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 기준이지만 (직원이) 30명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제가 무섭더라고요. 사람들 대하는 게. 그래서 이게 조금 좀 머뭇거리게 되고. 하게 돼도 이제 좀 처음 해보는 것들도 어쨌든 배우게 되면은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속도가 느리다. (중략) 취직하기에는 내가 대인관계가 너무 어렵고. 나 때에는 이제 일용직이 최선이니까 일용직을 계속 넣었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30살이라는 나이를 먹고 일자리를 제대로 하나도 못 구해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의욕이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일을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계속 구하고, 구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다-09)

(4) 정신건강 취약계층 청장년

① 거듭된 취업실패로 인한 절망감

(㉠) 산재, 부도 등으로 실직 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과거 산재,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부도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경험이 있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제가 학습지 회사생활을 하다가 ○○출판사라고 ○○지점을 냈었거든요. 90년대 말쯤 됐었는데 그때 한창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학습지 (매출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도가 나가지 빛만 잔뜩 뛰고 거기서 한 1억 5천 정도 빛이 좀 있었죠. (라-01)

한 15년? (토목)제도 일을 했는데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니까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술을 엄청 먹었거든요.(라-02)

2013년도에 필름 가공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쳤거든요. 이제 그 사장님이 제가 (취업한 지) 1년 되기 전에 권고사직을 해가지고 그게 퇴직금을 안 주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라-04)

(㉡) 재도전의 실패

면접조사에 참여한 4명의 청장년들은 실직 상황에서 일을 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였다. 이들은 새로운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참여하거나, 구직 활동에 노력한 끝에 취업에 성공하였지만, 고용환경에서의 부당한 대우, 신체 질병 등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또다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고용센터 가서 내일배움카드인가 그걸 받아가지고 응접배웠어. 그런데 가는 데마다 자기들도 처음 (응접을 해본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기술자가 된 건 아니잖아. 근데 고용센터에서 배워갖고 왔다고 어찌고 하면서 계속 일을 안 시키더라고요. (라-02)

16년도에 이제 허리가 좀 좋아져서 고용센터를 갔죠. 친구가 MCT(Machining Center Tool) 쪽을 알아보라고 해서 고용센터 통해서 수업을 듣는데 6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죠. (중략) 취업이 너무 빨리 된 거예요. (중략) 그런데 제가 원래 갑상선암으로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 안쪽을 제거한 상태인데 이거 때문에 피곤을 달고 살아요. 회사에는 알리지 않고 치료를 받으러 다녔고 중간중간 허리 때문에 눈치 보면서 병원을 다녔는데 거기서 회사를 좀 쉬면 안 되겠냐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침 또 그때 회사에서는 저한테 근무 태만, 안전사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서 막 졸았거든요. 기계는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에서 얘기가 좀 많았는데 그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퇴사를 했죠. (라-04)

(ㄷ) 정신질환 발병 및 자살시도

청장년들은 반복된 도전과 실패 속에서 깊은 심리적 고통과 좌절감을 겪었고,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증,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다. 이들 중 일부는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거의 한 2년 정도 그냥 놀고먹고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흥청망청 쓰고 술 때문에 여러 번 입원도 했었고... (중략) 극단적인 선택도 제가 세 번을 해가지고 정신병원 행정입원으로 두 번이나 갔다 왔어요. (라-01)

다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다시 우울증이 와가지고 다시 또 술을 마셨어요. 술 마시다가 이런 때쯤에 이제 좀 안 좋은 생각을 했죠. 제가 이제 갑상선 약을 먹고 있으니까 갑상선 약을 끊었어요. 갑상선 약을 끊으면 쇼크 반응이 올 수 있다고 그러가지고 약을 끊었는데... (라-04)

②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

(ㄷ) 더 나은 삶을 위한 고군분투

실직 상태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인을 통해 일을 하거나, 취업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등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2022년 8월까지 한 3년 동안 친구가 인테리어 타일 일을 해서, 그거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데모 (보조) 역할도 좀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좀 (일하기가 어려워져서) 지금까지 지금 쉬고 있습니다. (라-01)

물류센터 들어갔는데 텃세라 그러죠? 그런게 있다보니 저하고 좀 마찰도 생기고 (중략) 이후에는 일용직 노가다를 했죠. (중략) 그리고 지역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에 가니까 (일자리가) 많더라구요. 자기가 (원하는 직업) 골라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구요. (라-03)

(ㄷ)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과 감사함을 느끼며 경제적으로 자립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었다.

아들한테 제가 그래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들이 아빠(내)가 가난은 물려주지 않겠다. 아들 결혼식 때 그래도 아빠로서 뭐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갖게 돼서 좀 경제활동을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라-01)

좋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안 좋은 상황에 접했는데도 그분들한테 아무것도 뭐 혜택이라든지 그런 걸 돌려드릴 수도 없는데 좋은 분들은 정말로 좋으시더라고요. (라-03)

지금 뭐 알게 모르게 주위에 도와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제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은데... (중략) 그분들 때문에 또 힘을 얻었고 제가 지금 구직을 하고 다시 원래대로 생활하는 그 모습을 좀 보여줘야만 가족들한테도 다시 또 떳떳하게 연락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구직 활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라-04)

(5) 은둔고립청년

① 장기적인 취업 준비와 반복된 실패, 그리고 고립

(ㄱ) 취업 준비에 장기간 기울인 노력과 실패의 경험

연구에 참여한 두 청년은 6년간의 공무원 준비와 대입 준비를 하였지만 실패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실패의 경험이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단적으로 설명하였다.

공무원 준비도 한 3년 정도 했는데 이후에 좀 잘 안 돼서 거의 6년간 그렇게 약간 어떤 준비 기간을 거치다 보니까 약간 스트레스도 오게 되고 (중략) 특히 공무원 시험을 1년 준비를 하고 그 마지막 시험에 평균 1점 때문에 떨어지니까 그 스트레스가 확 오니까 그냥 어떤 걸 하고 싶지가 않다는 생각이 확 들면서 그때부터 좀 집 안에 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마-01)

대학교 수능 공부를 (한 6~7년 정도) 좀 오래 했어 가지고... 서울에 그냥 공대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게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그걸로는 취직이나 사회생활 못할 것 같아서 한의대학으로 좀 눈을 돌렸었는데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마지막에는 교대 들어갔다 적성에 안 맞아서 그냥 자퇴하고 나서는 그때 마침 코로나 터질 때쯤이어서 공공일자리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거 하면서 버티다가 나중에는 그런 것도 잘 안 뵈히다 보니까 그리고 일반 사기업 가면 제가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공무원분들 일이 그래도 조금 그나마 제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시험 봤는데 제가 조금 많이 너무 오래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마-02)

(ㄴ) 실패로 인한 자존감 저하와 부정적 자기 평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으나 실패했던 두 청년은, 실패를 조건의 부적합이나 환경적 요인보다는 자기 자신의 결함으로 인식하면서 자기 정체성의 부정적 고착으로 이어졌다. 이는 자신의 가능성을 부정하며 더 이상 도전하려는 의지를 약화시키는 ‘학습된 무기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점을 보여준다.

내가 어떤 걸 준비를 하고 결과물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누군가한테는 계속 이게 불합격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냥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불합격이다. 약간 그렇게 뭔가 낙인 찍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중략) 계속 취업 준비를 했는데도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아서... 확 충격이 있다기보다는 그게 반복되니까 이렇게 실패에 대한 반복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냥 약간 그렇구나 하고 그냥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받아들인다는 게 이럴 때도 있고 뒤 떨어질 때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나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마-01)

② 실업상태와 은둔 생활

(ㄷ) 인간관계의 단절

개별면접에 참여한 두 연구 참여자는 장기적인 시험 준비와 실패로 인해 인간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실패 경험에서 비롯된 심리적 위축과 미취업 상태에서의 경제적 부담은 인간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게 만들었으며, 생활방식이나 관심사 차이, 경제적 상황 등 외부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인간관계의 단절은 실패를 긍정적으로 재해석하거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는 지지체계의 부재로 인한 생활을 더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시험 공부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그랬었는데 좀 많이 떨어지고 실패하다 보니까 조금 상대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인간관계 같은 것도 자의(경제적 이유 포함)로든 타의로든 많이 끊겨가지고... (마-02)

(㉞) 생계를 위한 알바 및 단기 근로 생활

두 청년은 반복적인 구직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알바, 공공일자리 등의 일 경험을 하였다. 이들의 일 경험은 주로 전단지 배포, 서빙 등 사람들과 깊숙한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는 업무로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이었다. 주목할 것은 마-02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함에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부합하지 못하여 공적 안전망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마-02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이 공적 안전망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 (했던 일들이) 알바였던 것 같아요. 막 그런 음식점이나 이런 데 하는데 대부분 1~2주 하고 그만두거나 또 잘리고 이래가지고... (마-01)

제가 알바 같은 것도 했었는데 알바도 막 그런 조립 같은 거나 전단지 같이 조금 사람 안 만나는 거 위주로 많이 했어 가지고 그러고 또 코로나 때니까 이게 알바 구하기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마침 공공일자리 한다길래 지원을 했었고 근데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막 부모님 재산이나 이런 걸로 보는 걸로 알고 이게 소득 수준도 이게 제가 아버지랑은 이미 조금 어릴 때 이미 제 초등학교 때 그냥 아예 따로 살아서 거의 어머니랑 같이 지냈었는데 어머니 이게 집이 정말 집만 있는 그런 거거든요. 차상위라서 혜택은 아예 못 받는데 어머니도 그렇다고 이게 아직도 조금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마-02)

③ 심리적 위기와 사회적 고립

(㉑) 우울증과 불안으로 상담 및 치료

이들은 구직 실패와 같은 외적 요인과 개인적 정서 체계의 부정적 상호작용으로 우울증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털어놓았다. 이들은 상담이나 약물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치료가 3년간 지속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임을 시사하였다.

아무래도 취업이 잘 될까 하는 약간 불안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중략) 당시에는 제가 좀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보니까 일단은 정신과에서 약 같은 걸 계속 정기적으로 먹고요.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확 (충격이) 올 때 그리고 하나는 또 불안을 좀 낮추는 약을 한 3년 전부터 먹었어요. (마-01)

제가 조금 우울증도 있었고 최근에 제가 그런 상담 같은 걸 지원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 정신 마음 건강인가 해가지고 해보니까 좀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 하셔가지고... (마-02)

(㉒) 장기 은둔으로 인한 사회생활의 불안과 기능 저하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에서 장기 은둔 생활은 단순한 고립 상태를 넘어, 사회생활의 불안과 개인의 사회적 기술(의사소통 능력, 관계 유지 능력)의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둔 생활은 자신을 타인과 연결된 존재가 아닌, 비교와 평가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든 결과로 해석되며, 향후 취업 및 사회 적응에도 지속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본 것으로 보인다.

집에 혼자서 집에만 있었던 시간은 한 달 이상 됐던 것 같아요. (마-01)

옛날부터 제가 조금 어릴 때 좀 아버지가 주식으로 막 날리고 정말 조금 힘들게 살아가지고 그런 돈에 대한 살짝 그런 쓰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하다가도 뭔가 조금 제가 혼자 해도 될 것 같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 다 그냥 안 하다 보니까 친구들 만나는 것도 돈 아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럼 시험 같은 거는 어떻게든 돈이 되니까 나중에 잘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람 안 만나게 되고 주변 도서관 이런 거 때 이용하다 보니까 그 정도만 했었는데 이게 몇 년 한 1~2년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조금 사람을 많이 안 만나 보니까 이게 말 같은 것도 잘 안 나오고 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찾아보

니까 좀 사회 공포증 막 이런 것도 있고 대인기피증까지는 아닌데 좀 뭔가 처음 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뭔가 좀 친밀해지면 좀 더 이게 막 눈치가 보이고 살짝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02)

(사) 직장 및 사회 적응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은 진술을 통해 과거 오랜 기간 준비한 시험과 실패 경험이 현재 직장 및 사회 적응 어려움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실패의 경험이 ‘거절 받는다’라는 심리적 트라우마로 고착되어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마-02의 사례처럼 직무역량 부족에 따른 계약 종료를 경험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부정적 경험과 함께 심리적으로 ‘일머리가 떨어졌다’는 자기 비하적 평가가 사회 적응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서 일단 고민인 건 이전에 그렇게 취업 준비를 하고 또 공무원 준비를 하면서 그때 평가받은 게 느낌 약간 그때 느꼈던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약간 오는 것 같아요. 약간 지금처럼 그래서 특히 회사에서 어떤 걸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서 상사한테 낼 때 그때 뭔가 계속 뭔가 거절받는 느낌이 들 때 단순히 그냥 어떤 조건이 맞지 않아서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는데 저는 그게 그냥 저 사람 왜 자꾸 나를 거절하지 이게 웬지 나 싫어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전에 그렇게 불합격했던 것들이 약간 오버랩 되면서 그런 것들이 경험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같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게 좀 평가받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가장 큰 것 같고... (마-01)

시험 공부도 한 1년 반 정도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일머리? 그게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울증 때문에도) 조금 이게 지능 같은 게 살짝 떨어진다고 하셔서 일도 2시간 만에 잘리고 하니까... (마-02)

3) 청장년의 자활사업 인식과 참여 경험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청장년의 자활사업 인식 및 참여 경험’을 분석하였다. ‘청장년의 자활사업 인식’은 자활사업 참여/미참여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청장년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은 자활사업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 9명의 진술을 토대로 분석되었다.

〈표 III-5〉 청장년의 자활사업 인식과 참여 경험 분석 결과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1) 청장년의 자활사업 인식	(1) 자활사업 미참여 청장년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미참여 청장년은 자활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함 · 자신의 상황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느낌 · 급여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고용시장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함 · 일을 경험하고 자기개발 및 취업 관련 혜택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은 생각도 있음
	(2) 자활사업 참여 후 청장년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을 받기 위해 원하지 않는 일을 함 ·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김
	(3) 자활사업 참여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인, 사회복지 관련 기관, 공무원 등을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됨
2) 청장년의 자활사업 참여경험	(4) 자활사업 참여 후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활력을 얻고 심리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을 가짐 · 안정적인 생활패턴을 영위하게 됨 ·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공부를 하면서 자기개발을 함 · 일을 통한 사회생활, 인간관계 경험을 쌓음 · 근로 및 자립의지가 고취됨
	(5) 자활사업 참여 중 어렵거나 아쉬웠던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참여과정이 체계적이지 않음 · 창업에 있어 경영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창업 과정에서 1인이 독식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함 ·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음 · 일반사업단에 속해있을 경우 청장년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음 · 자활사업 참여자 간 마찰과 갈등이 잦음

(1) 청장년의 자활사업 인식

① 자활사업 미참여 청장년의 인식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연구 참여자 17명은 자활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대상, 혜택에 대한 구체적 정보나 이해가 부족하였다. 또한 낮은 급여의 자활사업 일자리는 고용시장의 다른 일자리와 비교할 때 매력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거나, 주로 고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기도 하면서 자활사업 참여 의사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활사업은 학업 중심의 생활에서 직업적 책임을 요구하는 역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청년들이 체감하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직장 및 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인식되기도 하였다. 더불어 자활사업이 자활 급여 외에 일 경험, 자기개발, 취업 관련 혜택을 제공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진술도 확인함으로써, 자활사업이 직업적 경험을 쌓고 취업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할 때 청장년층의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경제적인 것도 (도움이) 있겠고 경험적으로도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으니까 안정적이니까... (어떤 조건이 된다고 하면) 참여할 것 같기도 해요. (가-01)

주변에 자활사업을 경험해 본 친구가 있는데 자활사업 할 바에는 쿠팡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8시간 근무하고 5만 원? 그 정도인 걸로 아는데 그럴 바에 차라리 쿠팡 가서 3일 일하면 15만 원 받는 거니까. 쿠팡은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03)

얼핏 지나가는 식으로 (들었던 것 같은데) 뭔가 저랑 자활사업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느낌에 크게 의미를 두거나 신경을 쓰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03)

연세 드신 분들이 자활센터에서 쓰레기 줍고 하는 걸 몇 번 봤어요. 근데 제가 이 나이에 저걸 하기에는 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01)

이게 바로 사회 이렇게 쓴맛을 보는 거랑 이전에 일단 좀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있구나 한번 경험해 보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실 저도 처음에 취업하기 전에 그런 것도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때는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취업할 때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또 그게 제가 또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랑 정규직이랑도 많이 다르잖아요. 책임감도 그렇고. 그래서 확실히 전 (자활사업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마-01)

② 자활사업 참여 후 청장년의 인식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 9명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들 중 소수는 직무 적합성이 낮을 때 불만족을 느꼈으며, 대부분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복지 혜택과 자격증 취득 기회 등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기회를 활용하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원래 (자활사업) 얘기 들었을 때는 별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냥 급여부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복지 혜택 쪽으로 계산을 그냥 혼자 해봤는데 어쨌든 수급자 유지되면 저도 LH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조건도 되고. 병원 혜택도 좀 크고. 무엇보다 세금도 면제고. 거기에 교육 자격 증 (취득) 이런 게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버대학교 다니는데, 그냥 일반 직장이나 좀 이렇게 아르바이트나 몸을 쓰는 일을 하면은 그런 일을 할 때 공부하기 좀 솔직히 현실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엄청나게 제가 의지가 크지 않는 이상은. 근데 시간도 널널하고 일의 강도도 세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 급여 받고 하는 거면 차라리 이거 버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이걸 한 것 같아요. (가-06)

우리가 바라는 일이 아니고 일이라는게 굉장히 단순하고 가서 할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중략) 개인적으로 일 취향이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라-02)

(2) 청장년의 자활사업 참여 경험

③ 자활사업 참여계기

자활사업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본인의 자발적인 선택보다는 주변의 권유나 정보 제공을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는 자활사업 관련 사회복지기관, 공무원 등의 역할이 청장년이 자활사업을 인식하고 참여하게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한다.

저도 대학교 자퇴하고 그런 고깃집이랑 술집 하면서 운영하다가 (중략) 서울○○협회라고 거기 있는 선생님 계시거든요. 연락하다가 이거 한번 해보라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죠. (가-05)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1년 다니고 그 과정이 안 맞았던 것 같아서 자퇴를 하게 됐고요. 자퇴하고 나서 이제 어쨌든 돈은 벌어야 되니까 수입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냥 간간이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시청 직원 통해서 이게(자활사업) 연결이 됐었거든요. 저도 그때 알게 됐었고요. 자활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알고 나서 자활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가-08)

④ 자활사업 참여 후 변화

자활사업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겼다고 진술해 주었다. 그 변화들은 삶의 활력과 심리적 회복, 안정적인 생활패턴, 자기개발, 사회성 향상, 근로 및 자립의지 고취와 같이 다방면에 걸쳐 나타났다.

청장년들은 불규칙하고 힘든 일을 하던 과거와 달리 안정적인 생활패턴을 찾게 되었으며, 낮은 강도의 업무를 하면서 피로감이 줄어들고 정신적 여유가 생겼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자활사업이 단순히 소득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기능을 하며, 규칙적인 생활과 신체적·정서적 건강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선생님들도 힘든 일 다 많이 하셨을 거고 강도 높은 일에 시간 오래 걸리고 이런 거 있는데 대부분 카페로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일했을 때 예전에 일했던 강도랑 비교가 많이 되네 싶었어요. 확실히 일단 쉽긴 쉽고. 사실 카페에서 손님 엄청 많아서 하루 종일 음료 제조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담당 주임님이나 과장님이 현장 이런 데 오셔가지고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이런 게 조금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일하면서 웃은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래도 거기 또래분들하고 그냥 웃고 떠들면서 하니까... (가-06)

변화된 부분은 좀 더 생활패턴이 괜찮아졌다? 많이 늦게 자고 그러고. 편의점일 때도 이제 계속 시간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안 맞아가지고 엄청 피로감이 있었거든요. (다-01)

또 다른 변화는 사회적 관계 능력의 향상이었다. 대인관계에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던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일하며 사회적 경험과 대인관계 기술을 쌓고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겪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자활사업이 청장년층에게 사회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웠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제가 모르는 사람들 그런 거 보는 거 너무 싫었는데, (일하면서) 계속 만나게 되니까 오히려 성격이 좀 나아졌어요. (가-04)

일하는 파트너랑 안 맞아가지고 멘탈 써지고 있는 중이에요. 안 맞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 뭔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나 뭔가 이게 그냥 버텨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정신적인 그게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가-08)

원래는 잘 웃지는 않았어요. 목소리도 좀 약간 하이톤 비슷한 게 있어서 특이하다는 소리도 듣긴 했었지만. 제가 자활오고 나서 달라진 거는 목소리 톤 조절하는 것도 있었고, 사람들 만나면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도 하고 대화도 살짝 나누면서... (중략)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도 익히고, 하는 일도 적응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게 나한테 맞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죠) (다-02)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청장년은 자활사업의 교육과정과 자격증 취득 기회를 활용하여 새로운 꿈을 찾고 자기개발을 지속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냥 딱 까놓고 말하면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게 사실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고, 여기서 더 나은 혜택을 주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 같은 것도 되게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05)

연구 참여자들은 자활사업을 통해 자산을 축적하고 근로와 자립의 의지가 고취되었음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자활사업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 장기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였음을 나타낸다.

저는 (자활사업하면서 얻은 게) 근로 및 자립 측면 하나인 것 같아요. 건강하게 사는 느낌. 확실하게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 면이 되게 좋게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에 그거 공부하게 된 거는 추천받아서 했었거든요. 이거 하면 잘할 것 같다고, 추천 받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저도 잘할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하면. 그래서 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과. (가-07)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저축하고 그러다 보니까 적금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해진 것 같아서 좀 더 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다-01)

⑤ 자활사업 참여 중 어렵거나 아쉬웠던 점

연구 참여자 중 9명은 자활사업의 구조와 관리 운영 측면에서 참여자 맞춤형 지원, 공정한 기회 제공, 명확한 업무분담 및 협업 조성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먼저 자활사업 참여에 있어 초기 계획이나 목표 설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 일부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업무에 투입되거나, 간략한 안내만 받은 채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자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참여자의 특성과 목표에 맞춘 맞춤형 계획수립과 안내가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저는 (자활지원계획 이런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뭐 이런 거는 했는데, 자세하게 적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바로 그냥 편의점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 일하고. (가-05)

(자활사업 참여하기 전에) 동사무소에서 참여하라고 했는데... (중략) 자활사업 참여한다고 했는데 ○○시에 자활센터가 3개 있대요. 그래서 3개 중에 자기 집이랑 가까우든 뭐든 한번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그냥 첫 번째 걸로 전화를 했는데 그러면 며칠날 오세요 하더라고요. 가서 면접 보고 바로 일을 하세요 그래서 얼떨결에 네 했는데 그냥 바로 출근을 하게 됐던 겁니다. (가-06)

또한 자활사업에서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창업 정보와 지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특정 참여자가 경제적 이득을 독식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제가 여러 일을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매번 물어본단 말이에요. (중략) 요새 젊은 사람들이 편의점 창업을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대부분 편의점을 한다 해서 오래 못할 것 같다는 것도 있는데 (자활 선생님들은) 뭔가 프랜차이즈를 되게 너무 강요를 하세요. 저희한테 안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정작 보면 저희한테 너무 도움이 안 되거나 너무 과포화된 상태다 보니까... (가-02)

나중에 세무서 식당 창업한 사람들도 있었죠. 한 10명이 같이 뭉쳐서 해요. 하다 보면 거기서 제일 머리 좋고 제일 돈 갖고 있는 놈이 좌지우지하면서 나머지는 또 거기서 그냥 나오고 한 사람만 식당 주인이 돼 있고. 결과적으로는 돈 많은 사람이 머리를 써가지고 다 흘랑 가져가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사업하게끔 만들어주고 가게 사무실을 얻어서 주인이 된 거예요. 그걸 보니까 실망되죠. (라-02)

사업단의 변경 이후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자기개발에 필요한 자료와 교육 기회를 스스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아무래도 (청년사업단에서) 일반사업단으로 바뀌고 자원순환이라는 업무만 하다 보니까 제가 (필요한 정보는) 직접 찾아봐야 되고 좀 많이 불편한 것 같긴 해요. (그 전에는) 이런 교육 저런 교육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어디에 이런 회사가 있다 한번 그런 거 한번 어떠냐 해 가지고 알려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게 없어가지고. 소통은 이제 하긴 했는데 이런 쪽에서는 잘 안하는 거죠. (다-01)

마지막으로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연구 참여자 다수는 자활사업 참여자 간 나이 차이, 업무방식 등으로 인한 갈등과 불협화음을 경험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참여자 간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을 강화하는 교육 및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업무분담이 제대로 안 된 느낌? 업무 강도가 완전 천차만별로 다른 데, 그게 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느낌. (중략) 도서관에 새로운 카페 오픈을 한 대서 파견을 나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한 달 반밖에 안 되고 커피 잘 모를 때였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습득력이 있지 않겠냐 해서 (파견)갔는데 40~50대 선생님 네 분하고 같이 일했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기본적으로 대화가 안 돼요. 너무 그분들끼리 뒷담화가 너무 심하니까 저는 듣잖아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네 분이 되니까 이분한테 꼭 이분한테 이렇게 하는데 하는 말이 왜 내 편을 안 들어줘 막 이래서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한 게 내가 아들 뺨인데 왜 나한테. 그리고 자기들끼리 너무 이제 유언 비어를 많이 퍼뜨리시니까 제가 매니저라고 하는데 말도 안 들으시고. 그것 때문에 한 7개월 정도 했는데, 제가 그때 찾김에 그냥 그만둘래요 했는데 이제 그제서야 (자활센터에서) 좀 조치를 해 주시더라고요. (가-04)

같이 일하면서 불만이 있을 수 있긴 한데 왜 그렇게 싸워대는지는 모르겠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진짜 하다못해 왜 자꾸 지각하세요? 지각하세요? 제가 더 하잖아요. 뭐 이런 거는 그럴다 치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본인인 하세요? 이런 걸로도 많이 싸우니까는. 그냥 좀 쉽게 못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중략)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았던 이유가, 제가 너무 힘드니까 닫으니까 편해지더라고요. (가-06)

제가 다른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편의점 쪽으로 가서 한번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그 당시에는 50대였죠. 나이가 많으니까 개네들이 좀 싫어했더라고요. (중략) 나중에 가게(창업)를 차려주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안 맞으니까 또래들끼리 하고 그 몇 명만 추리니까 그렇게만 단합이 돼 가지고 저는 나이 많으니까 저를 빼더라고요. (라-02)

4) 자활사업 참여 및 기능 확대 방안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자활사업 참여 및 기능 확대방안’은 ‘자립준비청년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선 방안’, ‘가족돌봄청년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선 방안’,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선 방안’,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선 방안’, ‘청장년층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사업 운영 방안’, ‘효과적인 자활사업 운영 방안’ 6개 대주제와 14개의 중주제로 도출되었다.

〈표 Ⅲ-6〉 자활사업 참여 및 기능 확대 방안 분석 결과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1) 자립준비청년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선 방안	(1) 자립준비청년 대상 two-track 프로그램 도입	·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들은 자기개발, 경력개발의 욕구가 있음 · 보호종료 5년 이후의 자립준비청년(만 25세 이상)들은 실질적인 취업을 희망함
	(2) 진로와 미래 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훈련 지원	·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자립준비청년 대상으로 심층적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이 필요함 ·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금융교육이 필요함
	(3)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및 네트워크	· 자립준비청년들은 일 경험 과정에서 멘토들을 통해 경험과 지혜를 전수받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기를 기대함
2) 가족돌봄청년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선 방안	(4)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유예제도	· 취업 후 소득발생 시, 수급자 탈락 유예가 필요함
	(5) 가족돌봄청년 자조모임과 휴식지원프로그램	· 가족돌봄청년들은 공동된 상황을 겪는 사람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희망함 · 돌봄자로서 가족과 분리되어 쉼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요구함
3)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선 방안	(6)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일자리 적응 지원	·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들은 자신의 직업적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탐색과정을 요구함 ·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들은 업무 적응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순환하여 근로강도를 높이기 원함
	(7) 경계선 지능인 특화 취업직종 개발 및 종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 경계선 지능인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 개발이 필요함 ·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장 연계, 경계선 지능인 이해 교육, 직무지도 등의 종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요구됨
	(8) 경계선 지능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특화 교육프로그램 개발	· 돈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을 요구함 · 경계선 지능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이스 피싱, 대출 사기 등에 대한 대응 교육이 필요함 · 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인 배치가 필요함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4)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선 방안	(9) 건강 상태를 고려한 단계적 일자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은 건강 상태에 맞춰 하루 4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선호함 · 직무역량 개발과 함께 단계적인 근로강도(시간, 난이도) 조절을 요구함
	(10) 사회 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단계적 참여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심리적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블렌디드 방식을 제안함
5) 은둔고립청년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선 방안	(11)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유연하고 지속적인 일 경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월~1년 정도의 지속적인 일 경험을 통해 직무 능력을 개발할 수 있기를 기대함 · 자격증 취득 등 개인적 목표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함 · 경쟁시장의 일자리와 유사한 환경에서 일 경험을 쌓기를 원함
	(12) 청장년의 희망 직종 일자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있고 생산적인 일 경험을 기대함 · 단순한 직종보다는 경력개발이 될 수 있는 전문성있는 일자리 개발이 필요함
	(13) 청장년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 실습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장년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제공 요구함 · 자활사업에 참여하면서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과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함 ·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취득(미용, 대형면허 등) 프로그램이 확대되기 바람 · 내일배움카드 훈련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상황, 연령 등을 고려하여 소집단으로 운영되기 원함 · 현실적으로 취·창업에 도움이 되는 경영교육, 다양한 현장실습의 기회가 제공되기를 원함
6) 청장년층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사업 운영 방안	(14) 청장년이 희망하는 근로환경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제안함 ·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습 시간 등을 고려해주길 원함 · 업무난이도, 강도에 따라 자활급여 수준이 향상되길 바람
	(15) 자활성공 시 인센티브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 성공, 취업상태 유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된다면 자활욕구가 높아질 것임
7) 효과적인 자활사업 운영 방안	(16) 자활사업 홍보 전략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을 중심으로 자활사업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 자립준비청년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선 방안

자립준비청년 8명은 ‘자립준비청년 대상 two-track 프로그램 도입’, ‘진로와 미래 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상담 및 교육훈련 지원’,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및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① 자립준비청년 대상 two-track 프로그램 도입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종료 후 경과 시기에 따라 상이한 욕구를 나타내었다. 보호종료 5년 이내에는 자기개발과 경력 개발에 대한 욕구, 그 이후에는 실질적 취업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필요가 높아졌다. 이는 보호종료 5년 이내에 각종 지원이 집중되다, 이후에 지원이 절벽과 같이 끊기면서 실질적인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배경과 관련된다. 따라서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 5년 이내와 이후에 따른 two-track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청년들이 점진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경력개발과 취업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는 2018년도에 성인이 됐는데, 제 주변에 동생들도 있고 한데 다 놓고 그냥 뭐 자립 수당 받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뭐 오로지 일만 해서 일 경험을 하고 스펙 쌓고 하면 좀 더 그런 거에 포커싱이 맞춰지다 보니까. 지금 애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진짜 5년 이내에 혜택이 진짜 많구나 저는 뭐 혜택이 없어서... (가-01)

24살이라서 (이제 곧) 50만 원 끊기는데 이제 어떡하냐 이젠 돈을 벌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50만 원을 좀 더 적게 쓰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딱 성인이 돼서 자립지원금이 30만 원이었다가, 40만, 50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점점 더 오르니까 좋았다가 이젠 끊기니까 그들(자립준비청년)한테 타격이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가-03)

② 진로와 미래 대비를 위한 체계적인 상담과 교육훈련 지원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진로와 미래에 대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불안감을 발견할 수 있다. 가-04가 진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쫓기는 기분’을 느낀다고 언급한 바와 같이, 자립준비청년들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일에 적성이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호종료되는 데 대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다.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진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청장년들은 저축을 권장하는 일반적인 금융교육을 반복해서 받아 왔지만, 자립을 위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 지식이나 관리 기술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경제적 자립이라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금융 관리법, 지속적인 교육 등 차별적인 교육 내용과 전달 방식이 요구된다.

진로 상담 같은 거. 한다는 게 아직 뭘 하고 싶은지도 못 찾았고 뭘 잘 맞는지도 모르는데 뭔가 기간이 끝나버리면 또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서 되게 쫓기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뭔가 좀 찾는 걸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없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계속 요청을 했던 것 같아요. (가-04)

(금융교육이란 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하냐가 다른 거잖아요. 너무 많이 받았는데. 주식 같은 거 하지 말라고는 가르쳐 주셨어요. 위험성이 크니까 저축을 많이 해라라고 시키긴 하시죠. 근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딱히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가-05)

③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및 네트워크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 전문가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멘토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루트를 제시하고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공유하는 역할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가-01은 유사한 목표를 가진 다른 자립준비청년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을 암시하였다. 자립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원받으며,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료 네트워크는 청년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제가 지금 필요한 거는 좀 제가 하지 못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멘토링(정보 제공 포함)을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단계고. 그러니까 가는 길은 명확한데 그 가는 길에 대해서 정확한 루트 이런 게 없으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힘든 경험이 있어요. (가-01)

(2) 가족돌봄청년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선 방안

가족돌봄청년 3명의 진술을 통해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유예제도’, ‘가족돌봄청년 자조모임과 휴식지원프로그램’ 두 개의 중주제를 도출하였다.

④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유예제도

가족돌봄청년들은 자립의지는 있지만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해주었다. 특히 나-02는 소득 발생 시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자립과 취업을 원하면서도 경제적 안정과 가족의 의료비 지원이 중단될까 두려워 취업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해주었다. 나-02의 사례처럼 청장년이 취업하더라도 가족의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는 취업 후 수급 자격 상실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랑 엄마까지 2인 수급자로 묶여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제가 일을 하면 안 돼요. 저는 너무 일을 하고 싶거든요. 저의 또래 친구들 동생들 형들은 다 일을 해요. 저는 근데 공식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해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제가 일을 하는 순간부터 수급 대상이 끊겨버리고 일을해도 어머니 병원비 이런 거 다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월)에 3~4백 정도를 꾸준히 벌 수 있는 정기 소득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 제가 지금 상황처럼 공부랑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정도를 벌려면 거의 사업을 해야 되는 수준이잖아요. 3~4백을 매달 벌든지 아니면 그냥 일을 하지 말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에 때문에 이게 제도 자체가 좀 너무 좀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자활 사업의 문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한다고 하면) 엄마도 되게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너 일을 하는 순간 내가 이거 끊기지 저거 끊기지 너는 뭐 이게 안 되지 저거 안 되지 이거 다 할 수 있으면 해라 라고 하는데 그걸 감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어요. (나-02)

⑤ 가족돌봄청년 자조모임과 휴식지원프로그램

가족돌봄청년 3명은 공통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과 정기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돌봄의 부담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휴식 지원을 요구하였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청년들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받고, 자신의 상황을 나눔으로써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청장년이 돌봄자의 역할에서 잠시라도 분리된 쉼의 시간을 통해 정서적 재충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픈 사람들끼리 어떻게 보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많이 만나가지고 서로서로 돌봐줄 수 있고 그런 또 그런 청년이 각자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집에 있으면 결국에는 제 시간도 제 부모님과 제 가족을 위해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나-01)

네트워크라든 게 그냥 이렇게 단독방 만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만나야 되고 뭔가 이렇게 이런 사업에 참여하고 이제 어쨌든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학원 등록을 하고 이리다든지 뭔가 서로 서로를 보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 아니면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업에 대해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나-03)

(3)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선 방안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9명의 진술을 통해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일자리 적응 지원’, ‘경계선 지능인의 접근성 고려한 홍보’, ‘경계선 지능인 특화 교육훈련프로그램’ 세 개의 중주제를 도출하였다.

⑥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일자리 적응 지원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들은 직업적 목표 설정과 직무 적응을 위해 단계적 지원과 안정적인 환경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직업적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무를 탐색할 시간이 필요하며, 최소한 6개월의 순환 기간을 통해 업무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해야 함이 강조되었다. 무엇보다 경계선 지능인에게 직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업무 수행 방법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필요하다는 진술도 확인되었다.

(일에 대한) 기본 정보가 필요하고 자신의 목표가 뭔지 뚜렷한 목표가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업무도 거기에 맞게끔 처음 한 사람은 좀 차근차근 천천히 좀 쉽게 할 수 있는 일로 해서 조금씩 살짝 강도를 조금씩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

터 막 무리한 일을 시키면은 좀 힘들어해서 얼마 못 하고 그만뒀다고 그만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단계를 한 6개월 정도로?) 좀 한 단계씩 절차를 밟아가면서 해보는 게 어떨까. (다-02)

그런건 딱히 (설명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설명 외에는 간단한 규칙과 그 사업단 내 규칙과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잘 생각 뭐 그런 외에는... (다-05)

계속 (일에 대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정작 제 자신에 대해서도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좀 뭐를 해야 될지 좀 요즘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06)

⑦ 경계선 지능인 특화 취업직종 개발 및 종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

다-08과 같이 면접조사에 참여한 경계선 지능인 대부분은 직업적 좌절감에 따른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에 이들의 특성에 맞는 직무 환경을 개발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일반고용시장에서 경계선 지능인의 취업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경계선 지능인이 취업할 수 있는 사업장 개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이해 교육, 직무지도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저도 일단 뭐 일을 제대로 된 직장 구해가지고 좀 다녀야 되긴 하는데 이제 또 똑같은 상황(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이 벌어질까봐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일에 대한 자신감이랄까? 그런 것도 좀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의지도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진짜 고민이 많죠. 아무래도 진짜 지금 뭐 하는 것도 없다보니까 놓고만 있을 수는 없고. 주변 애들은 다 일하거나 뭘 하고 있는 저만 이렇게 어쨌든 놓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너무 고민도 많이 되는 거죠. (다-08)

⑧ 경계선 지능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경계선 지능인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자립을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과 보조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돈 관리에 대한 어려움으로 가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다-06의 사례처럼 경계선 지능인은 대출 사기와 같은 경제적 피해에 노출되어 있기에, 금융 지식과 사기 예방 교육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 또는 멘토와 같은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확인할 수 있다.

자기가 해보고 싶은 직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경험하게 해준 다음에 거기서 하고 싶어 했는데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제 고려를 해줘서 좀 더 유연한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랑 안 맞으면 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니까... (다-03)

요즘 세상이 좀 빠르게 돌아가는 시대이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 느린 학습자들을 위한 그런 약간의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많이 생겨났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옆에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옆에서) 알려줄 수 있는 보조 선생님 같은? 약간 그런 게 그런 분들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05)

(사기) 당할 뻔했죠. 못 돌려받았으면 대출 사기인 거니까 어쨌든... 근데 어쨌든 뭐 돌려받긴 했는데, 근데 만약에 저도 그 친구한테 만약에 20만 원을 이렇게 빌려줬더라면 저도 언젠가 대출 사기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다-06)

언제까지 계속 (돈관리를) 가족들한테 맡길 수 없는 상황이고, 저도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돈 관리를 해야 될 나니까 해보고 싶는데, 이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돈 관리는 나는 계속 못하는 건가? 가족들한테 계속 맡겨야 되는 건가? 그럼 그때마다 뭐 필요할 때마다 언니한테 얘기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다-09)

(4)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선 방안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4명의 진술을 통해 ‘건강 상태를 고려한 단계적 일자리 프로그램’ 중주제를 도출하였다.

㉠ 건강 상태를 고려한 단계적 일자리 프로그램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장년 4명은 정신질환과 함께 신체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개인적 상태에 맞춘 단계적 일자리 프로그램을 요구하였다. 실제로 라-03은 건강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8시간 근무를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의 신체적 상태에 맞춰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의 건강에 맞춰 단기적인 생계유지뿐 아니라 점진적으로 안정된 자립의 발판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건강이 안 좋아서 8시간 일을 소화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보기에는 멀쩡한데 여기도 몸이 아직 어릴 때 수술을 세 번 하고 그러는 바람에 장애 신청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몸에 맞게끔 그거를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다만 4시간이라도 일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짧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시간을 좀 늘리던가 아니면 더 좋은 자격증을 따가지고 조금 크고(성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죠. (라-03)

(5) 은둔고립청년 특성을 반영한 사업 개선 방안

은둔고립청년 2명의 진술을 통해 ‘사회 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단계적 참여 구조’,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유연하고 지속적인 일 경험 지원’ 두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⑩ 사회 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단계적 참여 구조

사회 적응과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은둔고립청년들에게 단계적 참여 구조가 효과적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초기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기반 활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연결감을 형성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오프라인 활동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연구 참여자 마-01가 언급한 것과 같이, 자연 친화적 활동(예: 등산, 명상)과 같은 프로그램은 사회적 접촉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도 심리적 안정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같은 또래 청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통점을 발견하며 생각의 전환과 동기부여를 경험할 수 있는 구조는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험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지원보다는 사회적으로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선 되면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도 하고 뭔가 용기가 생기면 그때부터 내가 스스로 이것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간단한 등산 모임이라든가 예를 들어 최근에도 청년 광역센터에서 하는 산림 치유원에 같이 청년들끼리 가서 이렇게 명상도 해보고 등산도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보니까 청년들끼리 서로 다른 것도 있지만 생각하는 게 또 비슷하구나 이렇게 많이 느끼면서 나도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구나 하고 좀 생각의 전환도 열리는

것 같고 또 요즘에 자연을 많이 접촉할수록 마음이 좀 풀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외부로 나가고 친화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힘든 사람들에게는 일단은 처음부터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오프라인으로 꼭 나가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어떤 걸 받는다든가 그런 있으면 계속 뭔가 나도 접촉을 하고 있구나 약간 무의식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지 않을까... (마-01)

⑪ 직무 역량 개발을 위한 유연하고 지속적인 일 경험 지원

은둔고립청년들의 직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보다 유연하고 지속적인 일 경험 지원이 필요하다.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인해 자활사업 참여에 제한 경험이 있었던 마-02는 재산 및 소득기준을 벗어나 은둔고립청년에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지속적인 일 경험을 지원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청년들은 시험 준비와 같은 개인적 목표와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과 멘토링 또는 동료 지원을 통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은둔고립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직무 적응과 기술 습득으로 안정된 미래를 준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일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은둔하거나 고립하거나 그런 경험이 있다면 또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사회적 약간 정서적으로는 비슷한 또래가 가장 좋은 것 같긴 한데... (마-01)

한 번에 쪽 하면 하던 게 아무래도 익숙하니까... (그런데) 공공이든 이런 건 이렇5개월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조금 아쉽고) (중략) 저는 일을 하면서 시험 같은 것도 병행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 두 번 하면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일을 하면 정말 쉬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공부 같은 걸 할 (시간이)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공공일자리 같은 거 (참여할) 생각을 한 거고 (중략) 시험도 오랫동안 준비하고 일 경험도 별로 없고 이런 분들이 조건에 상관없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참여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요즘은 솔직히 혼자서 먹고 살기에는 진짜 아르바이트만 해도 일단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쿠팡(배송일)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험 공부는 좀 어려우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제가 편의점 알바 할 때도 저 혼자 해야 되니까 뭔가 책임져야 되는 게 있어서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같이 하다 보면 옆에서 모르는 거나 실수할 때 좀 알려주고 그렇게 한 두세 달 하면 아마 익숙해질 테니까요. (D-02)

(6) 청장년층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사업 운영 방안

⑫ 청장년의 희망 직종 일자리 개발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장년들은 단순한 생계형 일자리보다는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일자리, 자아실현이 가능한 의미 있는 일자리를 기대하였다. 실제로 나-03은 20대 초반에 받았던 급여와 현재의 급여 차이가 크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 상태가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청장년들이 경력을 개발하고 동시에 자아실현을 이루는 방향으로 일자리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가 지금 일하는 것도 안정적이지도 않고 결국 제 원래 꿈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나-01)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그 뒤로는 간병을 하다가 정규직 취업에 도전을 하긴 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거의 단기 알바로 살아온 것 같아요. 공장도 가보고 물류도 가보고 주방보조고 가보고 판매 그런 알바로 해보고 그냥 그러면 살아왔던 것 같다... (중략) 제가 20대 초반에 받았던 월급이랑 지금 월급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작사가나 제빵사 쪽으로 가고 싶고 (중략) 지금 세대의 청년들은 자아실현 욕구가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근로를 하고 소득을 유지하면서... (나-03)

⑬ 청장년의 취업지원을 위한 교육과 실습 확대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들은 취업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욕구를 나타내었다. 구체적으로 라-01은 특성화고에 재학하면서 주산 등 여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지금은 쓸모없게 되었다며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라-04는 장년층 입장에서 내일배움카드 훈련프로그램을 따라가기 버거웠던 상황을 이야기하며 연령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진행되기를 원하였다.

자세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공유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한데. 청년 사업단에서는 어디 일자리 이런 거 있다 좀 알려주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단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찾아봐야 되고 좀 많이 불편한 것 같긴 해요. (전에는) 이런 교육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어디에 이런 회사가 있다 한번 그런 거 한번 어떠냐 해가지고 알려주었는데 지금은 그냥 없어가지고... (가-04)

제가 상고를 나왔는데 두산, 타자 자격증 다 있어요. 근데 써먹지 못해요. 아무 쓸모가 없어 당시에 취업은 빨리 했는데... (중략) 그래서 마을버스라도 좀 운전하고 그러고 생각했는데 학원비용이 85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좀 지원이 됐으면 좀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돼. (라-01)

MCT(Machining Center Tool) 교육이 6개월 과정인데 사람 수(수강생 60명)에 비해서 이제 그거 실습할 수 있는 여유라든가 (그게 좀 부족했고)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그 학습 속도가 좀 빠른데 저는 그걸 좀 따라가기가 좀 버겁더라고요. 원래 또 그쪽 일을 하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되게 힘들었었고... (라-04)

⑭ 청장년이 희망하는 근로환경 구축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 청장년은 유연한 근로 시간과 현실적 수준의 급여 수준 보장의 필요를 언급하였다. 자활사업 근무 시간이 고정적이어서 개인적인 시간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자격증 학습이나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희망하였다. 또한 자활급여 인상에 대한 의견도 언급되었는데, 자활사업의 강도나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언급들을 통해 청장년들이 자활사업이 일반 고용시장의 일자리와 비교하여, 급여와 근무 조건이 그다지 매력적인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솔직히 빠르게 일해가지고 나머지는 저희가 공부를 투자를 하거나 그런 게 좋는데 애매하게 4시간, 3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출퇴근)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가-02)

유연 근무제로 일레븐세븐(11-7시) 이런 식으로 유연근무를 도입할 수 있을 것 같고 (중략) 주변에 자활사업을 경험해 본 수급자 친구가 있는데, 자활사업 할 바에는 쿠팡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 일하고 5만 원 벌고 3일 일하면 15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자활사업이 하루 8시간인데 쿠팡은 하루 일하고 이틀 쉬고 하루 일하고 이틀 쉬는 게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03)

근데 급여는 진짜 저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유가 보니까 제 주변에도 수급자인 친구 있어요. (소득잡히지 않게) 그냥 딱 데 일하면(자활사업) 돈 더 받잖아 이런 거 많아요. 근데 아무리 메리트를 설명을 해줘도 해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고 제 나이 또래에는. 수급자여도 사고가 있었고 어쨌든 다양한 사유 때문에 빚이 있고 그

걸 값아야 되는데 150으로 값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걸 하면서 투잡 뛰는 것도 금지돼 있으니 까는... (중략) 그래서 저는 (자활급여를 좀 늘려야)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06)

(7) 효과적인 자활사업 운영 방안

⑮ 자활성공 시 인센티브 지급

자활성공 시 인센티브 지급은 자립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유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03의 진술처럼 인센티브 제도는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자립준비과정 참여와 장기적인 취업 유지 등에 대해 지급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립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자활급여를 인상하기보다는 취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했을 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쨌든 자립준비청년들이 일 경험을 쌓는 데는 어쨌든 일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쨌든 이 직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직업을 해도 괜찮은지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서 그것 자체로도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고... (가-03)

⑯ 자활사업 홍보 전략 개선

자활사업 홍보와 정보 제공에 있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보가 복잡하게 느껴진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청년층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진술은 연구 참여자 소수에게서 발견되지만, 자활사업에 대한 이해나 정보의 부족으로 자활사업에 미참여한 연구 참여자가 대다수라는 점에서 청장년층에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근데 (자활사업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거 쉬울 것 같더라고 생각해서 막상 들어가 봤는데 보니까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서 조금 어려운... (가-08)

5) 양적분석과 질적분석 결과의 비교·통합

본 장에서는 양적연구에서 분석한 미취업 근로빈곤층과 질적면접에 참여한 청장년의 특성을 비교·통합하였다.

(1)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의 주요 결과

미취업 근로빈곤층을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을 기준으로 4개의 집단을 도출한 결과에 비추어 해석하였다. 질적연구에 참여한 청장년은 A, B, C 집단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청장년에 대한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이 모두 낮은 D 집단에는 속하지 않았는데, 이는 완전한 근로활동 포기나 고립이 아닌 여전히 자활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미취업 근로빈곤층 평균 연령은 48.69세로 A 집단(34.53세)이 가장 낮고, D 집단(52.34세)이 가장 높았다. 질적연구에 참여한 청장년 26명의 평균 연령은 30.2세로 가 집단(24세)이 가장 낮으며, 라 집단(52.5세)이 가장 높았다. 결혼상태에 있어 배우자 있음은 미취업 근로빈곤층 52.78%이었고, A 집단의 배우자 비율이 42.08%로 가장 낮으며 D 집단은 32.69%로 가장 높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질적연구 참여자 대다수는 미혼상태로 나타났으며, 라 집단에서만 이혼 상태가 관찰되었다. 가구형태는 모든 집단에서 단독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D 집단의 단독가구 비율이 28.96%로 가장 높았다. 질적연구에 참여한 청장년은 다수가 단독가구였는데, 특히 가, 라, 마 집단의 경우 단독가구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나 집단과 다 집단은 가족과 동거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학력은 미취업 근로빈곤층 집단에서 중졸 이하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질적연구 참여자 26명 가운데 중졸 이하의 학력은 없었으며, 청장년 집단은 미취업 근로빈곤층보다 학력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A 집단에서 건강상태가 ' 좋음'으로 평가한 비율이 79.66%로 가장 높고, D 집단은 14.54%로 가장 낮았다. 질적연구 참여자인 청장년 26명 중 5명(19.23%)이 건강 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였으며, 특히 나, 라, 마 집단에서 건강 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양적 결과에서 A~D 집단은 주로 지체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질적연구에서는 가 집단, 나 집단, 다 집단은 모두 비장애, 라 집단과 마 집단에서 소수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C 집단에서 우울증상이 54.9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장년 집단에서는 26명 중 6명(23.08%)이 우울증상으로 인한 항우울제를 복용한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미취업 근로빈곤층과 자활참여 참여 확대 대상자인 청장년의 상이한 특성을 보여주며, 청장년의 상황과 요구를 반영한 자활사업 개선이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 노동의 저임금을 제공하는 자활사업은 더 이상 새로운 자활사업 참여 집단의 자립의지 고취라는 성과를 제고하는데 유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표 Ⅲ-7〉 집단별 특성에 대한 양적분석과 질적분석 주요 결과의 비교·통합

구분	양적결과	질적결과	비교·통합
	미취업 근로빈곤층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자 청장년	
연령	· 전체 평균 48.69세 · (A집단) 34.53세 · (B집단) 49.07세 · (C집단) 46.38세 · (D집단) 52.34세 · D집단>B집단>C집단>A집단	· 전체 평균 30.2세 · (가집단) 24세 · (나집단) 24.3세 · (다집단) 27.4세 · (라집단) 52.5세 · (마집단) 32세 · 라집단>마집단>다집단>나집단>가집단	· 질적 면접에 참여한 청장년 대부분은 20대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령증가와 경제적 어려움 등의 상호작용으로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큼
결혼 상태	· (A집단) 배우자 있음 42.08% · (B집단) 배우자 있음 47.77% · (C집단) 배우자 있음 51.60% · (D집단) 배우자 있음 32.69%	· (가집단) 8명 모두 미혼 · (나집단) 3명 모두 미혼 · (다집단) 9명 모두 미혼 · (라집단) 2명 미혼, 2명 이혼 · (마집단) 2명 모두 미혼 · 연령이 비교적 높은 라집단에 서만 이혼상태임	· 미취업 근로빈곤층(모든 집단)과 달리 질적면접에 참여한 청장년 대부분은 미혼상태임
가구 형태	· (A집단) 가구원수 3.38명, 단독 5.46% · (B집단) 가구원수 2.70명, 단독가구 15.43% · (C집단) 가구원수 2.85명, 단독가구 13.24% · (D집단) 가구원수 2.22명, 단독가구 28.96% · 모든 집단에서 단독, 모자, 부자,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외 가구형태가 대다수임	· (가집단) 8명 모두 단독가구 · (나집단) 3명 모두 모자가구 · (다집단) 8명 부모와 거주, 1명 단독 · (라집단) 4명 모두 단독가구 · (마집단) 2명 모두 단독가구	· 미취업 근로빈곤층 모든 집단에서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음. 청장년 집단에서는 가족돌봄, 경제선지능인 집단은 가족과 거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은둔고립청년은 단독가구일 가능성이 높음

구분	양적결과	질적결과	비교·통합
	미취업 근로빈곤층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자 청장년	
학력	· (A집단) 중졸이하 16.20%, 대학 이상 26.26% · (B집단) 중졸이하 35.47%, 대학 이상 14.91% · (C집단) 중졸이하 35.47%, 대학 이상 7.31% · (D집단) 중졸이하 57.82%, 대학 이상 4.33%	· (가집단) 고졸 5명, 전문대졸 1명, 대학교재학 2명 · (나집단) 고졸 2명, 대학교재학 1명 · (다집단) 고졸 4명, 전문대졸 1명, 대학교재학 1명, 대졸 3명 · (라집단) 고졸 2명, 전문대졸 2명 · (마집단) 고졸 1명, 대졸 1명 · 모든 집단에서 중졸 이하의 학력은 없음	·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자 청장년의 학력은 미취업 근로빈곤층의 학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주관적 건강 상태	· (A집단) 좋음 79.66%, 나쁨 6.64% · (B집단) 좋음 51.30%, 나쁨 22.84% · (C집단) 좋음 26.03%, 나쁨 53.88% · (D집단) 좋음 14.54%, 나쁨 63.26%	· 아래는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언급한 연구참여자의 수임 · 전체 26명 중 5명(19.23%) · (가집단) - · (나집단) 3명 중 1명 · (다집단) - · (라집단) 4명 중 3명 · (마집단) 2명 중 1명	· 미취업 근로빈곤층과 유사하게 청장년은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음
장애 종류	· (A집단) 지체장애 48.26%, 시각장애 15.63% · (B집단) 정신장애 12.48%, 지적장애 10.44% · (C집단) 지체장애 50.00%, 지적장애 9.46%, 정신장애 8.11% · (D집단) 지적장애 17.13%, 정신장애 11.76%	· (가집단) 모두 비장애 · (나집단) 모두 비장애 · (다집단) 모두 비장애 (경계선 지능인) · (라집단) 2명 비장애, 1명 산재 인정으로 신체대부장애, 1명 정신과적 질환 있으나 미등록 · (마집단) 1명 비장애, 1명 정신과적 질환 있으나 미등록	· A~D집단별 장애종류 구성비를 고려할 때, 라집단은 B/C집단, 다집단은 B/C/D 집단일 가능성이 큼
정신 질환 (우울 증상)	· (A집단) 16.66% · (B집단) 20.40% · (C집단) 54.95% · (D집단) 45.76% · C집단>D집단>B집단>A집단	· 아래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언급한 연구참여자의 수임 · 전체 26명 중 6명(23.08%) · (가집단) - · (나집단) 3명 중 1명 · (다집단) - · (라집단) 4명 모두 복용중 · (마집단) 2명 중 1명	· 청장년의 우울증상 보고 비율은 미취업 근로빈곤층보다 높음

주: 1)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공통된 항목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음.

2) 양적연구에서 A(근로역량 ↑-근로의욕 ↑), B집단(근로역량 ↑-근로의욕 ↓), C집단(근로역량 ↓-근로의욕 ↑), D집단(근로역량 ↓-근로의욕 ↓)을 의미하며, 질적연구에서는 가(자립준비청년), 나(가족돌봄청년), 다(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라(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마(은둔고립청년)를 의미함.

(2)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바탕으로 한 집단 매칭

양적분석에서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을 기준으로 도출된 양적 집단(A, B, C, D)과 질적 연구에서 확인된 청장년 집단(가, 나, 다, 라, 마)을 비교하여 유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을 매칭하였다.

① A 집단(근로역량 ↑ -근로의욕 ↑) - 가 집단(자립준비청년)

A 집단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평균 34.53세)이며,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이 모두 높은 특징을 가진다. 질적연구의 대상 중 가집단(자립준비청년) 또한 젊은 연령층(평균 24세)으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로의욕이 높고, 직무 역량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두 집단 모두 단독가구 비율이 높아, 독립적이고 자립 지향적인 특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이 열악한 근로환경(저임금, 높은 근로강도)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으로 소진되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며 방황할 경우 근로의욕이 낮아질 가능성(B 집단)이 있다. 반대로 자립준비청년이 직무 역량 부족 등의 이유로 반복된 구직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 근로역량이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원 제도의 공백 속에서 이러한 상황이 심화된다면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이 모두 저하된 D 집단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② B 집단(근로역량 ↑ -근로의욕 ↓) - 나 집단(가족돌봄청년)

B 집단은 근로역량은 높지만, 정신적·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근로의욕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교적 높은 연령(49.07세)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질적연구 결과 나 집단(가족돌봄청년)이 B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나 집단은 돌봄 및 생계 부담으로 인해 근로역량은 충분히 있지만, 과중한 책임과 의료비 부담 등으로 인해 근로의욕이 저하되어 있다는 점에서 B 집단의 특성과 유사하다. 하지만 돌봄과 생계 부담으로 직무 역량을 개발하거나 전문 기술을 습득할 시간이 부족해진다면, 근로의욕은 높으나 근로역량이 낮은 C 집단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돌봄 지원 정책과 직무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③ C 집단(근로역량 ↓ -근로의욕 ↑) - 다 집단(청장년 경계선 지능인)과 라 집단(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C 집단은 근로역량은 낮지만, 근로의욕이 높은 집단이다. 다 집단(청장년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근로의욕은 매우 높으나 직무 역량 부족으로 반복된 구직 실패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C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 집단이 지속적인 구직 실패를 경험한다면, 장기적으로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이 동시에 감소하여 D 집단에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근로의욕이 높은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질적연구에 참여한 라 집단(경증 정신질환 청장년)도 정신과적 질환이 있음에도 높은 수준의 근로의욕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점은 C 집단의 특징과 유사하다. 실제로 이들은 취업정보사이트,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지만 반복적인 실패도 뒤따랐다. 장기적인 재취업 실패는 우울증, 불안장애, 양극성 장애 등 취약한 건강상태와 맞물려 결과적으로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이 모두 낮아지는 상태(D 집단)로 이어질 수 있다.

④ D 집단(근로역량 ↓ -근로의욕 ↓) - 마 집단(은둔고립청년)

D 집단은 근로역량과 근로의욕 모두 낮은 집단이다. 마 집단(은둔고립청년)은 장기적인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직무 역량이 점차 약화되어, D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질적연구에 참여한 마 집단은 자신의 상황을 체념하며 의욕을 상실된 경험을 털어놓기도 하였다. 하지만 마 집단 외에도 질적연구에 참여한 청장년들이 심리적 저하, 건강 악화,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그 취약성이 가중될 때 D 집단에 속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자인 청장년은 각 집단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각각의 특성을 나타내며, 가중된 취약성으로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이 모두 낮은 D 집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장년 이 D 집단의 경로로 이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집단별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한 자활사

업 참여 확대 대상자인 청장년 집단을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은둔고립청년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집단별 구직·실업·일 경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의 특성을 맞춘 차별화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6) 소결

본 장은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자 청장년 FGI를 실시하고 자활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질적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자 특성에 기초하여 청장년을 네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면접조사에는 자립준비청년 8명, 가족돌봄청년 3명,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9명,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4명, 은둔고립청년 2명 총 26명의 청장년이 참여하였다. 원자료를 통해 집단별 구직·실업·일 경험, 자활사업 인식과 참여 경험, 자활사업 참여 및 기능 확대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에 앞서 2장 자활사업 참여자 및 확대 대상자 특성과 질적면접에 참여한 청장년의 특성을 비교·통합하여, 청장년 집단이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자로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청장년은 근로역량과 근로의욕이 높고, 주로 미혼이며 단독가구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또한, 기존 자활참여자와 달리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춘 비율이 높았으며,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청장년 대상의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청장년 집단별 구직·실업·일 경험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집단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 참여한 8명의 20대 자립준비청년은 대부분 고졸 학력(5명)과 미혼 단독가구(8명)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보육원, 쉼터 등 보호 상황에서 자립을 요구받았으며, 여러 외부 상황(시설, 쉼터 방침 등)으로 인해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많았다. 고졸 학력으로 불안정한 취업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리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었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보호 종료 기간까지는 지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다 이후에는 지원이 단절하는 문제도 확인되었다. 가족돌봄청년 3명은 고졸 2명, 대학교 재학 1명이었으며 평균연령은 24.3세였다. 이들은 가족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학업을 포기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면서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가족의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자립 의지가 저하되기도 하였다.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9명의 평균 연령은 27.4세이며, 고졸 3명, 대졸 3명, 전문대졸과 대학교재학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들은 구직과 취업 적응에서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며 자존감 저하와 사회적 고립의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 특성을 드러냈다. 집단면접에 참여한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4명은 모두 남성으로 평균연령이 52.5세로 가장 높았다. 학력은 고졸 2명, 전문대졸 2명이었으며, 미혼과 이혼이 각각 2명, 4명 모두 단독 거주 상태로 확인되었다.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은 취업과 실직이 반복되는 가운데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크지만,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은둔고립청년 2명은 모두 남성이며 평균연령은 32세였다. 둘 모두 미혼이며 단독거주 상태였다. 대학교졸업의 참여자는 현재 경제활동(정규직) 중이며, 고졸 참여자는 비경제활동상태로 나타났다. 두 청년은 장기적인 취업 준비와 반복된 실패로 심리적 위축과 인간관계 단절을 겪었으며, 아르바이트와 단기 근로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우울증과 불안으로 상담 및 치료를 받았으며, 장기화된 은둔 생활로 사회성이 저하되고 직장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인식은 다층적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활사업 미참여 청장년 17명은 낮은 급여와 정보 부족으로 참여 의사가 낮았으나, 직장 및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일-학습을 병행하여 미래 준비를 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기도 하였다. 자활사업 참여 청장년 9명은 참여 이후 안정된 생활과 자기개발, 사회적 관계 능력 향상 등의 긍정적 변화를 보고하였다. 다만 초기 목표 설정과 참여자 맞춤형 지원 부족, 업무 분담의 공정성 등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장년층의 자활 의지 고취와 장기적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을 제기하였다.

질적심층면접을 통해 청장년 집단별 자활사업 개선 방안과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였다. 자립준비청년 대상 two-track 프로그램, 지속적인 상담, 멘토링이 필요하며, 가족돌봄청년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유예제도와 휴식 지원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에게는 일자리 적응 지원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맞춤형 교육훈련이 강조되었으며,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의 경우 건강 상태에 맞춘 유연한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은둔고립청년 대상으로는 사회 적응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단계적 참여 구조와 지속적이고 유연한 일 경험 제공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청장년층이 선호하는 직종 개발과 탄력적인 근로시간제, 적정 급여 제공이 제안되었으며, 자립 성공 시 인센티브 지급과 쉬운 홍보 전략이 요구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장의 질적연구는 청장년층의 특성에 맞춘 자활사업의 맞춤형 접근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자인 청장년의 세부 집단별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경계선 지능인,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은둔고립청년 각 집단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자활

사업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청장년층의 경제적·심리적 자립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청장년층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하지만 기존의 자활사업 참여 대상은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정책적 지원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자문회의 개요

앞서 양적·질적 연구를 통해 도출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자문회의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회당 90분 내외로 실시되었다.

조사된 참여자는 교수 및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제시된, [표 Ⅲ-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집단초점면접은 박사 1인이 회의를 진행하고 석사 1인이 이를 보조하였다. 면접 이전에 전문가 3인에게 연구 자료를 공유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및 욕구, 현 자활사업의 한계, 참여자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 세 가지 측면에서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FGI 시작 전에 전문가들에게 자문회의의 목적과 내용, 비밀 보장, 녹취 동의 여부, 연구 중도에 연구 참여 의사 철회 가능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표 Ⅲ-8〉 전문가의 일반적 특성

ID	성별	소속 및 직위, 전문 분야
01	여	○○광역자활센터 부장
02	여	○○지역자활센터 실장
03	여	△△지역자활센터 실장

ID	성별	소속 및 직위, 전문 분야
04	남	□□지역자활센터 실장
05	여	○○시청 자활지원팀 팀장
06	여	○○시청 자활지원팀 주무관
07	남	△△도청 복지사업과 주무관
08	남	□□도청 사회복지과 주무관
09	여	아동권리보장원 부연구위원
10	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선임연구위원
11	여	중앙사회서비스원 과장
12	여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3	여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	여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	여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	남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자문회의 결과

본 절은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및 욕구’, ‘현 자활사업의 한계’, ‘참여자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세 가지 범주에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도식화하기 위해 표로 제시하였으며, 본문에는 각 주제에 대한 대표적인 진술을 제시하였다.

〈표 Ⅲ-9〉 자문회의 분석 결과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1)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및 욕구	① 결핍으로 인한 낮은 근로역량과 근로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청년은 생계 유지에 대한 압박으로 자기계발에 투자할 시간이 부족함 · 사회적 관계의 결핍은 근로 과정에서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게 만들 · 근로의지 - 근로역량 간 부조화로 일을 하고 싶어도 계속할 수 없는 집단, 일을 할 수 있지만 지속하여 할 수 없는 집단 등으로 나뉘지는 가운데, 자활사업 참여가 대를 이어 발생하는 현상이 목격됨
	② 근로의지의 변화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후 높은 근로역량과 근로의지를 나타내지만 현실의 높은 장벽을 경험하며 의지가 약화됨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포기해 높은 근로의지를 가지며 기초역량을 다지고, 반복된 일로 인해 흥미가 저하될 수 있으나 높은 수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기술을 습득함. 이후에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
(2) 현 자활사업의 한계	③ 사례관리 서비스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내에서 청장년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 직무 지원, 역량 강화, 사회적 관계망 구축 등 이전보다 다층적으로 지원해야 함 · 사례관리를 통해 근로역량에 따른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지역구 특성에 맞는 자활사업 운영이 필요함
	④ 현금형 지원방식에 따른 근로 지속성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형 지원방식은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지만, 근로 지속성 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함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3) 참여자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⑤ 정서적 지지를 통한 근로 동기 강화	· 공동체적 경험(자조 모임 등)을 통해 청장년의 근로 동기를 강화해야 함
	⑥ 직종 개발과 자기계발 컨설팅 제공	·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직종을 개발해야 함 · 안정적인 근로 정착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⑦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주거, 돌봄, 정서적 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자활서비스의 협업 체계가 필수적임
	⑧ 자활기업 성장 지원 및 급여 향상	· 자활기업이 단순 고용의 장을 넘어 자립의 경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활기업의 성장을 지원해야 함 · 외부자원동원, 사업다각화 등을 통해 급여 수준을 향상해야 함

(1) 자활사업 참여자 특성 및 욕구

① 결핍과 부정적 상황으로 인한 낮은 근로역량과 근로의지

자활 참여자의 특성에 있어서, 먼저 전문가 02는 근로 역량은 있지만 근로 의욕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설명한다. 예컨대 어떤 참여자의 경우 근로역량은 낮지만, 의지는 커서, 결근도 안 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자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능력이 낮아 계속 고용이 어려워진다. 그와는 반대로 근로역량은 높지만 의지가 낮은 경우, 가령 은둔고립청년 등은 일단 외출을 어려워해 지속 근무가 어렵다. 또한 해당 전문가는 자활 참여가 대를 이어 이어지는 현상을 보며, 가난의 대물림 문제를 언급하였고 참여자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전문가 11은 청년 개인의 잠재적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닌 환경적·구조적 요인으로 근로역량과 근로의지가 낮아지게 된 결과를 설명하였다. 특히 자립준비청년들은 자립 이후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발생한다.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노동에 집중해야 하므로, 장기적인 직무 기술 습득이나 자기계발을 위한 여유 시간이 현저히 부족하다. 또한 일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멘토나 지지자를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이나 정서적 지원의 부재로 이어진다. 더불어 타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경험이 부족해지면서 사회

적 기술이 발달할 기회도 줄어들고, 근로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또한, 전문가 13은 청년층의 자립 지원 시 비단 재정적 지원을 넘어 심리·정서적 지원의 필요성을 짚었다. 가령 보호 직후이거나 가족돌봄을 이어가야 하는 청년의 경우 정서적 어려움이 근로의욕과 더불어 근로 역량을 저해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관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면 전혀 무관한 청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활 참여 주민들의 자녀들이 오는 경우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가난의 대물림이 벌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도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우리 성공한 아이들은 LG그룹에 취업하기도 하고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은 보면 이미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은 내가 따고 싶은 자격증 내가 조금만 하고 싶은 건 뒷받침이 되는데 우리의 고민도 능력은 안 되는데 되게 성실한 청년들도 있어요. 결론을 안 해요. 근데 이 청년들은 3년 안에 그냥 다시 집으로 들어가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운둔형도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봤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는 그냥 앉아서 대소변을 보면서 게임을 하는 아이예요. 그렇게까지도 이제 심한 아이들은 치료가 먼저 급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부모의 이제 숙제로 남는 거예요.” (전문가 02)

“사실 취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 의욕도 사실은 낮고 근로 역량도 현실적으로 좀 낮다고 저는 봅니다. 이들이 정말 갖추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이 낮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 저는 두 가지의 결핍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확하게 시간에 대한 결핍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에 대한 결핍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회 관계에 대한 결핍이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전문가 11)

“그런데 이러한 청년들은 보호 종료 후 안정된 환경 없이 생존을 위해 빠르게 자립해야 하는 상황 속에 처하거나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가 부족해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은 근로의욕 뿐 아니라 근로 역량에도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은 독립하기 이전에 충분한 진로지도 경험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 근로의욕이 매우 저하되어 있기도 하고, 관계성 훈련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의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자활사업의 규칙적인 참여가 어려울 수 있고, 돌봄과 사업참여 병행으로 인한 신체적 소진 또한 매우 우려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취업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가 13)

② 근로의지의 변화 양상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근로의지 변화 양상을 이야기해 주었다. 전문가 09는 자립준비청년 보호 종료 직후와 자립 과정에서 근로의지가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한다고 언급하면서, 초기에는 근로 의지가 높고 자립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현실적 어려움과 지원 제도의 특성이 근로 의지 저하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전문가 10 또한 전체적인 청년 집단의 근로의지의 변화 양상을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을 통해 기초 역량을 다질 수 있으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반복적 직무로 인해 흥미가 저하될 수 있으나, 더 높은 수준의 직무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후 단계에서는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하지만, 이 단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즉 근로 의지의 변화는 단순히 외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 경험의 누적 과정과도 연결되며, 적절한 직무 경험과 체계적 지원이 주어질 경우 다시 성장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헌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을 때도 18세가 되면 이제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으로부터의 어떤 보호가 종료되면서 근로 의욕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이 아동 청소년들 대상으로 어찌 되었건 꾸준히 어떤 자립에 대한 역량, 자립 기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근로 역량 혹은 자립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갖춰졌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높은 편으로 좀 보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인터뷰를 해봤을 때 언제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가 보면 자립하고 실제 18세 이후에 막 세상과 부딪히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안정적인 자립 수당도 받고 생계급여도 받고 이런 지원책을 받으면서 뭔가 이 취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그때 좀 자립에 대한 의욕 다시 말해서 근로 의욕이 조금 낮아지는 경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전문가 09)

“청장년들을 보면 명확하지 않지만 한 3단계 정도의 그런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처음에 너무 힘든 일을 시키면 어려워하고 근데 단순한 일을 시켜주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또 흥미를 잃어요. 그러면 약간 더 스킬을 올리는 직무를 또 부여하고 또 그렇게 올리고 한 세 번 정도의 직무 숙련의 과정을 진행하면 그 개인의 역량도 굉장히 커지고 자활 사업장에서의 업무 처리 범위도 넓어지면서 여러 일들을 다 커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전문가 10)

(2) 현 자활사업의 한계

③ 사례관리 서비스의 부재

자문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서비스의 부재는 현 자활사업의 한계로 지적되었다. 전문가 10은 사례관리 서비스의 부재는 특히 관계적 지원이 필수적인 경계선 지능인 청년과 정신건강 취약계층 청장년에게 직장 내 어려움과 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분석하였다. 전문가 15 또한 다양한 자활사업 참여자, 지역 특성 등을 언급하며 근로역량에 따른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의 중요성을 짚었다. 사례관리 서비스를 통해 청장년의 심리적 안정과 직무 숙련 과정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실질적 직무 지도, 직장 내 인간관계 중재 등 다층적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사례관리자가 중심이 되어 자활사업 체계 내에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실질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계선 지능 청년들도 그렇고 일단 경증의 정신질환의 청장년들도 그렇고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인정 욕구가 강한 경우가 많고 대신 이제 관계 속에서 지금 결핍된 상태들이 많아서 그걸 일부분 어쨌든 대인 서비스를 지원해 줘야 돼요. 근데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저희 쪽에서는 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대인 서비스가 들어가요. 그러면 직장에서 정착률이 높아지는데 다른 청장년한테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례 관련 담당할 수 있는 지원 인력이 없잖아요. 지금 저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 아까 이제 굉장히 고밀도의 사례관리처럼 이 친구들도 자활기업 쪽에서 오면은 그렇게 대인 서비스 지원을 받으면서 직무를 습득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 10)

“근로능력 있는 대상에게는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근로능력 및 의욕이 저하된 대상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및 교육, 역량강화를 통해 자존감 및 직업능력을 향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모든 자치구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백화점식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구별 특성에 따른 자활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환경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약성이 심화됨으로 인해 정서적 자활에 대한 관심 확대와 위기상황 개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경제적 자활 외에도 사회적 자활 및 정서적 자활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 15)

④ 현금형 지원방식에 따른 근로 지속성 문제

현금형 지원방식은 자립준비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일정 부분 보장하지만, 동시에 근로지속성 저하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 09는 이러한 지원 방식이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지속하려는 동기와 의욕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구조적 지원 체계가 현금 지원에만 치중하고, 정서적·관계적 지원을 소홀히 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현금형 지원 방식은 근로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관계적 지지, 멘토링 프로그램, 정서적 지원 체계와 함께 통합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립준비청년들은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충분히 현금적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다 보니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은 거고 그리고 본인이 힘들게 일한다고 해도 옆에서 지지해주는 신뢰할 만한 뭔가의 그런 조연을 해줄 수 있는 든든한 어른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힘들면 그만두고 힘들면 그만두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근로가) 지속되지 않는 현상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금 지원이 강화되면서 더 일어난 약간 부작용 같다고 보여 지긴 하거든요.” (전문가 09)

(3) 참여자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⑤ 공동체적 경험을 통한 근로 동기 강화

전문가 09는 자활사업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보다는 자기 성장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심리적·정서적 지지는 청년들이 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좌절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동기를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공동체적 관계망(자조모임 등) 속에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근로를 단순한 경제적 생존 수단이 아닌, 자아실현과 관계 맺음의 장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며 근로 동기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취업의 동기, 의욕이라든가 이런 게 경제적으로 내가 막 돈을 벌겠다 이거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된 부분인데, 공동체적으로 들어가서 서로 비슷한 경험을 했던 친구들과 이제 이런 심리적이거나 이런 정서적인 도움을 좀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근로 의욕이 높아지게 되고...” (전문가 09)

⑥ 직종 개발과 자기개발 컨설팅 제공

전문가들은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자인 청년 대상 새로운 직종 개발과 자기개발 컨설팅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 11은 주거 개선 사업에서의 기술 습득과 같은 분야가 자활사업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청년들이 자기만의 전문 기술을 발전시키고 해당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술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와 더불어 전문가 09는 근로의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술 훈련뿐만 아니라 해당 직무가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가 10은 청년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와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술 훈련의 전문화, 직종 개발, 자기개발 컨설팅의 체계화는 청년들이 자활사업을 통해 장기적인 직업적 비전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자립과 성장을 실현하는 근간이 될 것이다.

“주거 개선 환경 같은 경우에는 도배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 쪽으로 이제 많이 기술을 습득을 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뭔가 자기만의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의 영역을 조금 타겟팅을 해서 좀 진행을 해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전문가 11)

“일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매력적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개발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중략) 뭔가 기술 훈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분야까지도 고려했을 때 기술 훈련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전문가 09)

“자활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이해가 좀 충분한 그런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새로운 취업 취약 청년들이 그런 자활 사업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그런 어떤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10)

⑦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자문회의를 통해 청년들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되었다. 전문가 09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센터는 돌봄 코디네이터 한 명당 약 100명의 청년을 담당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청년들의 욕구를 세밀하게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역부족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서적 안정, 주거 안정, 취업 및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욕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복지서비스와 자활서비스를 연계할 필요성이 크다고 언급하였다.

“사실 저희가 가족 돌봄에 대한 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대상으로 인해서 학습 지원이나 정서 지원이나 여러 가지 등등을 할 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자립준비 측면에서 청년 미래센터가 전국 단위까지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현재 가족돌봄청년들을 위해서 특화된 센터로 지금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가족돌봄청년들을 대상으로 돌봄 코디네이터 분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센터당 한 6명의 돌봄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했고 그 사람들을 한 명당 100명의 가족 돌봄 청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이들에한테 주어지는 서비스는 어떤 돌봄에 대한 지원 정서적인 지원 아니면 현금 지원이고, 이들의 취업, 자립, 자활에 대한 그 부분은 저는 굉장히 열악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같이 뭔가 협업해서 이들의 어떤 자활 영역으로의 확대를 좀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중략) 대상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런 기반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자활 사업에서 이걸 얼마나 커버할지 모르겠지만 복지 서비스의 어떤 여러 가지의 범위로서의 확대를 한다면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했을 때 안정적인 어떤 자활 사업에 참여했던 네 방법적인 부분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전문가 09)

⑧ 자활기업 성장 지원 및 급여 향상

자활기업 성장 지원 및 급여 향상은 먼저, 자립준비청년과 취약계층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근로의욕을 유지하고 경제적 자립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나타났다.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활기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경제적 활동과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자활기업이 단순 고용의 장을 넘어,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경로로 기능하기 위해

서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여야 하며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더불어 자활기업의 낮은 급여 수준은 근로 의욕을 낮추는 기제가 될 수 있기에, 외부 자원 동원,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 급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자활 기업 자체의 뭐랄까 급여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향상을 시키려면은 부가적인 동원 가능한 자원들을 외부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10)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대상들을 이제 참여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취업을 시키는 부분일 건데 그거를 계속 지속하게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근데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창업자가 돼서 이제 자활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제 사회 서비스 영역이 어쨌든 자활 기업으로 창업을 하면서 또 되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경제적으로도 돈을 벌고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적합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11)

“근로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능력 있는 대상에게는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근로능력 및 의욕이 저하된 대상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및 교육, 역량강화를 통해 자존감 및 직업능력을 향상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때 모든 자치구에서도 수행하고 있는 백화점식 사업을 지양하고, 지역구별 특성에 따른 자활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환경이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약성이 심화됨으로 인해 정서적 자활에 대한 관심 확대와 위기상황 개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경제적 자활 외에도 사회적 자활 및 정서적 자활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문가 15)

참여 대상 확대에 관해, 전문가 자문 집단에 따라 자활사업 소득 선정 기준 완화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전문가 06~08로 구성된 자활사업 도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대체로 선정 기준 완화에 다소 의문을 보였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 이미.. 중위소득 금액도 높아져 있는데 비율까지 높이면 (현실적으로) 이걸 감당하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들도 되게 고려를 잘 하셔야 돼요.” (전문가 06)

“근데 이제 이 중위소득 100% 120%까지 잡았을 때는 이거는 정말 고민하셔야 될 거거든요.. 지금의 인원을 예산이 담을 수도 없고... (예산과 대상 간) 그 매칭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전문가 06)

이와 달리, 지역사회활센터 자활사업 전문가는 현행 자활사업 참여자의 참가 기준을 완화하여 근로 능력이 좋고 꿈이 명확한 청년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평가하였다. 더욱이 대상자 범주를 넓혀 자활사업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일조하여 일부 자활참여자의 낙인감이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하였다.

“그래서 기본 소득을 좀 높여서 가입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고용 유지하고 이제 갑작스러운 퇴사 등을 좀 막아내지 않을까 이게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저희는 2안으로 가서 그래도 좀 근로 능력이랑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좀 섞이면 자활이 조금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경계성 청년이다 보니까 같은 것을 계속 반복시키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가 있고 근데 요즘에 덕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턴 청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근로 능력이 좋고 이제 꿈이 명확히 있는 아이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피부과에 관심이 있다 아니면 내가 어디 캐드나 디자인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그 업체랑 직접 그리고 저희는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업체분을 불러요.

그래서 청년 강의 취업 강의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 회사는 어떤 사람을 원해 어떠한 자격을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맞춰서 자격을 갖추면 우리가 인턴으로 받아줄게라는 것들을 해서 뚜렷하게 기업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듣게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 120%로 하면 이거에 부응하는 청년들이 더 많죠. 근로 능력이 좋은 청년들이 오니까 그럼 이게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선생님들이 이번에 이제 전북도 한 군데에서 편의점을 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편의점을 많이 선호하신대요. 왜 그랬더니 나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되게 강한 거예요. 옛날에 저희 센터에서도 방과 후 교실 같은 거 할 때 나 방과 후 교사야 나 방과 후 교사야. 나는 장애인 통합 보조원으로 교육청 소속으로 일해 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그리고 저희도 이제 자전거 공영 대여소 저희가 운영하거든요. 사람들이 오면 소장님 소장님이 한대요. 자전거 대여 소장님.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불러 지는 이 호칭과 나의 그게 나를 업그레이드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자활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막 못 사는 사람들이 막 이런 걸로만 너무 국한을 하니까 그들이 가진 그러니까 이 낙인감을 어떻게 조금 완화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저는 120%가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전문가 02)

IV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개선을 위한 제도 분석

1. 자활사업 참여자 관련 국내 법적·행정적 근거 검토
2. 자활사업의 대상자 확대를 위한 특화 사업 검토
3. 자활사업 참여자 관련 해외 법적 근거 검토
4. 소결

IV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 개선을 위한 제도 분석

본 장에서는 앞장의 분석 내용에 이어서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해 기존의 법적·행정적 규정, 기타 자활사업 내에서 실시하는 여러 사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자활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법적·행정적 토대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고,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를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를 모색하고자 한다.

현재 자활사업의 대상을 규정하는 기본법령은 『기초생활보장법』이다. 이에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의 틀 안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방안을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 법령 및 각종 지침에서 정의하는 자활사업 내용의 법적·행정적 정의를 살펴보고 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나 각종 지침 등 간에 상충될 수 있는 지점에 대해 짚어볼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화 또는 시범사업들의 참여 대상과 운영 방식을 비교 검토하여, 각 사업단의 참여 대상자들의 특성과 대상자 편입 가능성을 재점검해 본다. 마지막으로, 기존 법적·행정적 논의를 심화하는 차원에서 영국과 독일의 법적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소결에서는 자활사업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자활사업운영 기반에 토대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제언해 볼 것이다.

1. 자활사업 참여자 관련 국내 법적·행정적 근거 검토

1) 자활사업 대상자의 법적·행정적 규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내 대상자 확대의 한계

우리나라 자활사업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구체적 사업 참여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최저생활지원과 자활 모두를 지원하게끔 선언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속한 저소득층이라면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대원칙이라 할 수 있다.

법령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를 명시하고 있다. 법령상에서는 크게 두 집단으로 구분이 되는데, 의무참여가 요구되는 조건부 수급자와 본인이 희망하여 참여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차상위자)다. 제시한 <표 IV-1>에서 알 수 있듯이,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자활사업을 필수 참여한다는 조건 아래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근거, 보장기관은 조건부 수급자를 자활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게끔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건부수급자는 자활사업의 의무참여자이면서 동시에 자활센터가 우선 선정해야 하는 사업참여자가 된다.

그 이외에 나머지 수급권자들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2항에 근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기관이 선정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이들을 자활사업에 포함시켜야 할 의무는 없다. 이에 본인이 희망하면, 보장기관이 해당하는 이들을 자활사업 대상자로 참여시킬 수는 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중위소득 32%)대상자 중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이지만 근로능력평가를 거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수급권자,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수급자 즉, 의료(중위소득 40%)·주거(중위소득 48%)·교육(중위소득 50%)급여 수급권자, 급여를 신청하진 않았지만 중위소득 50% 범주에 속하는 차상위자,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도 한시적으로 근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활사업 의무조건이 유예된 수급자다. 마지막으로 동법 제14조의2에 근거 수급조건에 부합하진 않으나 일정 기간 급여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급여특례자들이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토대를 두어,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자활사업지침에서는 공식적 자활사업대상자를 6가지 유형의 대상으로 재정의한다. <표 IV-1>에서 제시한 의무참여자인 조건부수급자와 희망참여자인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자활급여특례자, 자활참여특례자,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으로 분류한다. 이는 법령에서 규정한 대상에 근거해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을 모두 유형화하여 분류한 자격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1〉 기초생활보장법령 내 의무참여 및 희망참여 대상자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수급 제외자·유예자 포함) 및 차상위자, 특례자 (희망참여)
법령	<p>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u></p>	<p>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p>
시행령	<p>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u>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u>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조건부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u>조건으로</u> 부과하여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한다.</p>	<p>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조건부수급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3개월로 한정한다.</p>
시행규칙	<p>제26조(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조건이 자활근로인 <u>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u> 선정하여야 한다. 자활근로를 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기능습득과 자활근로사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수급자를 <u>지속적으로</u> 특정 자활근로사업의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p>	<p>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p>

〈표 IV-2〉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지침에서 규정하는 자활사업자격

유형	내용	세부내용
조건부수급자 (의무참여대상)	자활사업 참여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소득 초과(중위소득 33%)시 자활참여 특례자로 처리
일반수급자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	근로능력없는 생애급여수급권자: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없음 평가자 유예자: 돌봄제공자, 학생, 등록장애인, 입영예정자-전역자, 출소자, 복지 시설거주퇴소자 등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사업, 국민취업제도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중위소득 40% 초과한자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둘다 자활급여특례자 진입가능
자활참여특례자	자활급여특례자 이외 조건부수급자 또는 일반수급자가 자활참여 발생소득으로 인해 해당 급여 기준 초과한 자	각각 33%(생계-조건부), 48%(주거), 교육(50%) 초과자
특례수급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자활급여+자활참여특례자의 가구원 (예: 성년자녀 등)
차상위자	근로능력 있고, 중위소득 50% 충족대상자 중 비수급권자	한국국적 미성년자녀 양육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포함 만 65세 이상 참여 가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시설수급자 중 급여수급권자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자 아님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은 차상위자 기준 준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자활사업 안내 (pp. 15~35) 내용 요약

(2) 시행규칙에서 지정한 조건부 수급자 우선원칙과 자활참여 대상자 확대 한계

먼저 현행법상에서 자활사업 대상자를 조건부 수급자를 우선 지정하는 조항(『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은, 자활사업 대상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제약을 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법령과 시행령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조건사항처럼 자활이 기재되지만, 실제 시행규칙에서는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우선 배정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변화하면서 대상자 지정 및 사업 성격이 성격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을 운영할 때 대상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나 인원이 지역사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조건부 수급자의 배정 문제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지역별로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즉, 지역자활센터의 상황상 조건부 수급자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 여타 자활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조건부수급자 우선 선정의 문제는 지침상으로는 많이 개선되었다.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자활사업에는 참여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 시설수급자 순으로 자활센터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대상의 우선순위 위계가 비교적 분명했다. 그러나 2019년 복지부가 자활사업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지침을 변경함에 따라, 이러한 참여자 우선순위는 사라지게 되었다(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2019). 그럼에도 제26조의 조항이 현재까지 그 효력이 발휘되고 있으므로, 자활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 여전히 제약은 따르는 상황이다.

조건부수급자 우선 조항이 효력을 유지할 때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난점은, 실제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비중이 낮다는 현실과 맞물린다. 특히 자활사업과 동시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과거 취업성공패키지)가 함께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고, 그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대상자(자활역량평가 80점 이상자)들은 우선 지원하게 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자활역량을 가진 대상자들이 자활사업에 머무르게 되고, 자활사업 사업 또한 대상자 정체·축소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곤 하였다(정해식 외, 2020; 서광국, 2021). 보건복지부가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 방침을 냈던 2019년도 데이터를 놓고 살펴본다면, 전체 수급자 대비 자활사업 참여자 비중은 15.7%, 생계급여 수급자 대비 자활사업 참여자는 21.0%에 불과했다(정해식 외, 2020). 이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대부분은 생계급여 수급자이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차상위자에 준하는

빈곤층일 가능성이 높다. 상술한 2019년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 활성화 방침에서 자활사업의 주 공략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내세웠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그러나 현존하는 조건부 수급자 우선 조항이 살아있는 이상, 이러한 전략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전략’에 그칠 수밖에 없다.

(3) 자활대상자가 위치한 법령상의 문제

자활사업은 본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귀속된 사업이다. 이는 생계급여의 조건부 수급자는 자활사업으로 묶이게 하는 제도이지만, 상대적으로 빈곤의 경계선에서 진입과 탈출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차상위자에게는 유인책이 떨어지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내용의 핵심은 법령상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상술한 법령 기준에 따르면,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기준은 비교적 법령-시행령-시행규칙 모두 비교적 명확하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건부수급자 포함 일반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했을 때, 근로유지형 이외 자활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규정하는 급여 소득 기준이 초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조항이 법령 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조항이다. 특례에 의한 자활급여 지급 기간은 5년으로, 이는 법령에서 지정한 기간은 아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지침상 변동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이 특례조항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급여 내용 및 수준이 결국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범위 안에 묶여 작동한다는 한계가 있다. 자활급여의 특례조항으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급여 기간을 유예하는 방식 자체가 이들의 탈수급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초기 운영 때부터 지적받은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노대명, 2010).

법령에서 지정하는 자활대상자 즉, 조건부수급자(의무), 일반수급자(희망), 자활급여 및 참여 특례자가 실질적으로 자활에 참여해 자활급여를 받게 되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시한 기준이 다음 <표 IV-3>이다. 핵심은 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들이 사회서비스형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를 실시하여 자활급여를 받게 될 때, 소득수준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치(중위소득 50%)를 초과하게 된다는 점이다. ‘탈수급’이라는 본래의 의미만 놓고 본다면 당연한 결과지만, 문제는 이러한 ‘탈수급’의 문제가 적절한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배제한 상황에서 벌어졌을 때 수급자들로 하여금 근로를 유인할 수 있는 동기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는 점에 있다. 2006~2007년에 걸쳐 추진된 『자활급여법』은 바로 이러한 맥락과 문제의식에 근거해,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하겠다는 목적하에 추진된 시도라 할 수 있었다.

〈표 IV-3〉 중위소득 기준(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과 자활급여의 수준 비교

자활 급여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722,800				1,305,200	1,506,180
중위 소득 ¹	30%(생계)	40%(의료)	48%(주거)	50%(교육)	60%	70%
	713,102	891,378	1,069,654	1,114,223	1,337,067	1,559,912

편의상 1인가구 기준으로 기재

(4)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제외자와 조건부 수급자 유예자의 상충

조건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자는 생계급여 범위 내에서는 엄밀하게는 세 집단, 크게는 두 집단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표 IV-4〉 참고). 먼저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64세 이상 노인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대상이다. 근로가능한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된 이들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증장애인, 근로 능력 없음 판정자, 중증·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자다. 마지막으로는 조건부 수급유예자다.

〈표 IV-4〉 기초생활보장법 상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제외자와 조건부 수급자 유예자

구분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제외자	조건부 수급자 유예자
근거조항	시행령 제7조	시행령 제8조
세부대상자	<p>18세 이상 64세 이하 수급자 중</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증장애인 2.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 3. 중증, 희귀, 난치질환자 산정특례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 및 개인여건으로 참여하기 곤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제공자(한부모, 치매간병, 영케어러 등), 학생(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 제외), 고용촉진사업 및 직업재활 참가 등록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자, 임신 및 출산여성 2. 초과소득자 (주 3일 이상 근로종사자, 주당 평균 4일이상 22시간 이상 근로 종사자) 3. 환경변화 적응자 (3개월 유예기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영예정 또는 전역자, 출소자, 사회복지시설퇴소자,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질병·부상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 후 회복자

해당 대상자들이 조건부 생계급여 대상에서 배제되는 이유는 개인의 의학적·신체·인지능력 평가에 기반한 근로능력평가와 상황적으로 근로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

적 요인을 고려한 것에서 비롯된다. 의학적으로 전혀 근로를 할 수 없는 대상(중대질병, 장애보유자)인 경우는 의학평가 3,4단계, 즉, ‘근로능력 평가없음’으로 판정될 것이기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제외자에서 별도로 기재한 중증장애인 및 질환자와 사실상 대상이 겹친다.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결정요인은 개인의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신체능력 및 인지능력의 측정이 실제 자활역량참여 가능 수준과는 상당한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에 있다(이상아 외, 2023). 근로능력평가는 주로 개인의 능력에 초점을 두는 반면, 자활역량표는 개인의 건강상태 및 활동능력 이외에도, 직업 및 구직경험, 구직욕구, 가구여건과 같은 이들의 상황적 맥락도 함께 살핀다. 이 과정에서 만성적 질환 혹은 심리적 문제로 인해 구직경험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구직욕구가 저하되었을 수 있고, 가구여건에 의해 체력이나 만성적 건강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복합적인 취업장벽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조건부수급자 유예자’에서 일부 등장하는 가정적, 환경적 여건만 놓고 고려했을 때 상충될 수 있는 대상자들이 존재한다. 일례로 영케어러를 비롯한 돌봄제공자의 경우 생계문제로 인해 개인의 근로의욕은 높다 할지라도, 실제로 근로를 수행할 수 없는 환경이나 방해 요인에 노출되어 있기에, 표면적인 근로의욕이 저하될 수 있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상자이기도 하다.

이처럼, 생계급여를 통한 생활유지를 뛰어넘어 탈수급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시장에 뛰어들 수 없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머물러야 하는 대상들, 반대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지라도 약간의 근로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 또한, 자활급여 및 자활사업 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해 고려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자활급여 규정의 모호성

제일 모호한 조항 중 하나는 법령에서 규정하는 자활급여 정의 및 지정에 대한 문제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급여종류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총 7종이다. 이중 해산·장제급여는 생계, 주거, 의료급여에 귀속되는 형태이지만, 자활급여는 엄격하게는 생계급여에, 관대하게는 주거, 의료, 교육급여 및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차상위자에게도 해당할 수 있는 급여다.

하지만 법령과 시행령의 기준 설정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발견된다. 법령 제2조(정의)에서는 ‘수급권자’와 ‘수급자’를 구분한다. 즉, ‘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며, ‘수급권자’는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다. 하지만 자활급여와 차상위자의 그 의미가 모호하게 기술된 탓에, 자활급여의 성격이 온전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법령에 따른 엄밀한 정의에 따르면, 차상위자는 자활급여의 의무적 수급권자는 아니지만, 희망 수급권자이다. 차상위자의 기준은 교육급여 기준(중위 50% 이하) 대상자이고, 더 엄밀하게는 0%~50% 구간에 있는 대상자를 말하는 것이다. 따져보면, 차상위대상자는 잠재적인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이자, 동시의 자활급여의 수급권자도 될 수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자활급여의 수급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만이 자활급여의 수급 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내용이 된다. 즉, 원칙적으로는 자활사업 특례자를 제외한 중위소득 50% 차상위 이상 대상자는 법적 측면만 놓고 보았을 때는, 공식적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대상이 된다.

예시)

[법령] 제15조(자활급여) ①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급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③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할 수 있다

[시행령] 제5조의5(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자활급여로 한다.

문제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구직자취업촉진및생활안정지원에관한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 하에 진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을 고려해 본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중위소득 50% 이상에서 60% 이하의 빈곤층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상의 빈곤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 편입된다 해도, 기본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지원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들의 다양한 고용장벽이나 복지적 차원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로 기능하긴 어렵다. 그렇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실제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고용 및 복지적 지원을 가져다주지는 못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노법래·이채정, 2023). 고용지원 차원에서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자활사업이라는 두 트랙의 경로가, 상호 보완적 차원에서 이뤄진다고보다는 오히려 서비스 간의 분절성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형태로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윤성원, 2024). 이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존의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법』에 귀속되는 형태로 지속되는 것인지를 질문하게 하는 근본적 원인이 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긴급상황이나 근로빈곤층이 처할 수 있는 복합적이면서도 다차원적인 고용장벽을 고려했을 때, 일정한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지만 제도가 작동 가능한 현시점의 조항은 여러모로 한계를 낳을 수 있는 조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활사업의 대상자 확대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사업 검토

한편, 자활사업 안에서는 여러 특화사업이나 협약사업을 추진하여 조건부 수급자 이외 일반수급자와 차상위자를 유입하고자 시도한 노력이 있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이라는 조항에 근거하여 사업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어왔다. 본 절에서는 근로빈곤층 내에서 위기 대상 및 복합위험을 가진 저소득층을 자활사업 내에서 포괄하고자 실시했거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 일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근로역량은 없으나, 근로의지가 있는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볼 것이다.

1) 희망리본 프로젝트 (성과중심자활사업)¹⁾

희망리본(Re-born) 프로젝트는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그중에서도 취·창업을 통한 장기간 근로 경험이 없거나 근로의욕이 떨어져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특화사업이었다. 희망리본사업은 기본적으로 1:1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지향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취업능력 향상을 도모해 경제적 자립을 이끌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 기본적으로는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및 장애요인 제거, 보건복지서비스 욕구 충족, 직업훈련 및 일자리 연계를 주 사업특징으로 삼았고, 그 밖에도 사업실적에 기반한 예산지원 방식을 채택해 자활성과에 따른 센터관리방식을 채택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다.

이 사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조건부수급자 대신 취업취약계층으로 대상자를 조정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이다. 2009년 시범사업 당시에는 차상위계층과 조건부수급자가 주 대상으로 설정했지만, 2012년에는 조건부수급자 대신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나 노숙자와 같은 근로여건 제고가 필요한 대상자를 우선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자활역량평가 70점 이상이어야 취업성공패키지에 연계될 수 있었기에,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진입 기준인 80점에 비하면 다소 자활역량이 낮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희망리본사업은 2015년 이후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으로 상호 통·폐합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찬-반 논의가 있었다. 기본적으로 통합을 추진했던 입장에서의 논리는 희망리본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과 사실상 그 성격이 다를 바 없는 중복·유사 사업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즉, 두 사업의 성격이 비슷해 인력 및 관리 비용 낭비가 우려되고, 일반 국민 또한 두 사업 차이를 인식하기 어렵기에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이었다(유길상, 2012). 하지만 2013년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수급자들의 탈수급률을 비교했을 때 취업성공패키지보다는 희망리본사업의 효과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었고 적어도 수급자에 한해서만큼은 복지부 협의하에 취업전달체계가 복지중심으로 진행되기를 국회 측에서도 요청한 바 있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013). 또한, 현실적으로 정책목표집단을 조정해 취업성공패키지는 차상위 이상,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수급자 한정으로 대상자를 명확

1) 본 내용은 현재 종료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박노옥 외(2012) 희망리본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본 사업 추진방안과 그 밖의 복지부의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함.

히 구분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었다(류기락, 2012). 그럼에도 두 사업은 끊임없이 조정·통합의 논의를 거쳐 2015년에 취업성공패키지(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흡수되기에 이른다.

다만 일각에서의 지적처럼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고용지원서비스는 오로지 취업률을 통해서만 그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반면, 자활은 취업보다는 대상자의 자립에 더 역점을 두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메디컬투데이, 2015.01.27.). 그런 면에서 희망리본프로젝트는 적어도, 수급자를 포함한 다양한 근로장벽을 갖는 취업취약계층을 겨냥한 것이 자활사업임을 보여준 특화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²⁾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은 2018년도에 도입된 사업으로, 근로 및 탈빈곤의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맞춤형 자립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추진배경은 청년정책이 활성화되던 2017~2018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대책(‘17)에 따른 청년 중심의 창업활성화, 자활기업활성화대책(‘18)에 따른 청년 취·창업 강화에 따른 정부방침이 바탕이 되었다. 이때 사업단이 주로 관심있게 된 청년집단은, 빈가정에서 사회경험과 경제적 지원 모두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립지원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었다. 이에 기본적으로는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되, 구체적으로는 ① 전문적 직무교육을 통한 근로능력 확보; ② 참여자 1인 1자격증 획득; ③ 취·창업을 통한 경제능력 확보; ④ 참여자들의 자존감 향상 및 정서적 문제 완화; ⑤ 지역공동체 내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구체적 목표로 삼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두 단계를 거쳐 취업지원을 받게 된다. 청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교육·훈련을 주로 실시하는 [임파워먼트 I] 단계, 유형별 근로를 실제로 참여해 자립계획을 이행하고 사후자립계획까지 수립해 보는 [임파워먼트 II] 단계를 거친다. 이때 [임파워먼트 I]은 6개월, [임파워먼트 II]는 I 단계를 포함해 3년 이내로 참여할 수 있다. [임파워먼트 II] 단계에서는 청년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으로 구분이 되고, 이때 취업은 일반기업, 자활기업, 기타 취업지, 창업은 개인창업, 기타창업, 자활기업창업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실

2) 본 내용은 2023년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 업무매뉴얼과 이상아 외(2021)의 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 정책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작성함

제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성과를 조사했을 때, 참여 청년 중 취·창업한 비중은 2019년 5.00%, 2020년 8.10%, 2021년 7.06%로 나타나, 단순 취업 성과 자체가 큰 편이라고 보긴 어려웠다. 그러나 사업단 자활사업의 참여한 취업 청년 중 일반기업으로 취업하는 비중이 과반수(2019년 59.3%, 2020년 54.1%, 2021년 68.9%)로 나타나 이들의 욕구가 상당수는 일반노동시장 진입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활사업의 본래 목적인 탈빈곤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하였듯,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차별화되는 지점을 찾기 어렵다면 저소득청년의 청년자립도전사업단으로의 유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의 운영목적과 방침, 그리고 청년들의 희망하는 직종이나 사업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향후 사업을 운영하는 중대한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

3) 경계선청년 일역량강화훈련 및 일경험시범사업³⁾

경계선청년 일역량강화훈련 및 일경험 시범사업은 구직을 희망하는 경계선 지능청년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정 및 인턴십을 제공하기 위한 한시적 시범사업이다. 경계선 지능 청년의 경우는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데다가, 교육과정에서 충분한 진로 계획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에 학교 졸업 이후 취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었다(주은미, 최승숙, 2021; 임성은, 2023). 따라서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고용복지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아동권리보장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산립복지진흥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폴리텍 총 8개 기관이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청년재단, 서울특별시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다.

사업은 진로컨설팅 2회, 소양직무교육 12회, 현장형 직무교육 3~5주를 진행하는 구조다. 매번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횟수나 주차는 조금씩 조정되었다. 1

3) 해당 내용은 2024년에 실시한 협약기관 간의 한시-시범사업이고 구체적 지침이나 방침이 명확하지 않기에, 기본적으로는 청년재단(<https://kyf.or.kr/>)의 사업공고 및 각종 인터넷 상의 부가자료(사업홍보 팸플릿—자활센터 내 모집공고 등)을 참고하였다.

단계는 주로 종합심리검사지 또는 웨슬러검사결과지를 바탕으로 각종 진로문제에 대한 진단 및 직무적합성을 판단하고 컨설팅받는 과정이다. 2단계는 실제로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단계로, 본인이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구체적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장형 직무교육은 일 경험 차원에서 수행해 보는 일종의 인턴과정으로, 이들의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직무지도원이 함께 배치되어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도록 추진했다. 일경험처는 협약을 맺은 기관들의 풀을 활용해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으로 배치가 되었다.

사업참여자가 모든 단계를 필수적으로 참여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1단계나, 2단계까지 마치고 종료를 할 수도 있고, 1, 2단계를 거쳐 3단계를 신청해 볼 수도 있는 과정이었다. 이때, 만약 자활참여자(청년자립도전자활사업단)가 이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1, 2단계는 교육시간(자활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훈련참여수당(월 25만 원)도 수령할 수 있지만, 이 참여수당으로 인해 수급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가 제시되었다. 또한, 3단계(일경험)의 경우는 자활근로참여 조건을 이행하는 것과 상충할 수 있어 자활사업 참여를 종결하고 시범사업 3단계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경계선청년이 갖고 있는 취약성의 초점을 두고 진행된 사업이자, 여러 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해 운영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자활대상자에 초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진 않았다. 한편, 해당 사업이 한시적 사업이기 때문에 경계선 청년의 장기적 자립을 계획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가긴 어려웠지만, 향후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장기 추진이 필요할지를 검토한다는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V-5〉 자활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한 특화-시범사업 검토

구분	희망리본프로젝트 (시범특화사업, 2009~2014)	청년자립도전사업단 (특화사업, 2018~현재)	경계선청년 일역량강화훈련 및 일경험시범사업 (외부기관 협약 시범사업, 2024)
사업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사회적경제 활성화대책('17.10) 자활기업활성화대책('18.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24.03.27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외 총 7개 공공기관이 시범사업 업무협약
사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개인별 1:1맞춤형 사례관리를 진행해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 및 탈빈곤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희망직종에 대한 교육지원 및 근로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통해 빈곤예방·자립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청년의 일상생활, 사회관계, 노동시장 진입기회를 지원·제공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간 근로경험이 없어 근로능력이 떨어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09년~2011: 차상위계층, 조건부수급자 (자활역량평가 70점 미만, 저취업역량) 2012년: 조건부수급 제외, 일반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노숙 등 근로여건 제고가 필요한 대상자 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39세 자활근로 참여기간 2년 이내 기존 자활근로참여자(중위소득 50%) 보호종료아동 특화사업대상자: 나이조건 동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퇴소자 중 자활근로참여자(중위소득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4세 이하 경계선 지능 청년 소득기준 없음
참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3년, 종료 후 계속참여 원할 시 타 자활근로 사업단 전환 (총 참여기간 60개월 이내), 재참여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대 4개월 (각 단계별 전체 참여시)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 (복지-고용통합 사례관리) 기초상담 → ISP 수립 → I SP이행 → 사후관리 및 구직활동 점검 기본급 1인당 150만원, 자활성과급 50만원, 취창업요건 유지시 성과급 130만원, 탈수급성과급 100만원 총 430만원 지원 탈수급 시 최대 2년간 이행급여 특례 인정 희망키움통장 추가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파워먼트 I: 취창업을 위한 내외부 교육, 자립육구 및 계획수립 임파워먼트II: 취업지원형(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등 자활근로), 창업지원형(자활기업 창업 준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적용 추가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 진로컨설팅 2회 2단계: 직업교육 12~16회 3단계: 일경험 (인턴십 3~5주) * 자활사업단에 소속된 참여자가 중복 참여 했을 시 일정 제약 있음

3. 자활사업 참여자 관련 해외 법적 근거 검토

1) 영국의 근로연계복지 체제 내 사업대상자 검토

잘 알려져 있듯, 영국은 별도의 자활사업이 없고 근로연계복지사업 내에서 저소득층의 취업 및 자립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한국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사회보장제도에 저소득층의 취·창업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회보장제도는 복지개혁법안(『Welfare Reform Bill 2012』) 아래 통합적으로 운영이 된다.

이 중 우리가 근로연계복지사업 대상자로 알고 있는 대상자는 고용수당(Working-age Benefit)의 대상으로 크게는 소득기반 구직자 수당(JSA: Jobseeker Allowance)과 소득관련 고용보조수당(ESA: 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수당 대상자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JSA가 필수 근로연계복지 대상자, ESA가 장애나 신체 문제로 인해 당장 근로가 쉽지 않아 희망에 의해 근로연계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이다. 그리고 이 대상자들은 통합수당(Universal Credit)이라는 넓은 범주 안에 다시 재정의 된다. 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 주택지원, 소득보조금, 소득기반 구직사수당, 소득관련고용 보조수당에 묶이는 구조다. 과거에 비해 통합수당으로 개편되면서 가장 이슈 된 사안은 수당을 받기 위한 일정한 의무(claimant commitment)에 관한 조항이 엄격해졌다는 점이다. 한국의 근로의무와 유사하게 구직활동 및 참여가 의무화되었다.

JSA와 ESA 대상자들이 지역 내 고용사무소(Jobcentre Plus)를 통해 근로연계가 되었던 워크프로그램(WP: Work Programme)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운영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 워크앤헬스프로그램(WHP: Work and Health Programme)으로 그 형태가 변형되어 운영되는 상황이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타겟은 장기실업에 노출될 수 있는 복합적인 사회적 위험을 갖고 있는 대상을 지목하며, 구체적으로는 경미한 장애가 있는 자, 가정폭력 피해자, 약물알콜의존자, 난민, 노숙자, 범죄자, 돌봄제공자(영케어러 포함)가 대표적이다(U.K. Parliament, 2022). 참고로 경계선 지능인 대상자들은 장애생활수당을 대체하는 개인독립지출(PIP: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급여와 ESA(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의 경계대상자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도 희망 구직지원자로 WHP에 참여는 가능하다. WHP의 실제 사례관리 대상자는 고용사무소에서 상담 및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교육, 훈련, 고용을 주관

하는 기관은 각 취약계층 대상자들을 오랜 시간 관리해 왔던 민간기관 및 사회적 기업이 주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 프로그램의 개편을 통해, 해당 제도의 중점 타겟이 되는 대상자는 경미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 근로가 일부 가능한 장애인인 것으로 보인다(DWP, 2023). 이는 WHP를 고안할 때 발간했던 녹색(Green Paper)의 문제의식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영국 사회 내에서 근로자 중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들이 노동을 통한 사회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대적으로 배제됨으로써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삶’을 박탈당함과 동시에,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를 내비친 것이었다(DWP·DH, 2016).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이들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시켰을 때, 단순히 많은 대상자를 노동시장에 투입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넘어 실제 대상자의 정신건강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가지고 논의되어 촉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 제도 안에서 사회적 위험을 가진 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관적인 입장이 많은 편이다. 대체로 고용사무소의 표준화된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방침을 바꾸거나 변경하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 고용지원시스템 전달체계 상 다양한 장애나 고용장벽을 마주하는 대상들을 토대로 일대일 지원을 감행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수당대상자들이 고용 욕구나 능력에 맞지 않는 일로 배치되어 더 큰 좌절감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비판이 있기도 하다(Scholz & Ingold, 2021; Stewart, 2023; Grant, 2024).

그럼에도 본 연구와 관련해 함의를 얻을 수 있는 지점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지원(Income Support) 제도와 고용지원제도 및 서비스가 연계된 수당 자체는 별도의 제도 체계 아래에 운영된다는 점, 특히 영국의 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에 근간을 두고 있는 수당체계이기 때문에, 대상자의 소득요건보다는 국가보험 기여도와 근로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취약요인을 중심으로 판단해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그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류만희, 노대명, 김송이, 2012).

2) 독일의 고용복지정책의 변화와 사업대상자 검토

독일은 본래 관대한 사회부조와 실업보험을 통해 저소득층 및 실업자를 장기적으로 포괄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진행된 하르츠 개

혁(Hartz I-IV) 이후 독일의 고용복지정책은 보다 복지정책에서 활성화정책(activation)에 가까운 방향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보장 및 실업지원 관련한 각종 제도 또한, 실업 방지 및 실업자의 경제적 안정 보장보다는 취약계층의 빈곤 완화에 중점을 두어,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보험 및 수당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게 된다(Gundert & Hohendanner, 2015).

먼저 고용복지사업의 대상자 논의를 하기 전, 어떠한 내용으로 근로복지연계의 성격을 갖춘 제도로 탈바꿈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2002년 하르츠 개혁에서 보여지는 핵심 특징은 ‘근로능력을 가진 노동자의 책임과 의무 부과’(이상호, 2015). 물론 적극적 노동시장의 성격을 가진 하르츠 개혁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취약계층이 노동 및 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사회참여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맥락 아래에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SGB)』 2권에 제1장 제1조 2항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을 “근로능력이 있는 급여 수급권자가 유급 고용의 기회를 얻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다른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시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한국과 가장 큰 법체계의 차이는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를 제공의 근간을 기록한 사회법전 제12권(사회부조), 제2권(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 제3권(고용촉진)으로 분리시켜 그 성격을 명시했다는 점이다(박귀천, 2018). 하르츠 개혁 이전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구직자에 대한 생계보장을 ‘실업부조’와 ‘사회부조’라는 투트랙 방식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개혁 이후 사회부조 및 실업부조 시스템을 전면 개정·통합해, 실업급여 II(사회법전 제3권 규정)로 단일화하고 법적 근거를 별도화시켰다. 이를 통해 독일의 근로 가능한 실업자 집단 전체는 전부 실업부조 및 고용촉진을 이끄는 방향으로 제도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근로가능 실업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역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과업을 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법령 개정을 통해 실업급여 II 시스템에서 포괄하는 대상자는 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근로 가능’한 자(461만 명) 중, 실업보험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구직자(207만 명) 및 장기실업자(91만 명); ② 저임금 근로자 (136만 명) 포함; ③ 근로능력이 없는 자: 실업급여 II 수급가구에 속하는 15세 미만 아동(174만 명)이다(Konle-Seidl, 2012).

저임금 근로자 중 근로취약계층, 즉 한국의 자활사업대상자가 갈 수 있을만한 직종은 일유로잡(1-Euro Job)과 소득 400유로 이하의 미니잡(Mini-Jobs)과 800유로 이하의 미디잡(Midi-Jobs)이 있다(Jacobi & Kluge, 2007). 이 세 가지 일자리의 주요한 특징은 공공일자리나 경쟁성 없는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창출해 제공하는 것이었

는데, 이는 수급대상자로 하여금 부조 외 부분소득을 보전하려는 목적과 동시에 사회 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 성격을 추구하기 위해 제시된 일들이었다. 그러나 일유로잡이나 미니잡의 경우 지속적이면서 정규성격을 가진 고용으로는 이어지지 못해, 오히려 근로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저임금노동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윤자영, 2012; Konle-Seidl, 2012).

그럼에도 근로가능한 실업 대상자의 범주를 넓혀, 그 안에서 폭넓게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 별도의 법령을 두어 고용촉진정책의 일관성을 높였다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소결

본 절에서는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편 중 하나로, 현 법령 및 각종 지침에서 정의하는 자활사업의 내용과 한계, 해외의 근로연계복지 흐름 안에서 전개되는 법령 기준을 통한 합의, 기존 특화사업 운영 등의 내용을 통해 향후 자활참여 대상자 확대를 위한 주요 합의를 다음과 같이 도출한다.

먼저 현행 『기초생활보장법』 하에 작동되고 있는 자활참여 대상자와 관련하여 크게 네 가지 한계를 언급하였다. 첫째, 조건부 수급자 우선원칙에 따른 자활참여 대상자 확대의 한계다. 현행법상 자활사업 대상자로 조건부 수급자를 우선 지정하는 조항(『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은 자활대상자 확대를 제한한다. 이는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사업이 필수조건으로 부과되는 대상이기에 벌어지는 불가피한 방침이다. 그러나 조건부 수급자가 우선 배정되는 원리와 지역자활센터 간의 상황이 맞물렸을 때, 적극적으로 일반수급자와 차상위자를 유입하는 방식이 어려울 수 있다. 물론 2019년에는 복지부 지침에 근거해, 차상위자가 후 순위로 밀렸던 우선순위 지침의 폐지라는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시행령상 이 조항의 효력이 남아 근로의지 및 근로역량이 다소 부족하지만 자활근로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이들의 유입이 적극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둘째, 자활대상자의 법령상 문제다. 기본적으로 자활사업 및 자활대상자의 규정은 공공부조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 아래 묶여있는 구조고, 이로 인해 조건부 수급자에게 집중되는 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법』 내에서는 차상위층은 현실적으로 수급권자, 즉 수급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 된다. 이는 차상위자가 곧 자활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명백한 자활급여의

수급자로 탈바꿈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조항이기도 하다. 차상위는 빈곤선의 경계에 놓인 집단임에도, 여전히 고용지원서비스인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자활사업 간 사각지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상이다. 무엇보다 자활급여 특례조항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들이 생계급여는 탈피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소득수준이 차상위에서 조금 나은 정도로 밖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한 번도 각종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체계에 들어오지 않은 차상위자가 바로 특례대상자가 되긴 어렵기에, 이들이 자활사업보다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제외자와 조건부 수급자 유예자 가운데서 자활참여자와 상충할 수 있는 지점이 발견된다. 법령에서 고지하는 근로능력평가는 개인의 신체 및 인지능력에 초점을 두는 반면, 현장에서 쓰는 자활역량척도는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구직경험, 상황적 여건과 같은 근로방해요인들을 파악한다. 특히, 법령에서 조건부 수급 유예자로 지정하고 있는 돌봄제공자의 경우는 근로의욕이 높아도 환경적 제약으로 근로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정신과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경우는 신체 및 인지능력에는 이상이 없을 수 있어도 현실적으로 근로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워 도리어 자활근로를 유예하거나 근로유지형으로 점진적 자활을 피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법령에서의 소득 및 근로평가기준과 현장에서 보여지는 대상자들의 근로역량수준의 편차가 있어 이를 새롭게 구분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정의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넷째, 자활급여 규정의 모호성이다. 법령상 자활사업의 우선권은 조건부 수급자에게 있지만, 실제로 자활급여의 수급권자는 현실적으로 조건부,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모두가 포함되며 이러한 급여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정작 50%(자활사업) ~ 60%(국민취업제도) 구간 근로빈곤층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문제 제기하였다. 즉, 『기초생활보장법』 하에서 자활참여대상자를 차상위 기준인 중위소득 50%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두 제도의 분절성 사이에서 사각지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위험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희망리본프로젝트, 청년자립도전사업단, 협약사업인 경계선 일역량강화훈련 및 일경험시범사업을 살펴보면서는, 점진적으로 자활사업의 방향이 수급자의 근로촉진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에 초점을 두고 현장과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별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고용지원뿐만 아니라 복지지원을 행사하는 서비스라는 것이 보다 온전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한 욕구 파악과 그에 걸맞은 취·창업 서비스 및 복지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

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선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국의 실정을 고려하였을 때, 영국과 독일의 근로연계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법령체계가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각국의 사정과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체계가 다르고, 두 국가의 법령 및 근로연계복지 정책 모두 나름의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고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영국은 하나의 제도 안에서 근로기반 수당체계와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지원체계를 포괄적 수당의 형태로 묶어 해당하는 수당과 세제 혜택이 동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대상자의 소득요건보다는 근로를 하기 어려운 상황, 능력, 취약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를 둘 수 있었다. 한편, 독일은 고용 촉진을 위한 법 자체를 사회부조법과 완전히 구분하고, 수당 역시 기존의 사회부조와 실업부조를 정리한 형태의 일원화된 실업부조로 재편함으로써 보다 목적에 맞는 고용촉진정책으로의 일관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보았다.

위의 법적, 행정적, 사업적 내용에 초점을 두었기에 상세히 다루지 못했지만, 첨언이 필요한 대상 중 하나는 고립은둔청년이다. 법령이 고지한 근로역량평가 과정 즉, 의학적 기능과 활동능력평가에서 배제될 수 있는 대표적 대상자가 하나가 고립은둔청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고립은둔청년은 근로역량평가는 높으나 자활역량평가는 낮게 나올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다. 근로능력이나 의지가 현격히 저하된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저임금노동과 실업을 반복하다가 결국 노동시장 재진입을 기피하게 되고, 친밀한 관계와의 고립이 맞물리게 되면서, 실업 및 고립의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는 청년집단이다(노가빈 외, 2021). 고립은둔청년들은 사회적 고립의 상태가 만성화·장기화될 때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초래되는 만큼(조미형·고아라, 2022; 김성아, 2023), 신체·정신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현 기준과는 부합하지 않고, 장기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이다. 하지만 이들을 자활사업으로 발굴·유인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립은둔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자활사업체계 안에서 연구해 보고 조명해 보는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한 개선(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일부개정(안)
2. 취약계층(주민)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안
3.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사업 계획(안)

V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한 《 개선(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일부개정 필요

본 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득 기준 완화를 통해 생계급여 기반의 자활사업 참여 대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적 관점에서 자활사업이 필요로 한 경제성 지능인, 자립준비 청년 등 자활사업 참여 예상 집단의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자활급여에서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를 추가하여 참여자 맞춤형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안한다.

1) 자활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확대

자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대상자에 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상자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초과 100분의 120이하로 자활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2) 자활사례관리 법적 명시

신규 유입되는 대상자들의 욕구에 맞춰 맞춤형 자활사업을 위해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가 공식화되기 위해 법적으로 명시하고, 자활 현장에서 신규 유입되는 대상자에 대한 자활에 필요한 상담과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

2. 취약계층(주민)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안 마련 필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규정한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틀에 한정되어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어 지역사회 내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들과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는 효과가 부족하므로, 자활급여제도에 관한 사항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자활급여제도를 취약계층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도록 개선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중심의 제도로 정착시켜 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하고 자활사업의 두 가지 제도적 목표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자활급여 수급권자의 범위 확대(안 제4조)

수급권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130% 사이인 자로서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 주민인 자로서 빈곤을 예방하고 시일 내에 자활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계층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등을 자활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2) 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자활급여로 인정(안 제10조)

자활급여는 상담·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역량이 약화되고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설계하였다. 수급자의 자활 능력, 자활 욕구 및 가구 여건 등 수급자 특성에 따라 다양한 자활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자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지역자활 맞춤형 사업 가능한 기반 마련(안 제32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자활사업을 자발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자활사업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위하여 자활사업의 내용, 보장비용 부담 및 추가투자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지역자활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자활사업을 우선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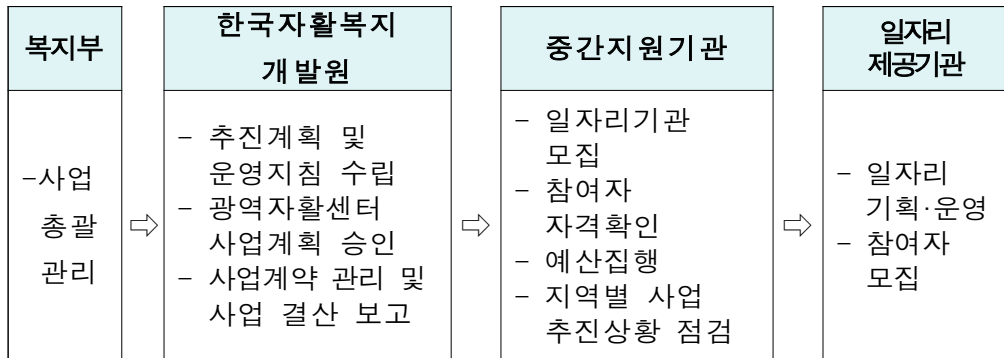
3.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사업 계획(안)

〈표 V-1〉 자활복지 일자리 확대 방안 : 이동 사다리 프로젝트

자활복지 일자리 확대 방안 : 이동 사다리 프로젝트															
■ 사업 개요															
<p>□ (사업목적) 자립 의지·근로역량이 있으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 이상 저소득층의 근로경험 축적과 사회통합을 위해 한시적 일자리 제공</p> <p>□ (참여대상) 자립준비청년, 니트청년 등 취업 취약 청년, 경계성 지능인, 지역사회 경증 정신건강 유병자 등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중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p> <p style="text-align: center;"><참여 대상 범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기준중위소득</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참여 대상</td> <td rowspan="4"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노인일자리</td> </tr> <tr> <td>75%</td> <td colspan="2"></td> </tr> <tr> <td>50%</td> <td style="text-align: center;">참여 대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자활근로</td> </tr> <tr> <td>40%</td> <td style="text-align: center;">참여 대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자활근로</td> </tr> </table>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만 65세 이상</p>			기준중위소득	참여 대상		노인일자리	75%			50%	참여 대상	자활근로	40%	참여 대상	자활근로
기준중위소득	참여 대상		노인일자리												
75%															
50%	참여 대상	자활근로													
40%	참여 대상	자활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근로 및 타 재정지원일자리 중복 참여자 제외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 확인으로 소득·재산조사 대체 (피부양자는 세대주 건보료 납입액 기준) * 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까지 최저보험료를 부과하여 75% 이하 소득구간을 선별해낼 수 없으므로 기준중위소득 120% 기준 준용 															

- **(지원내용)** 일자리 참여에 따른 급여 월 180만원(4대보험 지원*, 주 40시간 전일제 근무) 및 근속장려금 20만원 지급
 - * 4대보험 기관부담분(약 17억)을 사업비로 지원
- **(소요예산) 287억원**
 - **(일자리 지원: 276억원)** 인건비(186억), 근속장려금(10억), 사업비(80억)
 - **(센터운영지원: 11억원)** 인건비(7.7억), 운영비(3.3억)
- **(집행체계)** 보건복지부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예산 교부(민간경상보조 100%)
 - **(중간지원기관: 광역자활센터 등)** 지역별 일자리 제공기관 모집, 참여자 자격확인, 기관별 인건비·사업비 지원, 모니터링 수행
 - **(일자리 제공기관: 지역자활사업단, 지역 자활기업)** 참여자 직접 모집, 일자리 운영, 급여 지급

<사업 수행 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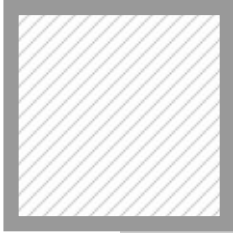


참고문헌 《

- 구인회, 문혜진, 이승호, 함선유, 김진. (2022). 복지-고용 분야 통합적 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 방향 연구. 감사연구원·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성아. (2023). 고립. 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319, 6-20.
-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 노대명. (2010). 자활지원체계 개편방향에 대한 제안. 월간 복지동향, 2010(12), 22-26.
- 노대명, 박찬임, 강병구, 구인회, 이문국, 이병희, 이인재, 이찬진, 홍경준, 황덕순, 송민아, 최승아. (2004).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 노법래, 이채정.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청년의 취업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23(2), 109-126.
- 류만희, 노대명, 김송이. (2012). 국가별 근로연계복지제도 비교 연구. 서울: 국가예산정책처.
- 메디컬투데이.(2015.01.27.). 복지부 '희망리본사업' 고용노동부로 통합... 잊지말아야 할 문제점들.
- 박귀천. (2018). 독일의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제도. 월간 복지동향, 2010(18), 13-19.
- 박노옥, 노대명, 류만희, 서광국, 임소영, 한경진. (2012). 희망리본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본 사업 추진방안.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04.13.). '희망리본(Re-born) 프로젝트'로 다시 태어납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7.11.13.).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자활급여법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2019).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침 개정.

- 보건복지부. (2024). 2024년 자활사업 안내.
- 서광국. (2021). 근로능력자 자활 및 자활사업의 현황과 한계. 보건복지포럼, 2021(2), 55-68.
- 유길상. (2012). 고용서비스 발전방안. 『고용문제진단과 정책과제』. 고용노동부-KDI 세미나 발표문.
- 윤자영. (2012). 독일 복지국가와 저임금노동. 국제노동브리프, 2012(1). 1-4.
- 윤지영, 이소영. (2022). 중장년 1인가구의 음주와 고립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생명연구, 63, 97-126.
- 이은정. (2014).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서적 자활과 사회적 자활의 영향요인 연구: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를 중심으로.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2), 539-548.
- 이상아, 최상미, 김소형, 고은새, 설소희. (2021). 청년자립도전사업단정책효과성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이상호. (2015). 독일 하르츠 개혁에 관한 평가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새로운 노동운동의 지평을 여는 노동저널, 2015(3), 18-37.
- 이채정. (2012). 자활사업평가.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임성은. (2023). 경계선지능 청년의 실태·욕구 분석. GRI 연구논총, 25(4), 215-239.
- 정해식, 고혜진, 김미곤, 노대명, 정은희, 하은솔. (2020). 제2차 기초생활보장 자활급여 기본계획(2021~2023) 수립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미형, 고아라. (2022). 사회적 고립 청년은 누구인가?-고립청년 지원사업 참여 청년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4(4), 127-152.
- 주은미, 최승숙. (2021). 경계선 지적 기능 청년의 진로설계 및 직업준비 경험에 대한 당사자와 관련인의 인식. 특수교육학연구, 56(1), 1-30.
- 최상미, 고가영. (2019). 자활사업 참여 저소득 구직자의 고용장벽 탐색과 한국형 고용장벽 척도 개발. 사회복지연구, 50(2), 29-52.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DWP, & DH. (2006). Improving Lives The Work, Health and Disability Green Paper.

-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5a80a798ed915d74e33fba81/work-and-health-green-paper-print-version.pdf>
- DWP. (2023). Work and Health Programme Evaluation.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a6759b867cd800135ae927/work-and-health-programme-evaluation-synthesis-report.pdf>
- Grant, A. (2024). Scroungers, shirkers and the sick: disability and welfare in the 21st century. In *Diversity and Welfare Provision* (pp. 175-195). Policy Press.
- Gundert, S., & Hohendanner, C. (2015).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nd social integration in Germany: Do 'One-Euro-Jobs' improve individuals' sense of social integratio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1(6), 780-797.
- Jacobi, L., & Kluge, J. (2007). Before and after the Hartz reforms: The performance of active labour market policy in Germany. *Zeitschrift für ArbeitsmarktForschung-Journal for Labour Market Research*, 40(1), 45-64.
- Konle-Seidl, F. (2012). 독일의 실업부조. *국제노동브리프*, 2012(9), 19-33.
- Olson, K., & Pavetti, L. (1996). *Personal and family challenges to successful transition from welfare to work*.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 Scholz, F., & Ingold, J. (2021). Activating the 'ideal jobseeker': Experiences of individuals with mental health conditions on the UK Work Programme. *Human Relations*, 74(10), 1604-1627.
- Stewart, M. (2023). The public health crisis created by UK social policy reforms. *Justice, Power and Resistance*, 6(2), 217-228.
- Taylor, M. J., & Barusch, A. S. (2004). Personal, family, and multiple barriers of long-term welfare recipients. *Social Work*, 49(2), 175-183.
- U.K. Parliament. (2022.) *Work and Health Programme statistics to August 2022*.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work-and-health-programme-e-statistics-to-august-2022/work-and-health-programme-statistics-to-august-2022#future-plans-and-your-feedback>



부 록

1.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방안 연구
FGI 면담지
2.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방안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부록-1]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방안 연구 FGI 면담지

ID		-		
----	--	---	--	--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방안 연구 집 단 심 층 면 접

안녕하십니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활사업 참여 대상으로서 청장년층의 수요를 파악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집단면접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자활사업 참여 확대 대상으로 고려되는 청장년집단분들 중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귀하의 답변은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통계법에 따라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되지 않습니다. 면접조사에 참여하는 데는 약 90분 내외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귀하는 본 조사에 참여하는 중간이라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참여 의사 철회 시, 관련 자료 및 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보관되거나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연구책임: 이 상 아 선임연구원)

응답자 일반사항

1. 개인적 특성

1)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2) 연령(생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년
3)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학 졸업 ③ 대학(4년제) 졸업 ④ 대학원 졸업 이상
4) 혼인여부	① 미혼 ② 기혼 ③ 사별 ④ 이혼 ⑤ 별거 ⑥ 기타
5) 자녀유무	① 있음 ② 없음(명)
6) 거주상황	① 단독 ② 부모와 거주 ③ 배우자와 거주 ④ 기타
7) 경제활동상태	① 비경제활동(취업준비, 학업, 간병 등) ② 경제활동(→8번 문항)
8) 근로형태	① 임금근로자(정규직) ② 임금근로자(비정규직) ③ 자영업 ④ 특수고용/프리랜서 ⑤ 자활근로/기업 ⑥ 기타
9) 장애여부	① 장애(장애유형:) ② 비장애 ③ 미등록장애
10) 거주지(시도)	① 서울 ② 경기 ③ 인천 ④ 기타()

2. 자활사업 관련 특성

1) 자활사업 참여여부	① 참여(→2번 문항) ② 미참여(→4번 문항)
2) 자활사업 참여자격	① 조건부수급자 ② 자활급여특례자 ③ 일반수급자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⑤ 차상위자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⑦ 기타(조건제시유예 등)
3) 자활사업 참여시기	참여기관명 참여기간(년/월~년/월)
4) 자활사업만족 (참여경험 있을 시만)	<input type="text"/> / (5점 만점)
5) 근로능력정도	① 근로가능 ② 단순근로가능 ③ 단순근로미약 ④ 근로불가능
6) 자립의지	① 매우 높다 ② 높다 ③ 낮다 ④ 매우 낮다

질문지

[구직·실업경험 및 일경험]

1. 구직과정에서의 경험을 여쭙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결질문)

- 1-1) 구직 당시의 삶의 상황(예, 가족상황, 경제상황 등)은 어떠하셨습니까?
- 1-2) 구직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 1-3) 구직과정에서 일자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기준(예, 소득, 근무시간, 복리후생 등)은 무엇입니까?
- 1-4) 구직활동 시 도움이 되었거나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예, 워크넷 채용정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 1-5) 구직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실업과 관련한 경험을 여쭙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결질문)

- 2-1) 실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2-2) 일자리를 잃은 후, 곧바로 새로운 일을 구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셨습니까?
- 2-3) 만약 일자리를 구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자리를 잃고 난 후 또 다른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3. 직전 근무지에서의 일 경험에 대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결질문)

- 3-1) 당시 취직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 3-2) 직전 근무지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은 어떠하셨습니다?
- 3-3) 근무 시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다?
- 3-4) 근무상황에서 만족스러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다?

[자활사업 인식과 참여경험]

4.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식과 참여경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결질문)

- 4-1) 자활사업에 어떻게 참여하시게 되셨습니까?
- 4-2) 자활사업에 어떠한 생각이나 이미지,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까?
- 4-3) 자활사업 신청과정(신청서 작성, 근로능력판정 등)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 4-4) 자활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4-5)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상담, 자활역량평가, 교육훈련 등)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셨습니까?
- 4-6) 대상자 선정 후 어떠한 사업(예, 자활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결받으셨습니까?
- 4-7) 자활사업 참여 중지 또는 제한(조건불이행 등)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 4-8) 기존에 자활사업에 참여 후 취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5. 자활사업 참여 후 달라진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연결질문)

5-1) 자활사업 참여 초기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예, 경제적 상황, 심리·정서적 측면, 대인관계 측면, 근로 및 자립 측면 등)은 무엇입니까?

[자활사업 참여 및 기능 확대 방안]

6. 자활사업 대상, 프로그램, 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결질문)

6-1) 자활사업 참여를 고려하지 않으셨다면, 고려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소득 기준 때문에 참여할 수 없어서, 혹은 정보를 몰라서, 다른 정책이 더 도움이 되어서 등)

6-2) 자활사업이 아닌 다른 고용복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보신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그 프로그램들의 장·단점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주세요.

6-3) 귀하가 느끼시기에, 자활사업의 근로환경(업무, 강도, 급여 등)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9-6시/ 시간제)

*급여(시장진입형 기준: 1,506,180원)

*카페, 편의점, 청소 등의 서비스 관련 업종

6-4) 귀하가 느끼시기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청장년의 자활의욕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참여시: 미래계획에 부합한 일경험, 자산형성지원 강화, 다양한 복지서비스 연계(상담, 주거, 교육 등), 자활급여 인상

*사업참여후: 취업 인센티브, 창업지원 확대

7. 대상자별 자활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결질문)

7-1) 자활사업을 통한 자립에 있어 필요한 지원(안정적인 일자리 연계, 역량 강화 지원 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서 안정적인 연계를 위한 지원

*(은둔·고립 청장년) 은둔·고립 청장년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유인책

*(청장년 경계선 지능인) 희망하는 일자리, 자활센터 및 기업의 지원, 교육 및 기타지원

*(정신건강 취약 청장년) 희망하는 일자리, 정신건강과 관련한 지원

7-2) 본인과 같은 청장년들을 위해 자활사업을 진행할 때 각 기관(예, 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지자체, 개발원, 정부 차원)에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십니까?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록-2] 자활사업 참여 대상 확대 방안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 방안 연구 자문회의

24. 11. 20

1. 중위소득 인상 등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 모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근로복지연계 서비스 참여 수요 확대로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체감하고 계십니까? 계시다면, 사례를 이야기 해주세요.

〈표 II- 1〉 미취업자들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비율

(단위: %)

구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A 집단: 근로역량 ↑ 근로의욕 ↑	5.32	6.14	6.53	1.64
B 집단: 근로역량 ↑ 근로의욕 ↓	14.31	15.58	15.45	2.76
C 집단: 근로역량 ↓ 근로의욕 ↑	25.00	25.00	35.00	0.00
D 집단: 근로역량 ↓ 근로의욕 ↓	58.40	60.15	59.87	4.83

자료 : 한국복지패널 1~18차 원자료 분석. N=8,555

2. 새로운 취업 취약계층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로의욕과 근로역량을 기준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표 III-1〉 자활사업 참여 확대 집단별 구직·실업·일 경험 특성 분석결과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집단 A: 자립준비청년		
(1) 계속해서 준비하지만 순조롭지 않은 자립	① 떠밀리듯 준비하는 자립과 진로 계약	· 보호 상황(시설, 쉼터, 위탁가정 등)에서 지속적인 자립 준비를 요구받음 · 진로 탐색 과정에서 자율성에 제한이 있음
	② 불안정한 취업과 진로	· 고졸 학력으로는 만족스러운 일자리가 많지 않음 · 단순 기술과 자격증으로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취업을 하기 어려움
(2)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자립과 장애물	③ 적성 불일치,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인한 방황과 소진	· 적성이 맞지 않아 학교나 일을 그만두고 방황함 · 열악한 근로환경(저임금, 높은 근로강도 등) 속에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고갈됨
	④ 지원의 한계와 이중적 잣대	·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원정책 ·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은 보호종료로부터 5년 이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 이후에는 각종 지원이 중단됨

		'시실(쉼터) 출신'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맞담
집단 B: 가족돌봄청년		
(1) 청년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경제 활동	① 졸업 후 먹기 살기 위한 근로	·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러 일을 하게 됨 · 수급자 탈락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임금 수준을 조정하거나 소득이 잡히지 않는 알바를 할
	② 근무환경에서 부당한 대우, 열악한 처우 경험	·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금을 받지 못함 · 힘든 일을 시키는 등 차별 대우 경험함 · 급여에 비해 신체적 노동강도가 매우 높았음
	③ 일 경험 후 찾아온 심리적, 신체적 상처	· 집에서는 돌봄(간병)을 하고 밖에서는 일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음 · 강도 높은 일 경험으로 질병과 정신질환이 찾아옴
(2) 꿈을 이루기 위한 커다란 결심	④ 자기돌봄비 지원을 계기로 학업에 매진	· 학생 때부터 가져왔던 직업적 꿈을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대학원에 진학함 · 고용센터 취업연계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였음
(3) 자기개발과 취업을 가로막는 장벽	⑤ 공공서비스의 실효성 문제 경험	· 훈련 프로그램의 종류가 한정적임 · 시범사업인 자기돌봄비 지원(인당 200만 원 일시금)에 선정되었지만, 현장결재만 허용하는 등 사용처와 방법의 제한이 큼
	⑥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어버린 수급자 가족	· 정규직에 취업할 경우 수급자 탈락되어 막대한 의료비를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음
집단 C: 청장년 경계선 장애인		
(1) 장애와 비장애 경계에서 살아감	① 학업 준비 과정에서의 좌절	· 고등학교 졸업 후, 기술학원, 대학교 등을 다니지만 시학업난이도가 높아 중도 포기하거나 좌절을 경험함
	② 바늘구멍 통과보다 어려운 취업	· 자립에 대한 높은 의지로 개인적인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계속하지만, 취업 자체가 너무 어려움 · 이력서 작성 자체가 쉽지 않음 · 면접에서 변명이 탈락하거나 하루 만에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함
	③ 초기 취업의 부적응과 정규직 취업 실패	· 인턴 기회를 얻어도 근무평가가 좋지 못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함 · 일적응과 대인관계 어려움이 결합되어 퇴사를 고려함
	④ 직장 내 대인관계 어려움과 부당 대우 경험	· 여러 근무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평가와 무시 등으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함
	⑤ 지속적인 구직 실패로 인한 자기비난과 자존감 저하	· 계속된 실패의 경험과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내면화된 자기비난과 무력감이 지속됨 · 일 자체에 대한 의욕이 상실되고 트라우마가 쌓임
집단 D: 경증 정신질환 청장년		
(1) 거둬들인 취업실패로 인한 절망감	① 산재, 부도 등으로 실직 경험	·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직장에서 허리를 다쳤거나, 산업환경의 변화로 일자리를 잃음
	② 제도권의 실패	· 가족 사업 중 불화, 직장 내 따돌림, 질병, 이혼 등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
	③ 정신질환 발병 및 자살 시도	· 양극성 정동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이 발병함 · 자살시도로 보건소로 연계되거나 정신병원 행정입원하게 됨
(2)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삶	④ 더 나은 삶을 위한 고군분투	· 취업정보사이트, 동사무소 취업알선, 내일배움카드 등을 활용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함
	⑤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	· 가족들에게 땀땀하고 자녀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짐 · 자신을 도와주고 믿어준 사람들(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에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보답하고 싶음 · 직장생활을 할 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의지를 가짐

3.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별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 자활 사례관리 강화(상담)
- 자활근로 강화(시장진입형 사업단,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부채, 주거, 의료 등)
- 인적자원 강화(자격증 취득, 창업기술 등)

4. 자활사업 소득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면, 완화 범위는 어디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참여대상(1인) 중위소득 100%(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일하는 기준 중위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을 포괄하고 있어, 100%까지 현재 자활사업의 참여가능한 구조
- 참여대상(2인) 중위소득 120%*
* 근로장려금 제도와 연동해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는 방향으로 설계했을 때 현행 자활급여시 근로장려금 제공 공제율(30%)을 적용하였을때 역전이 현상을 예방하는 설계구조는 120%가 적절

<참여 대상 범위>

기준중위소득			노인일자리
120%	참여 대상(2인)		
100%	참여 대상(1인)		
50%	현재 참여 대상	자활근로	
40%	현재 참여 대상	자활근로	
만 65세 이상			

5.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활사업 참여 자격의 변화

4 자활사업 참여 자격*

* 재외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수급자로 보장 인정받은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 신청 가능

※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개선 대책'(22.11.24)에 따라 각 지자체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자활근로에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①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 :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④ 자활참여특례자 : 자활급여특례자에 해당하지 않는 조건부 또는 일반수급자로 자활 참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해당 급여 기준을 초과한 자

- 급여 기준 초과 시점부터 참여 잔여기간 동안 자활사업 참여자격 인정
(그 밖에 일시적 자활소득 변동 등 처리방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특례' 지침 준용)

* 단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24년 2분기 이후 적용 가능

⑤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⑥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자활 급여 개선(최저임금형 자활사업 운영)

(2) 지급기준

구 분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사회서비스형/ 기술·자격자	근로유지형
지급액계	61,930/65,930	54,200/58,200	31,800
급여단가	57,930/61,930	50,200/54,200	27,800
실 비	4,000	4,000	4,000
표준소득액(월)	1,506,180	1,305,200	722,800
비 고	1일 8시간, 주 5일		1일 5시간, 주 5일

※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 급여는 시장진입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단가 적용
 ※ 표준소득액은 자활근로 사회보험 소득신고 등 월평균 소득 적용이 필요한 경우 활용

- 자활 사업 참여기간 제한 or 연장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 기간
 - 자활참여자의 자활 촉진 및 자활근로 안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최대 60개월로 제한(단,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
 - ※ Gateway 참여기간은 자활근로 참여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 타 지역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한 이력 또한 참여기간 산정 시 합산
 - ※ 복지·자활도우미형, 사회복지시설도우미의 경우 해당 유형의 참여 종료시에는 동일 유형 사업단 재배치 불가능(누적 참여 기간과 관계 없이 참여 횟수로 판단, 타 시군구 참여 횟수도 포함)
 - ※ 자활근로사업 참여중 수급권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동 지침 [자활사업 참여 자격]에 해당할 경우는 최대 60개월까지 계속 참여할 수 있음
 - 취·창업, 탈수급 등으로 인해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하고 재참여한 경우에는 이전 참여기간과 합산하여 기산(참여일수로 계산)
 - ※ 참여일 합산은 2013.1.1.일부터 기산하며, 합산된 참여 기간이 60개월 초과시 '참여기간 만료일 도래시 처리방법'에 따름
 - ※ 마지막 자활참여 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지난 경우 신규 참여로 간주
 - 내일키움동장 가입자는 자활근로 최대 참여기간(60개월) 이내에서만 동장 가입상태 유지 가능

6. 기타 자활사업 참여자 확대방안에 대한 의견